



# 한국외교 60년

# 부록

- I. 외교관계 주요 문서 | 368
- II. 안보 및 통일외교에 관한 주요 자료 | 419
- III. 경제·통상외교 활동 | 460
- IV. 재외동포 및 영사관련현황 | 477
- V. 조약체결 현황 | 480
- VI. 외교관계 수립 현황 | 482
- VII. 역대 외교통상부 장·차관 일람표 | 484
- VIII. 역대 상주 재외공관장 일람표 | 487
- 외교통상부 조직도 | 538
- 약어표 | 540
- 사진 출처 목록 | 546

## I. 외교관계 주요 문서

### 1. 대한민국 승인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 유엔 총회 결의안 제195호(III)

1948년 12월 12일

총회는,

한국 독립 문제에 관한 1947년 11월 14일자 총회 결의 제112호(II)를 고려하며,

유엔 임시 한국위원단(이하 '임시위원단' 이라고 칭함)의 보고서 및 임시위원단과의 협의에 관한 소총회의 보고서를 잠작하고,

임시위원단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모든 난점으로 인하여 1947년 11월 14일자 총회 결의에 규정된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고 특히 한국 통일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1. 임시위원단 보고서의 모든 결론을 승인하고,
2. 임시위원단이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며 한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 지역에 대한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는 동 지역 선거인들의 자유 의지의 정당한 표현이고 임시위원단에 의하여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둔 것이라는 것과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내의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하며,
3. 점령국들은 가능한 한 조기에 한국으로부터 그들의 점령군을 철수해야 함을 권고하고,
4. 1947년 11월 14일자 총회 결의에 명시된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는 방법으로 호주,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및 시리아로 구성되는 한국위원단을 설치하여 임시위원단의 사업을 계속하고, 본 결의에서 명시된 한국정부의 지위에 유의하여 본 결의의 모든 규정을 수행케 할 것을 결의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a. 1947년 11월 14일자 결의에서 총회가 설정한 제 원칙에 의거하여 한국의 통일과 전 한국 안보 병력의 통합을 실현하도록 주선하며,
  - b. 한국의 분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및 기타의 후호적 교류에 대한 장애의 제거가 용이하도록 모색하며,
  - c. 국민의 자유로이 표현된 의사에 기초한 대의정치가 급후 가일층 발전하도록 함에 있어 감시와 협의로 임할 것이며,
  - d. 점령국의 실제 철수를 감시하고 철수가 이행되었을 때 동 철수의 사실을 확인하며,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양 점령국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한다.
5. 동 한국위원단은,
  - a. 본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으로 向發하여 그 본부를 설치할 것이며,
  - b. 1947년 11월 14일 결의에 의하여 설치된 임시위원단을 대치한 것으로 간주되며,
  - c. 한국 전역을 여행하며 협의하고 감시할 권한이 있으며,
  - d. 자체의 사무 절차를 정하며,
  - e. 사태의 진전에 따라 또한 본 결의의 조항의 범위 내에서 동 위원단 임무 수행에 관하여 소총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 f. 자기 정기총회 및 본 결의의 주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정기총회 이전에 소집될지도 모르는 특별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회원국에 배포할 목적으로 사무총장에

- 에게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며,
6. 필요한 기술고문을 포함한 적절한 직원과 제반 편의를 제공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고, 위원단의 각 회원국 대표 1명과 교체대표 1명에게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부여하며,
  7. 관계 회원국, 대한민국 정부 및 전 한국 국민에게 동 위원단의 책임완수에 필요한 모든 원조와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며,
  8.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유엔이 달성하였거나 앞으로 달성할 모든 결과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삼갈 것을 회원 제국에 요청하며,
  9. 각 회원국과 그 밖의 국가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계를 수립함에 있어 본 결의 제2항에 표시된 모든 사실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 Resolution 195(III)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2 December 1948

The General Assembly,

Having regard to its resolution 112 ( II ) of 14 November 1947 concerning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Having considered the report 1]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e report 2] of the Interim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regarding its consultation with the Temporary Commission,

Mindful of the fact that, due to difficulties referred to in the report of the Temporary Commission, the objectives set forth in the resolution of 14 November 1947 have not been fully accomplished, and in particular the unification of Korea has not yet been achieved,

1. Approves the conclusions of the reports of the Temporary Commission;
2.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3. Recommends that the occupying Powers should withdraw their occupation forces from Korea as early as practicable;
4. Resolves that, as a means to the full accomplishment of the objectives set forth in the resolution of 14 November 1947, a Commission on Korea consisting of Australia, China, El Salvador, France, India, the Philippines and Syria, shall be established to continue the work of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resolution, having in mind the status of the Government of Korea as herein defined, and in particular to:
  - (a) Lend its good offices to bring about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the integration of all Korean security forc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laid down by the General Assembly in the resolution of 14 November 1947;
  - (b) Seek to facilitate the removal of barriers to economic, social and other friendly intercourse caused by the division of Korea;

- (c) Be available for observation and consultation 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based on the freely expressed will of the people;
  - (d) Observe the actual withdrawal of the occupying forces and verify the fact of withdrawal when such has occurred; and for this purpose, if it so desires, request the assistance of military experts of the two occupying Powers;
5. Decides that the Commission;
- (a) Shall, within thirty days of the adoption of the present resolution, proceed to Korea, where it shall maintain its seat;
  - (b) Shall be regarded as having superseded the Temporary Commission established by the resolution of 14 November 1947;
  - (c) Is authorized to travel, consult and observe throughout Korea;
  - (d) Shall determine its own procedures;
  - (e) May consult with the Interim Committee with respect to the discharge of its duties in the light of developments, and within the terms of the present resolution;
  - (f) Shall render a report to the next regular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and to any prior special session which might be called to consider the subject-matter of the present resolution, and shall render such interim reports as it may deem appropriate to the Secretary-General for distribution to Members;
6. Requests that the Secretary-General shall provide the Commission with adequate staff and facilities, including technical advisers as required; and authorizes the Secretary-General to pay the expenses and per diem of a representative and an alternate from each of the States members of the Commission;
7. Calls upon the Member States concerne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ll Koreans to afford every assistance and facility to the Commission in the fulfilment of its responsibilities;
8. Calls upon Member States to refrain from any acts derogatory to the results achieved and to be achieved by the United Nations in bringing about the complete independence and unity of Korea;
9.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and other nations, in establishing their relations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acts set out in paragraph 2 of the present resolution.

Adopted at 186<sup>th</sup> Plenary Meeting,  
12 December 1948

## 2. 안전보장이사회의 한국전 참전에 관한 결의

### <2-1>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지원에 관한 안보리 결의(S/1511호)

1950년 6월 27일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결정하고,  
 전쟁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하고,  
 북한 당국이 그 군대를 즉시, 북위 38도선까지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고,  
 북한 당국이 전투 행위를 중지하지도 않았고 그 군대를 북위 38도선까지 철수시키지도 않았다는  
 것과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긴급한 군사적 조치가 요청된다는 유엔 한국위원단의 보  
 고서에 유의하고,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유엔에 요청한 대한민국의 호소를 주  
 목하여,  
 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  
 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 Resolution 83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on 27 June 1950(S/1511)

The Security Council,  
 Having determined that the armed attack upon the Republic of Korea by forces from North  
 Korea constitutes a breach of peace,  
 Having called for an immediate cessation of hostilities,  
 Having called upon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to withdraw forthwith their armed forces to  
 38th parallel, and  
 Having noted from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that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have neither ceased hostilities nor withdrawn their armed forces to the 38th  
 parallel and that urgent military measures are require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Having noted 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for immediate  
 and effective steps to secure peace and security,  
 Recommends that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urnish such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necessary to repel the armed attack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Adopted at 474<sup>th</sup> Meeting,  
 27 June 1950

### 〈2-2〉 유엔 통합군 사령부 설치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 84호(S/1588호)

1950년 7월 7일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결정하고,  
유엔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으므로,

1. 유엔의 각 정부와 국민이 무력 공격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위 노력을 지원하고 이에 따라 이 지역에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1950년 6월 25일과 27일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표명한 신속하고 강력한 지지를 환영한다.
2. 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의 지원 요청에 호응하였음을 주목한다.
3. 전술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제 결의에 의거하여 병력과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은 이러한 병력과 기타 지원을 미국 주도하의 통합군 사령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4. 미국에 대하여 이러한 군대의 사령관을 임명할 것을 위임한다.
5. 통합군 사령부에 대하여는 북한군에 대한 작전 중 참전 각국의 국기와 함께 유엔기를 임의대로 병용할 권한을 부여한다.
6. 미국에 대하여 통합군 사령부 지휘하에 취해지는 활동 과정에 관하여 적절한 시기에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 Resolution 84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on 7 July 1950(S/1588)

The Security Council,

Having determined that the armed attack upon the republic of Korea by forces from north Korea constitutes a breach of peace,

Having recommended tha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urnish such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necessary to repel the armed attack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1. Welcomes the prompt and vigorous support which Government and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given to its resolutions 82(1950) of 25 and 27 June 1950 to assist the Republic of Korea in defending itself against armed attack and thus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2. Notes tha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have transmitted to the United Nations offers of assistance for the Republic of Korea;
3. Recommends that all Members providing military forces and other assistance pursuant to the aforesai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make such forces and other assistance available to a unified command under the United States;
4. Requests the United States to designate the commander of such forces;
5. Authorizes the unified command at its discretion to use the United Nations flag in the course of operations against North Korean forces concurrently with the flags of the various nations participating;
6. Requests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the Security Council with reports as appropriate on the course of action taken under the unified command.

Adopted at 476<sup>th</sup> Meeting, 7 July 1950

### 3. 한국 정전협정(발체)

1953년 7월 27일 10시 판문점에서 서명  
1953년 7월 27일 22시 발효  
※ 한국은 불참

#### 전 문

국제연합군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의 무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나 또는 상호간에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 제1항: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킬로미터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 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 (제2항 - 제5항 생략)
- 제6항: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로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강행하지 못한다.
- 제7항: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 (제8항 - 제9항 생략)
- 제10항: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이하 생략)
- (제11항 생략)

#### 제2조 停火 및 停戰의 구체적 조치

##### 가. 총 칙

- 제12항: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 역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의 적대 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적대 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 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 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과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을 보라).
- (제13항 - 제16항 생략)
- 제17항: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 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 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 감시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18항 생략)

## 나. 군사정전위원회

### 1. 구성

(제19항 생략)

제20항: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되며, 그 중의 5명은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외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에서 쌍방의 3명은 將給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제21항 - 제23항 생략)

### 2. 직책과 권한

제24항: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 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제25항 - 제35항 생략)

## 다. 중립국 감시위원회

### 1. 구성

(제36항 생략)

제37항: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유엔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나머지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每個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정위원이 어떠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 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출석자 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제38항 - 제39항 생략)

제40항: (ㄱ)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처음에는 20개의 중립국 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 감시소조는 오직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고 또 그 지도를 받는다.

(L) (생략)

### 2. 기능과 권한

(제41항 - 제43항 생략)

### 3. 총 칙

(제44항 - 제50항 생략)

###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51항 - 제59항 생략)

### 제4조 쌍방 관계 정부들에의 건의

제60항: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 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행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 제5조 부 칙

제61항: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62항: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63항: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시에 한국 관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한다. 이 3개 국어의 각 협정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연합군 사령관: 미국육군 대장 마크 W. 클라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金日成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彭德懷

#### 참 석 자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미국육군 중장 윌리엄 K. 해리스 2세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南日

##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 PREAMBLE

The undersigne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in the interest of stopping the Korean conflict, with its great toll of suffering and bloodshed on both sides, and with the objective of establishing an armistice which will insure a comple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of all acts of armed force in

Korea until a final peaceful settlement is achieved, do individually, collectively, and mutually agree to accept and to be bound and governed by the conditions and terms of armistice set forth in the following Articles and Paragraphs, which said conditions and terms are intended to be purely military in character and to pertain solely to the belligerents in Korea.

## ARTICLE I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DEMILITARIZED ZONE

1. A Military Demarcation Line shall be fixed and both sides shall withdraw two (2) kilometers from this line so as to establish a Demilitarized Zone between the opposing forces. A Demilitarized Zone shall be established as a buffer zon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incidents which might lead to a resumption of hostilities.

(제2항 - 제5항 생략)

6. Neither side shall execute any hostile act within, from, or against the Demilitarized Zone.

7. No person, military or civilian, shall be permitted to 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unless specifically authorized to do so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제8항 - 제9항 생략)

10. Civil administration and relief in that part of the Demilitarized Zone which is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nd civil administration and relief in that part of the Demilitarized Zone which is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hall be the joint responsibility of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이하 생략)

(제11항 생략)

## ARTICLE II CONCRETE ARRANGEMENTS FOR CEASE-FIRE AND ARMISTICE

### A. GENERAL

12.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shall order and enforce a complete cessation of all hostilities in Korea by all armed forces under their control, including all units and personnel of the ground, naval, and air forces, effective twelve (12) hours after this Armistice Agreement is signed. (See Paragraph 63 hereof for effective date and hour of the remaining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제13항 - 제16항 생략)

17. Responsibility for compliance with and enforcement of the terms and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is that of the signatories hereto and their successors in command.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shall establish within their respective commands all measures and procedures necessary to insure complete compliance with all of the provisions hereof by all elements of their commands. They shall actively cooperate with one another and with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in requiring observance of both the letter and the spirit of all of

the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제18항 생략)

## B.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 1. COMPOSITION

(제19항 생략)

20.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be composed of ten(10) senior officers, five (5) of whom shall be appointed by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nd five (5) of whom shall be appointed jointly by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f the ten members, three (3) from each side shall be of general or flag rank. The two (2) remaining members on each side may be major generals, brigadier generals, colonels, or their equivalents.

(제21항 - 제23항 생략)

### 2. FUNCTIONS AND AUTHORITY

24. The general mis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be to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mistice Agreement and to settle through negotiations any violat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제25항 - 제35항 생략)

## 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 1. COMPOSITION

(제36항 생략)

37.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hall be composed of four (4) senior officers, two (2) of whom shall be appointed by neutral nations nominated by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namely, SWEDEN and SWITZERLAND, and two (2) of whom shall be appointed by neutral nations nominated jointly by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namely, POLAND and CZECHOSLOVAKIA. The term "neutral nations" as herein used is defined as those nations whose combatant forces have not participated in the hostilities in Korea. Members appointed to the Commission may be from the armed forces of the appointing nations. Each member shall designate an alternate member to attend those meetings which for any reason the principal member is unable to attend. Such alternate members shall be of the same nationality as their principals.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may take action whenever the number of members present from the neutral nations nominated by one side is equal to the number of members present from the neutral nations nominated by the other side.

(제38항 - 제39항 생략)

40. a.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hall be initially provided with, and assisted by, twenty (20)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which number may be reduced by agreement of the senior members of both sides on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Th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shall be responsible to, shall report to, and shall be subject to the direction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only.

(b. 생략)

## 2. FUNCTIONS AND AUTHORITY

(제41항 - 제43항 생략)

## 3. GENERAL

(제44항 - 제50항 생략)

### ARTICLE III ARRANGEMENTS RELATING TO PRISONERS OF WAR

(제51항 - 제59항 생략)

### ARTICLE IV RECOMMENDATION TO THE GOVERNMENTS CONCERNED ON BOTH SIDES

60. In order to insure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question, the Military Commanders of both sides hereby recommend to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concerned on both sides that, within three (3) months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is signed and becomes effective, a political conference of a higher level of both sides be held by representatives appointed respectively to settle through negotiation the questions of the withdrawal of all foreign forces from Korea,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question, etc.

### ARTICLE V MISCELLANEOUS

61. Amendments and additions to this Armistice Agreement must be mutually agreed to by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62. The Articles and Paragraph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expressly superseded either by mutually acceptable amendments and additions or by provision in an appropriate agreement for a peaceful settlement at a political level between both sides.

63. All of the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other than Paragraph 12, shall become effective at 22:00 hours on 27 July 1953.

Done at Panmunjom, Korea, at 10:00 hours on the 27th day of July, 1953, in English, Korean, and Chinese,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KIM IL SUNG

Marshal,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preme Commander,  
Korean People's Army

PENG TEH-HUAI

Commander,  
Chinese People's  
Volunteers

MARK W. CLARK

General  
United States Army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PRESENT

NAM IL

General, Korean People's Army  
Senior Delegate,  
Delega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WILLIAM K. HARRISON, JR.

Lieutenant General, United States  
Army  
Senior Delegate,  
United Nations Command Delegation



#### 4.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  
1954년 11월 18일 발효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견의를 공공연히 또한 공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전쟁이라도 국제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업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許與하고 미 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終止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 두벌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卞 榮 泰  
미 합중국을 위해서: 존 포스터 딜레스

####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gned at Washington October 1, 1953  
Entered into force November 18, 1954

The Parties to this Treaty,

Reaffirming their desire to live in peace with all governments, and desiring to strengthen the fabric of peace in the Pacific area,

Desiring to declare publicly and formally their common determination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external armed attack so that no potential aggressor could be under the illusion that either of them stands alone in the Pacific area,

Desiring further to strengthen their efforts for collective defense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security pending the development of 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system of regional security in the Pacific area,

Have agreed as follows:

#### Article 1

The Parties undertake to settle any international disputes in which they may be involved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and to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any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or obligations assumed by any Party toward the United Nations.

#### Article 2

The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whenever, in the opinion of either of them,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either of the Parties is threatened by external armed attack. Separately and jointly, by self-help and mutual aid, the Parties will maintain and develop appropriate means to deter armed attack and will take suitable measures in consultation and agreement to implement this Treaty and to further its purposes.

#### Article 3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 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 Article 5

This Treaty shall be ratifi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ll come into force whe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reof have been exchanged by them at Washington.

#### Article 6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Washington,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this first day of October 1953.

FOR THE REPUBLIC OF KOREA: /s/ Y. T. Pyu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 John Foster Dulles



## 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1965년 6월 22일 東京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III)호를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李 東 元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金 東 祚

일본국  
일본국 외무대신: 椎名悦三郎  
高杉晋一

이들 전권위원은 그들의 전권위임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 제1조: 양 체약 당사국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大韓帝國과 大日本帝國間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 제4조: (가)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 제5조: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 제6조: 양 체약 당사국은 민간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각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한다.  
1965년 6월 22일 東京에서 동등히 正本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英語本에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署名) 李 東 元 金 東 祚  
일본국을 위하여: (署名) 椎名悦三郎 高杉晋一

##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Signed at Tokyo June 22, 1965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8, 1965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sider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relationship between their peoples and their mutual desire for good neighborliness and for the normalization of their relation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mutual respect for sovereignt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ir close cooperation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o the promotion of their mutual welfare and common interests and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Recall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signed at the city of San Francisco on September 8, 1951 and the Resolution 195(III)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December 12, 1948;

Have resolved to conclude the present Treaty on Basic Relations and have accordingly appointed as their Plenipotentiaries,

The Republic of Korea:

Tong Won Le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Dong Jo Kim,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Japan:

Etsusaburo Shiina,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Japan

Shinichi Takasugi

Who, having communicated to each other their full powers found to be in good and due form,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articles:

Article 1

Diplomatic and consular relations shall be established betwee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exchange diplomatic envoys with the Ambassadorial rank without delay.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will also establish consulates at locations to b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It is confirmed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Korea and the

Empire of Japan on or before August 22, 1910 are already null and void.

Article 3

It i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 as specified in the Resolution 195 ( III )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rticle 4

(a)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will be guided by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 their mutual relations.

(b)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will cooperate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 promoting their mutual welfare and common interests.

Article 5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will enter into negotiations at the earliest practicable date for the conclusion of treaties or agreements to place their trading, maritime and other commercial relations on a stable and friendly basis.

Article 6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will enter into negotiations at the earliest practicable date for the conclusion of an agreement relating to civil air transport.

Article 7

The present Treaty shall be ratifie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Seoul as soon as possible. The present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as from the date on which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re exchanged.

IN WITNESS WHEREOF, the respective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e present Treaty and have affixed thereto their seals.

DONE in duplicate at Tokyo, this 22nd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ixty-five in the Korean, Japanese,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Tong Won Lee

Dong Jo Kim

FOR JAPAN: (Signed) Etsusaburo Shiina

Shinichi Takasugi

## 6.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합의의사록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합의의사록 및 이에 대한 수정

1954년 11월 17일 서울에서 서명  
1954년 11월 17일 발효  
1955년 8월 12일 워싱턴에서 수정  
1955년 8월 12일 수정발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공동이익은 긴밀한 협조를 계속유지하는데 있는바 이는 상호유익함을 입증하였으며 자유세계가 공산침략에 대하여 투쟁하며 자유로운 생존을 계속하고자 하는 결의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그의 정책으로 삼는다.

1. 한국은 국제연합을 통한 가능한 노력을 포함하는 국토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한다.
2.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국군을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지휘권하에 둔다. 그러나 양국의 상호적 및 개별적 이익이 변경에 의하여 가장 잘 성취될 것이라고 협의후 합의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경제적 안정에 배치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자원내에서 효과적인 군사계획의 유지를 가능케 하는 부록 B에 규정된 바의 국군병력기준과 원칙을 수락한다.
4. 투자기업의 사유제도를 계속 장려한다.
5. 미국의 법률과 원조계획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행에 부합하는 미국정부의원조자금의 관리를 위한 절차에 협조한다.
6. 부록 A에 제시된 것을 포함하여 경제계획을 유효히 실시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이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조건에 기하여 미합중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그의 정책으로 삼는다.

1. 1955회계년도에 총액 7억불에 달하는 계획적인 경제원조 및 직접적 군사원조로써 대한민국이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으로 강화되도록 원조하는 미국의 계획을 계속한다. 이 금액은 1955회계년도의 한국에 대한 원조액으로 기왕에 미국이 상상하였던 액보다 1억불 이상을 초과하는 것이다. 이 총액중 한국민간구조계획의 이월금과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에 대한 미국의 저출금을 포함하는 1955회계년도의 계획적인 경제원조금액은 약2억8천만불에 달한다(1955회계년도의 실제 지출은 약2억5천만불로 예상된다).
2. 양국정부의 적당한 군사대표들에 의하여 작성될 절차에 따라 부록 B에 약속한 바와같이 예비군 제도를 포함한 증강된 대한민국의 군비를 지원한다.
3. 대한민국의 군비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적당한 군사대표들과 충분히 협의한다.
4.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에 의하지 않는 침공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의 헌법절차에 의거하여 침략자에 대하여 그 군사력을 사용한다.
5. 필요한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한국의 재건을 위한 경제계획을 계속 추진한다.

1954년 11월 1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민국외무부장관: 변 영 태  
대한민국주재미합중국대사: 에리스. 오. 브릭스

## 한미합의의사록부록 A 효과적인 경제계획을 위한 조치

대한민국은 경제계획을 효과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환율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정부의 공정환율과 대충자금환율을 180대1로 하고, 한국은행을 통하여 불화를 공매함으로써 조달되는 미국군의 환화차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정환율과 상이한 현실적인 환율로 교환되는 불화교환에 관하여 미국이 제의한 절차에 동의하며, 일반적으로 원조물자도 유사한 환율에 의한 가격으로 한국경제에 도입함으로써 그러한 재원의 사용으로부터 한국경제와 한국예산에 대한 최대한도의 공헌을 얻도록 한다. 미국에 의한 환화차출에 관한 현존협정들의 운영은 전기한 조치가 실제에 있어서 양국정부에게 다 같이 만족하게 실시되는 한 이를 정지한다.
2. 미국이 현물로 공여하지 않은 원조계획을 위한 물자는 어떠한 비공산주의국가에서든지 소요의 품질의 물자를 최저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는데 동의한다(이는 세계적인 경쟁가격에 의한 가능한 최대한의 구매를 한국에서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3. 한국자신의 보유외화의 사용을 위한 계획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관계미국대표들에게 제공한다.
4. 한국예산을 균형화하고 계속하여 “인푸레”를 억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행한다(양국정부의 목적하는 바는 한국예산을 “인푸레”를 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 (1954년 11월 17일자 합의의사록에 대한 수정)

1954년11월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합의의사록 부록 A의 제1항은 1955년8월15일자로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대한민국정부 및 그 기관의 모든 외환거래를 위한 환율로써 1955년8월15일자로 대한민국에 의하여 제정될 미화 1불대 5백환의 공정환율은 한국으로 물자 및 역무를 도입하기 위하여 공여되는 미국의 원조에 대하여 다음 것을 제외하고 적용된다.

- (가) 미국원산인 석탄은 1956년6월30일에 종료될 회계연도기간중 공정환율의 40%이상에 해당하는 환율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 (나) 비료는 즉시 공정환율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환율로 가격을 정할 수 있으나 1956년1월1일 이후에는 공정환율로 인상하여야 한다.
- (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위한 투자형의 물품
- (라) 구조물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형물품에 대하여는 합동경제위원회가 차등환율 또는 보조금의 형식을 통하여 감율을 건의하지 않는 한 공정환율로 가격을 정한다.

공정환율은 미국군에 의한 환화구입에 적용된다.

미합중국정부는 한국의 안정된 경제상태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한민국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내에서 협조한다. 이 점에 관하여 양국정부는 신속한 행동에 의하여 원조계획을 조속히 완성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목적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경주한다.

1954년11월17일자 합의의사록 부록 A에 대한 이 개정의 효력발생일자 이전에 존재하였던 미국에 의한 환화취득에 관한 협정들은 원합의의사록 부록 A의 제1항에서 원래 승인하였던 협정을 포함하여 전기한 조치가 실제에 있어서 양국정부에게 다같이 만족하게 실시되는 한 이를 정지한다.

1955년 8월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양 유 찬  
미합중국정부를 위하여: 윌터 에스 로버트슨

## 7. 한·소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코뮤니케

### 대한민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코뮤니케

1990년 9월 30일

대한민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은 양국 간 여러 분야에서 우호관계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하여 1990년 9월 30일부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은 양국 관계가 유엔 헌장에 따라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 원칙,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 기초할 것임을 선언한다.

양국은 이 조치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각자의 제3국과의 관계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외교관계가 수립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외교공관을 교환 설치한다. 양국은 양국의 수도에 상호 외교공관을 설치하고 양국 공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한다.

1990년 9월 30일 뉴욕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이 두 원문은 동등히 정본이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호중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을 위하여: 예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 8.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1992년 8월 24일

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의 이익과 염원에 부응하여 1992년 8월 24일자로 상호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 헌장의 원칙들과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 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항구적인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간의 수교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각자의 수도에 상대방의 대사관 개설과 공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사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1992년 8월 24일 北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상 옥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錢其琛

## 9.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1998년 10월 8일, 도쿄

1.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은 일본국 국민으로서 1998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체제 중 오부치 케이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의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현재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회담의 결과,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하였다.

2.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대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를 함께 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양국 정상은 과거 오랜 역사를 통하여 교류와 협력을 유지해 온 한·일 양국이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각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협력관계가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한국이 국민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비약적인 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하고, 번영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하에서 전수방위 및 비핵 3원칙을 비롯한 안전보장정책과 세계경제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지원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수행해 온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양국 국민간의 광범위한 교류와 상호 이해에 기초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4. 양국 정상은 양국간의 관계를 정치, 안전보장, 경제 및 인적·문화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균형되고 보다 높은 차원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의 파트너십을 단순히 양자차원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또한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요한 생활과 살기 좋은 지구환경을 지향하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정상은 20세기의 한·일관계를 마무리하고, 진정한 상호 이해와 협력에 입각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공통의 목표로서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다음



과 같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이 공동선언에 부속된 행동계획을 작성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정부가 앞으로 양국의 외무장관을 책임자로 하여 정기적으로 이 한·일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력의 진척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국 정상은 현재의 한·일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양국간의 협의와 대화를 더욱 촉진시켜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상간의 지금까지의 긴밀한 상호 방문·협의를 유지·강화하고 정례화해 나가기로 하는 동시에, 외무장관을 비롯한 각 분야의 각료급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간 각료간담회를 가능한 한 조기에 개최하여 정책 실시의 책임을 갖는 관계각료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지금까지의 한·일 양국 국회의원간 교류의 실적을 평가하고, 한·일/일·한의원연맹의 향후 활동 확충 방침을 환영하는 동시에, 21세기를 담당할 차세대의 소장의원간의 교류를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국 정상은 냉전 후의 세계에 있어서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사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참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과 과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연합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 강화, 국제연합 사무국 조직의 효율화,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확보,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의 강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대한 협력 등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이 일치하였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하고, 금후 일본의 그와 같은 기여와 역할이 증대되는 데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군축 및 비확산의 중요성, 특히 어떠한 종류의 대량파괴무기일지라도 그 확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러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의 안보정책협의회 및 각급 차원의 방위교류를 환영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양국이 각각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를 견지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간 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7.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보다 건설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확고한 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한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1992년 2월 발표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4자회담의 순조로운 진전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간에 서명한 ‘제네바 합의’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북한의 핵 계획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메카니즘으로서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이 안보리를 대표하여 표명한 우려 및 유감의 뜻을 공유하는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한국, 일본 및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북한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각급 차원에서의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8. 양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경제체제를 유지·발전시키고, 또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아시아 경제의 회복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각각 안고 있는 경제적 과제를 극복하면서, 경제분야의 균형된 상호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정상은 양자간의 경제정책협의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WTO, OECD, APEC 등 다자 무대에서의 양국간 정책협조를 더욱 촉진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금융, 투자, 기술이전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지금까지의 일본의 대한민국 경제지원을 평가하는 동시에, 한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였다. 오부치 총리 대신은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아시아의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한국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재정 투유자를 적절히 활용한 일본 수출입은행의 대한민국 용자에 관하여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의 커다란 현안이었던 한·일 어업협정 교섭이 기본 합의에 도달한 것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는 동시에,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을 기초로 한 새로운 어업질서하에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양국 관계의 원활한 진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이번에 새로운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서명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무역·투자, 산업기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노·사·정 교류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한·일 사회보장협정을 염두에 두고, 장래 적절한 시기에 서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의견 교환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9. 양국 정상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국경을 초월한 각종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지구환경 문제, 특히 온실가스 배출 제한, 산성비 대책을 비롯한 제반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일 환경정책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발 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조분야에서의 양국간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일 범직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동시에, 마약·각성제 대책을 비롯한 국제조직범죄 대책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0. 양국 정상은 이상 각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초는 정부간 교류 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간의 깊은 상호이해와 다양한 교류에 있다는 인식하에 양국간의 문화·인적교류를 확충해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을 위한 양국 국민의 협력을 지원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문화 및 스포츠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연구원, 교사, 언론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및 지역간 교류의 진전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교류·상호이해 촉진의 토대를 조성하는 조치로서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중제도의 간소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일간의 교류 확대와 상호이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고생 교류사업의 신설을 비롯하여 정부간의 유학생 및 청소년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양국의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관광사증제도를 1999년 4월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재일한국인이 한·일 양국 국민의 상호교류·상호이해를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양국간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한·일포럼 및 역사공동연구의 촉진에 관한 한·일 공동위원회 등 관계자에 의한 한·일간 지적교류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이러한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내에서 일본 문화를 개방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하였으며, 오부치 총리대신은 이러한 방침이 한·일 양국의 진정한 상호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환영하였다.

11.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대신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이 양국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더욱 높은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공통의 신념을 표명하는 동시에, 양국 국민에 대하여 이 공동선언의 정신을 함께하고,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의 구축·발전을 위한 공동의 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1998년 10월 8일, 도쿄  
대한민국 대통령: 김 대 중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오부치 케이조

## [부속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

## 1. 양국간 대화채널의 확충

## ○ 정상간 교류의 긴밀 정례화

대한민국 대통령과 일본국 총리대신은 정상회담을 적어도 연 1회 실시하여 정상간의 의견교환을 촉진한다.

## ○ 외무장관 및 여타 각료간 교류의 긴밀화

외무장관회담을 비롯하여, 양국 각료간 협의를 더욱 긴밀화하여 양국간 정책협조 및 신뢰증진을 도모한다.

## ○ 각료간담회

양국은 한·일 양국의 다수의 각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한 한·일 각료간담회를 가급적 조속한 기회에 개최한다.

## ○ 의원교류(의원연맹활동 포함)

양국은 한·일/일·한의원연맹 회원의 확충 및 양국 의원연맹을 중심으로 한 의원간 교류의 확대를 환영한다. 특히 1998년도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여성의원 교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또한 기존의 21세기위원회에서의 토론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에서 청소년 교류 및 양국에 공통되는 청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양국은 한·일 소장 의원간의 자발적인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을 기대하며, 이를 권장해 나간다.

## ○ 초임 외교관의 상호파견

양국은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우선 초임 외교관의 상호 파견을 통한 연수 교류를 실시한다.

## 2.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 ○ 국제연합에서의 협력

양국은 국제연합의 개혁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이와 관련, 한국은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 일본의 이러한 기여와 역할이 증대되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또한 양국은 양국의 국제연합 담당부서간의 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국제연합에서의 양국간 정책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2000년 국제연합 총회를 천년 기념총회로 개최하고자 하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제안을 지지한다.

## ○ 군축 및 비확산 문제에 있어서의 협력

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확산이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우려할 만한 것이라는 공통 인식 하에 이의 해소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IAEA 안전조치협정 등의 의무이행을 계속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토록 촉구해 나간다. 양국은 군축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원자력 공급국 회의 등 양국이 참가하는 각종 국제적 수출관리 체제의 장 등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의 협력을 강화한다.

### ○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양국은 양국간 안전보장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이해와 신뢰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6월에 개시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앞으로 적어도 연 1회, 계속하여 실시한다. 차기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9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 ○ 한·일 방위교류

양국은 국방 방위당국간 방위교류의 확대 강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양국 국방 방위담당장관의 상호 방문을 비롯한 각급 차원의 인적 교류의 확대,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대화채널의 확충, 유학생 교환 등의 교육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양국은 합정의 상호 방문을 계속하는 등 부대간 교류를 추진해 나간다.

### ○ 다자간 지역안전보장 대화에 있어서의 협력

양국은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를 촉진하고,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의 구체화를 지향하는 아세안지역포럼(ARF)이 더욱 발전 강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양국은 동북아의 안전보장과 협력에 관한 정부 차원의 다자대화의 장을 설치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 ○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협력

양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울러 4자회담을 통한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다.

### ○ 대북정책에 관한 한·일 정책협의를 강화

양국은 한·일·미 3국간에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정책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양국 각료 차원의 협의를 포함한 양국간 정책협의를 더욱 강화한다. 이러한 협의에는 양국의 대북한 정책,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 미사일 개발 배치 및 수출, 미사일 관련 물자와 기술의 이전문제와 북한에 대한 경제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이 포함된다.

### ○ 북한 핵무기 개발 억지를 위한 협력

양국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간에 서명된 '제네바 합의'를 유지해 나가는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공약을 다시 한번 표명하였다.

### ○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에 있어서의 협력

양국은 아시아 유럽간 관계를 다양한 분야 차원에서 강화해 나가기 위한 ASEM의 활동을 지지하고, ASEM의 활동을 통하여 아시아 국가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도 모색해 나간다. 또한, 양국은 2000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차 ASEM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하여 협력한다.

### 3.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 ○ 자유롭고 번영된 세계 경제의 실현을 위한 협력

양국은 WTO, OECD, APEC 등 국제기구 및 지역적인 정책협조 체제에 있어서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발전, 다각적인 자유무역체제의 강화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정부간 협의를 빈번히 개최한다.

#### ○ 양국간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양국은 한·일 각료간담회의 장을 활용하여, 양국의 경제정책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실시해 나간다.

양국은 한·일 양국을 둘러싼 새로운 경제정세를 기초로 포괄적인 고위급 경제협의를 실시한다.

양국은 아시아지역의 금융 문제를 비롯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협력하고, 또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그밖의 새로운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OECD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 ○ 대한민국 경제지원

일본은 한국의 경제난 극복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 투융자를 적절히 활용하여 총액 30억 불 상당엔 정도의 일본 수출입은행에 의한 융자 실현을 도모한다.

#### ○ 한·일 투자교류

양국은 양국간 투자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1998년 5월 일본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조사단 파견과 이번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시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단 파견을 높이 평가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취한다.

양국은 '민·관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한·일 양국의 투자상당 및 투자분쟁 처리의 창구를 활용하고, 투자 촉진을 위하여 민간일체로 대응해 나간다. 또한, 양국은 투자 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도 실시한다.

#### ○ 한·일 어업협정

양국은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을 기초로 한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진행되어온 한·일 어업협정 체결 교섭이 이번엔 기본합의에 도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양국은 앞으로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가능한 한 조기에 신협정을 발효시키고,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한다.

#### ○ 한·일 이종과세방지협약

양국은 이번에 개정된 한·일 이종과세방지협약이 서명된 것을 환영하며, 이에 의하여 양국간의 투자와 인적교류가 더욱 촉진될 것을 기대한다. 양국은 앞으로 신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 ○ 무역확대 및 산업기술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한·일/일·한 산업기술협력재단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협력 등을 통하여 한·일간 무역의 확대 균형을 추구하고 나간다. 특히 산업기술 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협력, 한국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협력 및 산업기술 교류의 각 분야에서의 사업을 내실화한다.

### ○ 산업교류 추진

양국은 전기, 전자, 정보산업의 교류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교류시찰단의 파견, 접수를 실시한다. 또한 한국의 부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견본시장 사업을 지원한다.

### ○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의거하여 개최된 제10차 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뇌과학 등 신규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를 검토한다.

### ○ 정보통신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지금까지의 한·일 통신장관회담에서 확인된 아·태 초고속 정보통신 선도시험망 프로젝트(APII Test-bed Project)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있어서의 민간 상호 교류의 촉진,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양국 연구소간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간다.

### ○ 컴퓨터 2000년 문제에 관한 협력

양국은 컴퓨터 2000년 문제가 세계 각국 공통의 문제인 동시에 상호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하에 APEC, OECD 등의 국제적인 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 지적소유권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양국간 경제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적 소유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정보교환 및 인적 교류를 촉진한다. 양국은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WTO, WIPO 등 국제적인 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범세계적인 전자 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원칙 및 정책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추진한다.

### ○ 농업분야의 협력

양국은 농업분야에 관한 고위급 실무대화를 강화한다.

### ○ 노사정 교류의 활성화

양국은 경제발전과 근로조건향상의 향상이라는 균형있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협조를 해 나가기 위하여 양국의 정부 근로자 사용자 3자 대표들의 상호 방문 등의 교류를 강화한다.

### ○ 사회보장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사회보장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협정을 염두에 둔 양국 당국간의 정보 의견교환을 장래 적절한 시기에 실시한다.

### ○ 자연 재해 및 인적 재해 경감을 위한 협력

양국은 양국의 재해 대응과 관련한 제도, 재해방지 체제 및 시설에 관한 정보 의견교환을 통하여 협력을 추진한다.

## ○ 양국 경제인 교류의 확대

양국은 앞으로 한·일 경제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젊은 기업인을 포함한 양국 경제인간의 상호교류의 확대를 권장한다.

## 4.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강화

## ○ 환경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한·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의 협의와 함께 환경정책에 관한 대화를 실시해 나간다. 양국은 범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특히, 양국은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하여 협력하는 동시에 교토의정서에서 미해결된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양국은 산성비, 해양오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환경협력 강화에 관해 관련국 각료급의 긴밀한 협의 및 관련 환경협력 체제하에서의 대응 등을 촉구한다.

양국은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소위 환경호르몬)에 관한 공동조사 및 연구를 시작한다. 양국은 환경산업 분야에 있어서 상호 교류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 ○ 원조분야에서의 협조

양국은 지금까지의 원조정책협의 등의 정책대화를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원조와 관련하여 원조정책, 원조실적, 원조방법, 원조에 관한 여론 홍보 등 분야에서의 정보교환 등을 통한 협력 활동을 더욱 진전시킨다.

또한 직원 교류를 포함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일본 국제협력사업단(JICA)간 협력 및 제휴를 한층 진전시킨다.

양국은 원조 협력과 관련, 대아시아 아프리카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일본이 1998년 10월 도쿄에서 개최하는 제2회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 II) 및 그 후속사업과, 한국이 국제연합의 아프리카 및 최빈개도국을 위한 특별조정실(OSCAL)과의 공동 주최로 1998년 12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수출진흥에 있어서의 아시아 아프리카 협력포럼】과의 유기적인 연관을 도모하는 등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일본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아동보호를 위해 1997년 5월 서울에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IVI) 사업 등을 중시하는 데 대해 이해를 표시하였다.

##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협력

양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있어서의 안전성, 방사선 방호 및 환경감시,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연구 응용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촉진시키고, 한·일 원자력 협의의 장을 통한 의견교환을 활성화시켜 나간다.

또한 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원자력의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아시아 원자력 안전회의의 등을 통한 역내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지역 원자력협력 국제회의의 틀을 활용하는 등, 원자력 개발 이용에 관한 협력을 추진한다.

## ○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교섭의 개시

양국은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조기에 시작한다.



## ○ 국제조직범죄 대책에서의 협력 강화

양국은 마약 각성제 문제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계속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양국은 마약 각성제 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양국간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공통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주변국과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모색하면서 앞으로 더욱 협력하여 나간다.

## 5.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의 증진

### ○ 2002년 월드컵과 이를 계기로 한 국민교류 사업

양국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을 위하여 계속 협력한다. 이와 관련, 양국은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경비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양국은 월드컵대회 기간 중 대회 관계자, 보도 관계자 및 제3국을 포함한 관전 목적의 각국 국민이 양국에 입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면에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정을 개시한다.

양국은 월드컵의 성공을 위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는 기회를 계기로, 다양한 경기종목의 한·일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양국 국민간 교류를 폭넓은 분야로 확대하여 나가기 위한 문화교류 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산업 기술, 물산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 등을 서로 상대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한다.

양국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일 양국에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한·일 양국간의 관광교류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홍보 및 수용 체계를 정비해 나간다.

### ○ 한·일 국민교류의 촉진

양국은 21세기의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한·일 교류의 모습으로서 양국의 폭넓은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등 보다 진전된 차원에서의 교류를 실현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 지역진흥, 국제협력 등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프로젝트, 인적교류(연구원, 교사, 언론인, NPO 관계자, 시민단체, 지방관계자 등 다양한 국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 교류 사업)를 적극적으로 촉진해 나간다.

양국은 건전한 인적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증절차를 가능한 한 간소화시키기로 하며, 이를 위한 협의를 더욱 긴밀화한다. 그 일환으로 양국은 1998년 12월부터 양국간 외교 관용 목적의 인적 교류에 대하여 사증을 면제하기로 한다.

양국은 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항공당국간의 협력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 ○ 청소년교류 확대

양국은 장래의 보다 나은 한·일관계를 위해 양국간에 유학생, 청소년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의 파견 접수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며, 금후 10년을 예정으로 그 시점에서 일본의 공과대학에 재학하는 한국인 학부 유학생이 1000명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양국은 1999년 여름으로 예정된 제2차 한·일 청소년 교류 네트워크 포럼 등 청소년 교류 사업을 지원한다.

양국은 차세대를 짚어질 청소년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1년간

체재하며, 그 문화와 생활양식 등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취업도 가능한 취업관광시중제도(Working Holiday Program)를 1999년 4월부터 개시한다. 아울러, 양국은 중고등학생 등 젊은 세대간의 교류도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하여 양국은 금후 10년간 1만명, 10억엔 규모를 목표로 중고등 학생 교류사업을 실시한다.

#### ○ 학술교류

양국은 상대국 및 양국관계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민간차원의 공동연구 및 그 밖의 사회 인문 자연과학 등 폭넓은 분야에 있어서의 공동연구 활동, 상호 번역 출판사업 등을 계속 지원 장려하고 이를 다방면으로 확대한다.

또한 양국은 한·일포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적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기존의 틀에 의한 지적 교류를 계속 지원해 나간다.

양국은 쌍방의 민간 지식인간에 자율적인 교류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러한 네트워크 안에서 양국이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민간 지식인간의 공동 연구가 진전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다.

양국의 대학교류 및 대학간 협정 체결을 지원한다.

#### ○ 지역간 교류

양국은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와 신뢰증진에 있어서 지역간 교류가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지방의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간의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양국은 지역차원에서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대한민국 JET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의 촉진, 광주 일본주간 등 지방에서의 문화교류 행사에 대한 지원 및 지역교류 촉진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실시한다.

#### ○ 문화교류의 내실화

한국은 한국내에서 일본문화를 개방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일본측에 전달하였다.

양국은 1992년 및 1994년 상호 교환 개최된 바 있는 한·일 문화통신사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민간, 지방차원을 포함한 양국간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해 나간다. 또한 양국은 그밖에 특히 양국의 젊은 예술가, 문화재 전문가 등의 인적교류, 양국의 현대 무대 예술이나, 민속예능의 파견 초빙, 문화재 복원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통한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 10. 한·중·일 3국간 협력증진에 관한 공동선언문

### 한·중·일 3국간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2003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

우리 한·중·일 정상들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2003년 10월 7일 한 자리에 모였다. 우리들은 양자관계 발전과 3국간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동 협력이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어 왔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새로운 세기에 3국간 협력을 촉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여기에 다음과 같이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3국은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보완성, 경제협력 증대 및 인적교류 증가와 더불어 상호간에 중요한 경제 및 무역 파트너가 되어왔으며, 지역 및 국제문제에 있어서의 공조와 협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3국 협력은 세나라간 관계발전을 위한 만족스러운 모멘텀을 시험하고 있다. 3국 지도자들은 1999 년 이후 정기적으로 비공식회의를 개최해 왔다. 여러 분야에서 각료급, 고위급, 실무급 회의의 장이 설치되어 왔다. 3국은 경제 및 통상, 정보, 환경보호, 인적자원개발과 문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내실 있고 효과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3국은 APEC, ASEM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이러한 협력에 직접 참여해 왔다. 3국은 아세안+3 틀에서의 협력을 주도해 나가는 입장에서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최종 보고서의 권고사업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메콩강 유역개발 협력을 더욱 진전시켰으며,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3국의 지도자들은 한·중·일 3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3국간에 협력을 진전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이 한·중·일·일 그리고 중·일간 양자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더욱 증진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을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세계 모든 나라는 커다란 발전의 기회를 맞이함과 동시에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국가들인 한국, 일본, 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모든 국가들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3국간 협력의 목표는 발전을 지원하고, 동아시아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및 전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 3국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 견해를 같이하였다.

1. 3국간 협력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관계의 여타 규범에 따라 추진한다.
2. 3국은 상호신뢰 및 존중,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그리고 모두에게 윈-윈 결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경제관계와 통상, 투자, 금융, 운송, 관광, 정치, 안보, 문화, 정보통신기술, 과학 및 기술, 그리고 환경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3. 3국간 협력은 3국의 정부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되, 각국 정부는 산업계, 학계 그리고 여러 비정

- 부기구들도 그들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권장한다.
4. 3국간 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3국은 아세안+3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을 통하여 공조강화와 아세안 통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3국은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동북아의 경제협력 및 평화를 위한 대화를 증진한다.
  5. 3국간 협력은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비배타적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3국은 각각의 경험으로부터 서로 발전을 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3국 이외의 여타국가들과 구축해 온 협력의 틀을 계속 유지한다.

### III

3국간 협력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한·중·일 3국의 지도자들은 용이한 사업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다음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을 꾸준히 확대 심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1.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력

3국은 역내 모든 국가들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상호신뢰와 보완성으로 특징되는 경제협력과 무역을 발전시킨다. 3국은 또한 WTO 관련 규정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매력적인 무역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국은 도하개발아젠다 교섭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공동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반덤핑 규율 강화 등 제반규정을 균형 있게 강화해 나간다. 3국은 WTO 규정의 남용과 자의적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국은 무역촉진을 위하여 관세당국 및 운송당국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기존 채널을 통하여 품질 감독·검사·검역당국간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 아울러 3국은 관련 WTO 협약에 따라서 무역에 있어서의 식품안전 및 동 식물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국은 일반국민들의 인식, 인적교류, 경험공유 및 법 집행의 증진 등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력과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3국은 자국의 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 연구의 진전을 평가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장래에 있어서의 3국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의 방향을 모색한다.

동북아시아의 무역 및 투자 촉진과 인적교류 증진을 위하여 3국은 국제민간 항공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3국 항공당국간 기존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

3국은 각국의 국내 경제 부양을 위한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외직접투자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환영한다. 3국은 투자자들에 의해 제기된 구체적인 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등 해외직접투자 촉진을 위해 추가적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3국은 한·중·일 투자협정의 가능한 방안에 관한 비공식 공동연구를 개시한다.

3국은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교환과 사전협의의 강화를 한다면, 기존의 양자 및 3자간 협의를 충분히 활용한다.

#### 2. 정보통신기술산업에 관한 협력

3국은 우선적으로 광역통신, 이동통신, 전자상거래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3국은 하이테크 통신 연구 개발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신세대 통신 네트워크와 제3세대 이동통신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계속 증진해 나간다. 3국은 또한 보안측면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을 증진해 나간다. 3국은 아시아 전체의 광역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아시아내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촉진해 나간다.

### 3. 환경보호에 관한 협력

3국 환경장관회의와 같은 다양한 틀 아래에서 3국은 황사의 관측과 조기경보, 산성비 관측, 대기 수질 및 해양 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공통의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3국은 또한 환경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수자원 관리, 산림보호, 조림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 나간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3국은 지역 및 지구규모의 주요 환경문제에 관한 협의와 협력을 강화한다.

### 4.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에 관한 협력

3국은 폭풍, 태풍, 홍수 및 지진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또는 완화를 위한 협력과 대화를 증진해 나간다.

### 5. 에너지에 관한 협력

3국은 에너지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및 지구규모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 6. 금융에 관한 협력

역내 금융안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3국은 지속적으로 경제정책에 관한 대화를 강화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이행해 나간다. 3국은 향후 역내 금융 안정 메카니즘 창설과 지역채권시장 육성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지역금융협력을 계속 심화시켜 나간다. 3국은 지역의 균형된 경제발전과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의 달성을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서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한다.

### 7. 과학기술에 관한 협력

3국은 공통 관심사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신기술을 발전 시키기 위하여, “국제 핵융합 실험로 사업”의 성공을 위한 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과학 기술 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해 나간다.

### 8. 관광에 관한 협력

3국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 3국간 관광확대를 장려함으로써 관광산업을 더욱 증진한다. 3국은 관광 인프라 개발과 3국 이외의 거주자들, 예컨대 유럽 혹은 북미지역 거주자들이 3국을 여행하는 연계관광 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광당국 및 관광업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 9. 어업자원 보존에 관한 협력

3국은 효율적 어업관리를 통한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증진하기 위해 양자 및 3자 간에 협력해 나간다.

## IV

10. 3국은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향후 보다 나은 3자 협력을 위한 다양한 교류채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적교류, 문화,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뉴스 미디어, 공중보건 및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3국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간 교류 증대를 위하여 인적교류를 계속 장려하고 촉진한다. 3국은 또한 유 무형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 문화적 다양성 및 문명간 대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문화교류와 협력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3국은 교육 분야에서의 3자간 협력을 계속 지원해 나간다. 3국은 고등교육기관간 학생교류 확대, 학사기록 학위 학점의 상호인정 활성화, 언어교육 및 문화교류 장려를 위한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

3국은 정부차원의 긴밀한 협의와 함께 공동 세미나 또는 여타 형태로 미디어 기관간의 상호연락과 협력을 장려해 나간다.

3국은 자매도시 결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3국은 국민간 상호이해와 친선 강화를 위하여 축구 및 탁구 경기 개최 등 3국 스포츠계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 V

11. 3국은 국제적 관심사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유지 하는데 있어서의 유엔의 핵심적 역할을 계속 지원해 나간다. 3국은 유엔의 강화와 개혁을 포함한 유엔 관련 문제에 관한 대화와 협의를 증진해 나간다.

12. 3국은 다양한 형태의 아시아지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화된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업의 이행을 촉진하고, 동아시아 협력의 방향으로 ASEAN+3 협력을 증대해 나가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ASEAN의 핵심적 역할을 지원한다. 3국은 ARF, APEC 그리고 ASEM 등의 틀 내에서 협력을 더욱 증진한다.

13. 3국은 안보대화를 강화하고 군사 방위분야 인사의 교류 협력을 증진한다.

3국은 군축과 관련한 협의 및 협력을 강화한다. 3국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국제규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제적 틀의 바탕 위에서 효과적 수출통제를 포함한 정치적, 외교적,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예방하고 억제해 나간다.

3국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의 모든 관심사항을 다루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3국은 각국의 당국간 효과적인 협력을 통하여 급성 중증호흡기중후군(사스) 등 전염병 예방과 범죄 테러, 해적, 밀입국, 불법 마약거래 및 관련 범죄, 돈세탁, 국제 경제범죄, 사이버 범죄 및 기타 초국가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 VI

우리 한·중·일 지도자들은 효율적인 3자협력을 위하여 광범위한 채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우리들은 외교, 경제·무역, 금융, 환경보호, 정보 통신 및 특허분야에서 현행 각료급 회담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여타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회담이 개최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들은 또한 현재 진행중인 협력, 또는 본 공동선언상의 협력활동을 연구 계획 조정 및 감시하기 위하여 3자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3자 위원회는 한 중 일 정상회담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 Joint Declaration on the Promotion of Tripartite Cooperation among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Japan

Bali, Indonesia, 7 October 2003

WE, the heads of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Japan met during the ASEAN+3 Summit held in Bali, Indonesia on October 7th , 2003. We reviewed and acknowledged the positive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our bilateral relationships and trilateral cooperation. For the further promotion and strengthening of our tripartite cooperation in the new century, we hereby issue a joint declaration as follows:

I

With geographical proximity, economic complementarity, growing economic cooperation and increasing people-to-people exchanges, the three countries have become important economic and trade partners to one another, and have continuously strengthened their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affairs.

The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demonstrates the gratifying momentum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relations. Their leaders have held regular informal meetings since 1999. Their departments of various areas have established mechanisms for meetings at the ministerial, senior official and working levels. The three countries have developed fruitful and effective cooperation in priority areas such as economy and trade, inform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culture.

The three countries have actively supported and participated in various forms of regional cooperation such as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and Asia-Europe Meeting (ASEM). As a major driving force for cooperation under the 10+3 framework, the three countries have taken an active part in implementing the projects recommended by the East Asia Study Group (EASG) Final Report, furthered Mekong sub-regional cooperation, and made positive contributions to the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AI).

In this context, we, the Leaders of the three countries recognized that a solid foundation has been laid for the promotion of the tripartite cooperation among Japan, China and Korea. We were convinced that advancing and deepening the tripartite cooperation will not only serve to further promote the stabl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Japan-China, Japan-Korea and China-Korea but als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throughout East Asia.

II

The advent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alization era has brought with it huge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 as well as many new challenges to all countries in the world. As important countries in Asia and the whole world, Japan, China and Korea share responsibilities to maintain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and promote common development for all countries. The tripartite cooperation is aimed at boosting development, strengthening East Asian



cooperation and safeguarding peace and prosperity at the regional and global levels.

To this end, we, the Leaders of the three countries shared the following fundamental views:

1. The tripartite cooperation will be pursu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 Charter and other universally recognized norms governing international relations.
2. On the basis of mutual trust and respect, equality and mutual benefit and with a view to securing a win-win result for all, the three countries will seek ways to strengthen their across-the-board and future-oriented cooperation in a variety of areas, including economic relations and trade, investment, finance, transport, tourism, politics, security, cultu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3. With the governments of the three countries being the main players in the tripartite cooperation, they will encourage business and academic communities and variou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play their parts.
4. The tripartite cooperation is an essential part of East Asian cooperation. The three countries will,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in diversified forms such as ASEAN+3, continue to strengthen coordination and support the process of ASEAN integration. The three countries will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and peace dialogue in Northeast Asia for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5. The tripartite cooperation will be carried out in a transparent, open, non-exclusive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The three countries will maintain their respective mechanisms for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so as to benefit from one another's experience in the interests of their mutual development.

### III

To promote substantial progress in cooperation among our countries, we, the Leaders of Japan, China and Korea stressed the need to expand and deepen the tripartite cooperation in the following areas in a steadfast manner, starting with easier projects and gradually expanding the scope and depth of cooperation.

1. Cooperation in trade and investment. The three countries will develop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marked by mutual trust and complementarity in order to maximize the growth potentiality of all countries in the region and eventually to achieve common prosperity. The three countries will also endeavor, in consistence with related WTO rules, to strengthen coordination with a view to creating an attractive environment for trade and investment.

The three countries will make joint efforts to push forward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negotiations with a view to improving market access and strengthening the rules in a well-balanced manner, such as strengthening discipline on anti-dumping. The three countries will endeavor to prevent abusive and arbitrary application of WTO rules.

The three countries will strengthen dialogue and cooperation on trade facilitation among their customs and transport authorities and continu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ir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through the existing channels. They als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food safety and animal and plant health in trade, in conformity with relevant WTO agreements.



The three countries will strengthen coopera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hrough the promotion of public awareness, personnel exchanges, experience sharing and law enforcement.

Appreciating the progress of the joint study on the economic impact of a free trade agreement (FTA) conducted by their respective research institutes, the three countries will explore, in a timely manner, the direction of a closer future economic partnership among the three countries.

To facilitate trade and investment as well as to promote exchange of people in Northeast Asia, the three countries will promote existing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a view to developing international civil air transport among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three countries.

The three countr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FDI) for the enhancement of each domestic economy and welcome the various efforts that have been made for the promotion of IFDI. They confirm their intention to take further steps to promote IFDI including addressing specific issues raised by their investors in a fair and transparent manner. In this light, they will launch an informal joint study on the possible modality of trilateral investment arrangements.

The three countries will make full use of the existing bilateral and trilateral consultations while strengthening exchange of information and prior consultations so as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any trade dispute.

2. Cooperation amo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ndustries. The three countries will enhance, as a priority, exchange and cooperation in broadband communications, mobile communications and e-business. They will continue to advance high-tech communication R&D and promote exchanges in such areas as new generation communications network and the third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s. They will also expand the application of ICT in all sectors of society while ensuring its security. Meanwhile the three countries will seek to play a positive role in building a broadband network throughout Asia,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internet industry and facilitate the flow of information within Asia.
3. Cooperation in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three countries will, under various frameworks such as the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TEMM), intensify cooperation in addressing common environment concerns, such as dust and sandstorms and their monitoring and early warning, acid deposition monitoring, air, water and marine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They will also expand exchange and cooperation in green industries and technology and facilitate dialogue and cooperation on water resources management, forest conservation, reforestation and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In order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three countries will strengthen consultations and cooperation on major regional and global environmental issues.
4. Cooperation in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The three countries will promote cooperation and dialogue in this field with a view to preventing or mitigating the damage from disasters such as storms, typhoons, floods and earthquakes.
5. Cooperation in energy. The three countries will expand their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nergy and work together to strengthen regional and global energy security.

6. Financial cooperation. To promote financial stability in the region, the three countries will continue to strengthen dialogue on economic policies and implement the Chiang Mai Initiative. They will deepen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the future, including the exploration of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regional financing and stability mechanism and developing the regional bond market. The three countries will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ith a view to attaining well-balance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gion a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7.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three countries will promote and facilitat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at various levels, including in such areas as succeeding in ITER Project, to strengthen capacities to deal with issues of common concern and advance new technologies with a view to opening up new industry sectors.
8. Cooperation in tourism. The three countries will further boost the tourism industry, encouraging expansion of tourism among the three countries through appropriate measures, and strengthen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tourism authorities and industries in such areas as development of tourism infrastructure and circular tours going around the three countries for residents outside of the three countries, for example, residents of Europe or North America.
9. Cooperation in fishery resource conservation. The three countries will cooperate, bilaterally or trilaterally, to promote the sustainable use and conservation of fishery resources through effective fishery management.

#### IV

10.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and expanding diverse channels for exchanges for better trilateral cooperation in the future, the three countries will strengthen cooperation in a variety of areas, such as people-to-people contacts, culture,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news media, public health and sports.

The three countries will continue to encourage and facilitate personnel exchanges to increase contacts among youth and young leaders. They will also vigorously develop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to enhance cooperation in such areas as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ultural diversity and dialogue among civilizations.

The three countries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tripartit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y will enhance cooperation to expand student exchanges among their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promote mutual institutions' recognition of academic records, degrees and credits, and encourage language teaching and cultural exchange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 three countries will encourag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their media organizations through joint seminars or in other forms with close communication among the three governments. The three countries will expand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by arranging sister cities among the three countries or by other means.

For the enhancement of mutual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among their peoples, the three countries will encourage diversified form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the sports communities of the three countries such as organizing football and table tennis matches.

V

11. The three countries will strengthen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affairs and continue to support the cor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maintaining world peace and stability. They will promote dialogue and consultations on UN related issues, including the strengthening and reforms of the UN.
12. The three countries will make concerted efforts to press ahead with Asian regional cooperation in various forms. They will step up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measures put forward in the Final Report of the East Asia Study Group, promote the 10+3 cooperation in the direction of East Asia cooperation, and support ASEAN's key role in this process. They will further enhance cooperation within such mechanisms as ASEAN Regional Forum (ARF),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and Asia-Europe Meeting (ASEM).
13. The three countries will strengthen security dialogue and facilitate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the defense or military personnel of the three countries. The three countries will strengthen exchange of views and cooperation in disarmament, as well as prevent and curb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based on international regimes, through political, diplomatic and administrative measures including effective export controls, whil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mplying with the related international norms.  
The three countries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a peaceful 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facing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alogue and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addressing all the concerns of the parties and working together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14. The three countries will reinforce their cooperation in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including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and combating crimes and terrorism, sea piracy, people smuggling, trafficking in illegal drugs and related crimes, money laundering, international economic crimes, cyber-crimes and other transnational crimes through effective cooperation among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VI

WE, the Leaders of Korea, China and Japan shared the view that it was essential to have a wide range of channels for an effective tripartite cooperation. Accordingly, we decided to hold our summit meetings continuously. We will support the effective operation of on-going meetings at the ministerial level in foreign affairs, economy and trade, finance, environmental protectio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and patents, and endeavor to hold similar meetings in other areas. We also decided to set up a three-party committee to study, plan, coordinate and monitor the cooperation activities currently under way or envisaged by this Joint Declaration. The committee will submit progress reports to the annual summit meeting.

ROH Moo-hyun /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the Korea

KOIZUMI Junichiro / Prime Minister of Japan

WEN Jiabao / Premi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igned at Bali, Indonesia this 7<sup>th</sup> day of October 2003 in tripartite in the English language

## 11. 한·미 정상 공동성명

### 한·미 정상 공동성명

2008년 8월 6일, 서울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합중국 대통령은 2008.8.6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4.19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발전의 이정표가 되었음을 상기하였으며, 금번 8.6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발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북핵 및 북한 관련 문제, 주요 양자·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확대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양 정상은 양국간 전통적 우호관계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위해 양국간의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일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미 동맹]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지난 50여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기본적인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 협력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위가 확대·심화되어 나가야 하며,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하였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양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 양국 모두에게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한·미 양국간 동반자 관계에 있어 경제 분야의 항구적인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 비준될 수 있도록 자국의 입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 [북한 문제]

양 정상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의 진전을 환영하고, 이와 같은 진전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6자회담 틀 내의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상용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6자회담의 지속적 진전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

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하면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지속적인 진전에 맞추어 북한 주민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남·북한간 상생과 공영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 및 최근 남·북 대화 재개 제의에 대한 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한 긴밀한 협력과 정책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7.11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유감과 조의를 표명하고, 동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이러한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해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 [포괄적 협력]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과 여타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재건을 위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범세계적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회의의 프로세스」 및 「청정개발과 기후에 관한 아·태 파트너십」 등에서의 공동 노력을 포함하여, 야심차고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방안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초국가적 범죄 및 에너지 안보 등 범세계적 문제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민간 우주탐사, 우주과학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국 대학생들에게 미국에서의 영어 연수와 취업 및 전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해 줄 수 있는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의 신설을 추진해 나갈으로써 양 국 민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국 사증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그간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하고, 금년 말까지 동 가입이 이루어져, 양국민간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강한 연대가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및 7월 G-8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루어진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따뜻한 환대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다.

## Joint Statement of the ROK-U.S. Summit

Seoul, 6 August 2008

President Lee Myung-bak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resident George W. Bush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ld a summit meeting in Seoul on August 6, 2008. The two Presidents recalled that their first summit meeting at Camp David on April 19 was a milestone in the development of a ROK-U.S. strategic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 In their August 6 meeting, the two leaders had in depth discussions on the development of the ROK-U.S. Alliance, the approval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other North Korea-related issues, and ways to expand cooperation on important bilateral, regional and global issues.

The two Presidents agreed to develop the ROK-U.S. Alliance in a future-oriented way, based upon the traditional friendly relationship and mutual trust between the two nations. They also agreed to further strengthen strategic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ith a view to the prompt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creation of a new peace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 [Our Alliance]

The two Presidents affirmed that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s contributed to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for over fifty years. They reconfirmed their strong commitment to further developing the Alliance's fundamental mission through enhancing the countries' combined defense capabilities and continuing to implement the relevant agreements concerning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the relocation and realignment of U.S.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two Presidents resolved to move forward with developing the Alliance into a strategic and future-oriented structure to better address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future needs in the 21st Century. The two Presidents shared the view that on the basis of common values and trust, the scope of cooperation within the Alliance needs to broaden and deepen to encompass not only security cooperation, but also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operation. They further agreed to develop the Alliance in a way that will also contribute to peace and prosperity at the regional and global level.

### [Free Trade Agreement]

The two Presidents reaffirmed that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will boost trade, increase economic growth and create jobs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hile also adding an enduring economic pillar to our two countries' bilateral partnership. Toward that end, the two Presidents committed themselves to working with their respective legislatures to approve the KORUS FTA as soon as possible.

### [North Korea]

The two Presidents welcomed the progress made toward implementing the 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of September 19, 2005 and shared the view that this progress contributes to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y also agreed that a rigorous verification regime needs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the completeness and correctness of the declaration submitted by North Korea, and that the fulfillment of all the parties' obligations should be ensured through a monitoring mechanism within the Six-Party Talks framework.

The two Presidents urged North Korea to promptly complete its commitments in the second

phase of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and, through third-phase actions, to implement full abandonment of all its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The two Presidents reaffirmed their intent to take corresponding measures together with other participating countries in the Six-Party Talks, and agreed to continue close coordin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the further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The two Presidents made it clear that they are committed to helping North Korea integrate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reby partake in th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The two President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improv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North Korea and shared the view that in the process of normalizing relations, meaningful progress should be made on improving North Korea's human rights record.

President Bush reiterated his full support for President Lee's recent proposal to resume inter-Korean dialogue and his initiative to help improve the economic condition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in the context of continued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and to offer a path for the two Koreas to live side-by-side in harmony and prosperity, opening the way to their eventual unification. The two Presidents agreed to continue close cooperation and policy coordination on their relations with North Korea.

President Bush expressed his regret and condolences regarding the shooting death of a South Korean tourist at the Mt. Geumgang resort area on July 11, and urged relevant North Korean authorities to engage in inter-Korean dialogue to promptly resolve the case and prevent any recurrence of such a tragedy.

### [Broad-based Cooperation]

President Bush expressed deep appreciation for the contribution Korea has made to peace and reconstruction in Iraq, Afghanistan and other conflict areas. The two Presidents affirmed their commitment to continue working to forge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ambitious, realistic and achievable steps to respond to the challenge of global climate change, including through our joint efforts in the Major Economies Meeting process and the 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 The two Presidents shared the view that more effort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needed to address global issues and threats such as terrorism, WMD proliferation, transnational crimes, and energy security, and they agreed to continue close consultations on ways to cooperate in this regard.

The two Presidents agreed to actively promote close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civil space exploration, and space science and in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The two Presidents also agreed to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between the two peoples by working to launch the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WEST) Program, which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to study English, work, and enrich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The two Presidents also noted that the two governments have made great strides toward the Republic of Korea's full membership in the U.S. Visa Waiver Program (VWP). They pledged to continue joint efforts to bring about Korea's participation in the VWP by the end of this year,

---

thereby further solidifying the already strong people-to-people link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resident Lee welcomed President Bush's visit to Seoul which follows the Camp David Summit of last April and the Summit held last month on the occasion of the G-8 Summit. President Bush thanked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ir warm hospitality.





## 12. 한·중·일 3국 동반자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 한·중·일 3국 동반자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2008년 12월 13일, 일본 후쿠오카

우리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일본국 지도자들은 2008년 12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회동하였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 온 성과를 토대로, 향후 3국 협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한·중·일 3국의 경제는 역동적이고, 탄력적이며,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3국은 긴밀한 문화적·인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도전과 기회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 지역과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 및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조해 나간다는 비전과 책임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협력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적 신뢰 제고, 경제·통상 및 사회·문화적 교류 증진, 금융협력 강화 등 측면에서 그동안 이루어져 온 협력 성과에 만족을 표하며,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향후 3국간 협력을 보다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3국간 협력이 개방성, 투명성, 상호 신뢰, 공동 이익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의 원칙 하에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3국간 협력이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보다 광범위한 지역 협력체제의 발전에도 기여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또한, 한·중·일 협력이 세계 경제 및 금융상황 관련 심각한 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이해를 같이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 정부 및 민간을 막론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가 역내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중·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로의 길을 열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다른 계기와는 별도로 3국내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향후 한·중·일 정상회의를 3국내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내년에 중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

2008년 12월 13일 후쿠오카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총리: 원자바오

일본국 총리대신: 아소 타로

## Joint Statement for Tripartite Partnership

Fukuoka, Japan, 13 December 2008

We, the heads of Government/Stat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Japan met in Fukuoka, Japan on 13 December 2008.

We gathered here to help lay a solid foundation in promoting our tripartite cooperation in the

years to come, building upon progress to date.

Our economies are dynamic, resilient and closely interlinked. Our cultural and people-to-people ties are strong. We share common challenges as well as opportunities. We uphold visions and responsibilities for creating a peaceful, prosperous and sustainable future for the regio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and our tripartite cooperation contributes to achieving that goal.

We are content with the achievements made so far in the tripartite cooperation in enhancing mutual political trust, increasing trade and economic contact, expanding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and strengthening financial cooperation. We have committed ourselves to further promote our trilateral cooperation building on these achievements.

We have reached common recognition that the tripartite cooperation will be guided under the principle of openness, transparency, mutual trust, common interest and respect for our diverse cultures, and that it will contribute to advancing wider regional cooperation frameworks such as ASEAN+3, EAS, ARF and APEC in a complementary and mutually reinforcing manner. At the same time, we shared the common understanding that our tripartite cooperation is crucial to address the serious challenges in the global economy and the financial markets. We are determined to pursue comprehensive cooperation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ields within both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frameworks in the future-oriented manner.

We are convinced that our Summit Meeting will pave the way for a new era of tripartite partnership which will lead to the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region.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this first-ever Trilateral Summit Meeting held independently of other occasions, we decided to hold the Summit in the three countries on a regular basis. We look forward to meeting again in China next year.

Fukuoka, 13 December 2008.

LEE Myung-bak /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EN Jiabao / Premi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aro ASO / Prime Minister of Japan

### 13. 한·미동맹을 위한 동맹 미래비전

####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2009년 6월 16일, 워싱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의 개방된 사회 및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념, 그리고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는 한국 민과 미국민을 굳게 결속시키는 영속적인 의의와 공동의 가치, 그리고 상호 존중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동맹과 동반자 관계를 받쳐주는 유대는 우리 양 국민들간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 강화·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기업, 시민사회, 문화, 학술 및 여타 기관들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양 사회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지난 50여년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온 한·미 안보 관계의 초석이다. 그간 우리의 안보 동맹은 강화되어왔으며,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을 아우르며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공고한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어깨를 맞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양국이 직면한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다.

한·미 동맹은 21세기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양국의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역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동맹체조정을 위한 양측의 계획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 대한민국은 동맹에 입각한 한국방위에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한반도와 여내 및 그 외 지역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으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경제적 번영의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민간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연구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 우리는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우리는 번영을 증진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역대 기구 및 협력 상대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개방 사회와 개방 경제가 번영을 창출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지한다고 믿으며, 우리 양국과 민간 기구들은 이 지역에서 인권, 민주주의, 자유 시장,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아태지역에서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 양국 정부는 역대 국가간 안보문제에 관한 상호 이해, 신뢰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연대 협력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참여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 정부와 국민들은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해적, 조직 범죄와 마약, 기후변화, 빈곤, 인권 침해, 에너지 안보와 전염병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한·미 동맹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유지와 전후 안정화, 그리고 개발 원조에 있어 공조를 제고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G20와 같은 범세계적인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 다자 체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모든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동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보협의회의(SCM) 및 전략대화(SCAP)와 같은 기존의 양자 협력체제는 동맹이 공유하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

##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16 June 2009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building an Alliance to ensure a peaceful, secure and prosperous future for the Korean Peninsula,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world.

Our open societies, our commitment to free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and our sustained partnership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enduring friendship, shared values, and mutual respect that tightly bind the Korean and American peoples.

The bonds that underpin our Alliance and our partnership are strengthened and enriched by the close relationships among our citizens. We pledge to continue programs and efforts to build even closer ties between our societies, including cooperation among business, civic, cultural, academic, and other institutions.

The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Mutual Defense Treaty remains the cornerstone of the ROK-U.S. security relationship, which has guarantee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for over fifty years. Over that time, our security Alliance has strengthened and our partnership has widened to encompas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operation. Together, on this solid foundation, we will build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of bilateral, regional and global scope, based on common values and mutual trust. Together, we will work shoulder-to-shoulder to tackle challenges facing both our nations on behalf of the next generation.

The Alliance is adapting to changes in the 21st Century security environment. We will maintain a robust defense posture, backed by allied capabilities which support both nations' security interests. The continuing commitment of extended deterrence, including the U.S. nuclear umbrella, reinforces this assurance. In advancing the bilateral plan for restructuring the Alliance, the Republic of Korea will take the lead role in the combined defense of Korea, supported by an enduring and capable U.S. military force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region, and beyond.

We will continue to deepen our strong bilateral economic,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We recognize that the Korea-U.S. (KORUS) Free Trade Agreement could further strengthen these ties and we ar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chart a way forward. We aim to make low-carbon green growth into a new engine for sustainable economic prosperity and will closely cooperate in this regard. We will strengthen civil space cooperation, and work closely together on clean energy research and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rough our Alliance we aim to build a better future for all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establishing a durable peace on the Peninsula and leading to peaceful reunification on the

principles of free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We will work together to achieve the complete and verifiabl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s well as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to promote respect for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 the Asia-Pacific region we will work jointly with regional institutions and partners to foster prosperity, keep the peace, and improve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of the region. We believe that open societies and open economies create prosperity and support human dignity, and our nations and civic organizations will promote human rights, democracy, free markets, and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in the region. To enhance security in the Asia-Pacific, our governments will advocate for, and take part in, effective cooperative regional efforts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confidence and transparency regarding security issues among the nations of the region.

Our governments and our citizens will work closely to address the global challenges of terrorism,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iracy, organized crime and narcotics, climate change, poverty, infringement on human rights, energy security, and epidemic disease. The Alliance will enhance coordination on peace keeping, post-conflict stabilization and development assistance, as is being undertaken in Iraq and Afghanistan. We will also strengthen in multilateral mechanisms aimed at global economic recovery such as the G20.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work to achieve our common Alliance goals through strategic cooperation at every level. Proven bilateral mechanisms such as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and the Strategic Consultations for Allied Partnership will remain central to realizing this shared vision for the Alliance. /END/

## II. 안보 및 통일외교에 관한 주요 자료

### 1. 주요 성명

#### 1) 변영태 외무장관의 한국 통일 방안 제시

1954년 5월 22일

- (1) 통일 독립 민주한국을 수립하려는 견지에서 자유선거가 국제연합의 제반 결의에 의거한 국제연합 감시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2) 자유선거가 북한과 또한 남한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3) 자유선거는 이 제안이 채택된 후 6개월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4) 선거 전후를 통하여 國聯 선거감시위원은 동 선거 지역의 자유 분위기의 제 조건을 창조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행동과 언론 등의 완전한 자유를 향유하여야 한다.
- (5) 선거 전후를 통하여 입후보자와 그 가족들은 행동과 언론 등의 완전한 자유를 위시하여 민주 國에서 인정되고 또한 보장된 기타 인권을 향유하여야 한다.
- (6) 선거는 비밀투표와 또한 보통적인 성인 선거권의 기초에 입각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 (7) 全韓 입법대의원의 선출은 전 한국의 인구에 정비례하여야 한다.
- (8) 선거 지역의 인구에 정확히 비례된 대의원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國聯 감시하에 인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9) 全韓 입법기관은 선거 직후 서울에서 소집되어야 한다.
- (10) 하기 제 문제는 全韓 입법기관이 설치된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 통일한국의 대통령을 새로 선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
  - 대한민국의 현 헌법의 수정 여부 문제
  - 군대의 해산에 관한 문제
- (11) 대한민국의 현 헌법은 全韓 입법기관에 의해서 수정될지도 모를 조항을 제외하고는 계속 유효할 것이다.
- (12) 중국 군대는 선거일보다 1개월 앞서 북한으로부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13) 한국으로부터의 國聯軍의 점진적 철수는 선거에 앞서 시작될 것이나 全韓國이 통일 한국정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관할되며 國聯이 이를 증명하기 전에 완료되어서는 안된다.
- (14) 통일 독립 민주한국의 통일과 독립은 國聯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한다.

#### 2) 제25주년 광복절 경축사 중 ‘평화통일 구상 선언’ 발췌

1970년 8월 15일

무릇 공산주의의 정치체제는 기본 인권의 유린과 鐵의 紀律에 의지한 전체주의적 일당독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괴 김일성 체제는 같은 공산권 내에서조차도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형적인 극좌 모험주의와 역사 날조를 일삼는 개인 신격화가 판치는 폐쇄 사회입니다.

오늘의 북녘 땅은 그러한 전횡과 공포가 휩쓰는 가운데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하나의 병영으로 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듯 역사와 민족과 천륜과 양심을 외면한 흉악한 무력 도발 집단과 대치하여 통일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민족의 悲願인 조국 통일의 난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 통일이 아무리 절실한 우리 민족의 지상명령이라 하더라도 동족의 유혈을 강요하는 전쟁만은 피하여야 하며,

통일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꾸준한 인내와 최대한의 양식을 발휘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김일성 일파의 戰犯集團이 끝내 무력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폭력적인 침략을 감행하여 왔을 경우에는 이를 단호히 격퇴할 수 있는 ‘힘의 배양’도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이미 수차에 걸쳐 통일 노력의 본격화는 70년대 전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기에 이르면 우리의 주체적 역량의 충실과 국제적 여건의 성숙으로 통일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으리라고 내다보고, 특히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체제도 시대의 進運인 자유화 물결에 의해 스스로 변질될 것이며, 또 우리의 자유의 힘이 북녘까지 넘쳐흐를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기를 전망하면서, 나는 광복 4반세기에 즈음한 뜻깊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접근 방법에 관한 나의 구상을 밝히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즉, 북괴가 지금과 같은 전락적이며, 도전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한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이것은 가련이요, 위장이요, 기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며,

긴장 상태의 조화 없이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에의 접근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를 보장하는 북괴의 명확한 태도 표시와 그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괴는 무장공비 남침 등의 모든 전쟁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소위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해 온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하는 점을 명백하게 내외에 선언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북괴가 수락,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유엔에 의해서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에는, 나는 인도적 견지와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한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북괴가 한국의 민주·통일·독립과 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인정하고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한다면,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괴가 참석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구상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북괴에 대하여 ‘더 이상 무고한 북한 동포들의 民生을 희생시키면서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금년은 우리 나라가 처음으로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19세기 후반의 개화기로부터 근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1세기, 우리 민족은 낙후와 예속, 전쟁과 혼돈이 겹친 수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 시련을 용케도 참고 이겨냈으며,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중흥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녕 마지막 중흥의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오늘로서 시작되는 앞으로의 4만세기를 넘기면 금세기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 2000년경의 세계와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서있을 좌표가 어디이겠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때의 우리 조국은, 국토 통일을 이룩한지 이미 오래된 강력한 민주국가로서, 온 국민이 다 함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풍요한 선진 복지국가로서, 세계사의 주류에 당당히 참여하고 기여해 나가는 보람찬 모습으로 변모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3)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

1973년 6월 23일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 온 남북대화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추이에 비추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 통일을 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우리는 해방이 되었으나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국토는 兩斷되고 민족은 분열되었습니다.

당초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한 군사적 경계선이라고 하던 38선이 그 후 철의 장막으로 변하고, 남과 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 동안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38선의 해소와 통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교섭이 있었으나, 미·소간의 근본적 대립으로 실패에 돌아가고 결국 한국문제는 국제연합에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1947년 제2차 국제연합 총회는 남북한을 통한 자유로운 총선거의 실시를 결의하고, 이를 위해 임시한국위원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로 남한에서만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제연합에 의하여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게 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불의의 침략으로 인한 한국동란으로 무수한 동포가 생명을 잃고 전 국토는 초토화되었으며 3년간의 전란 끝에 휴전은 성립되었으나 분단은 계속되고 통일은 요원해졌습니다.

나는 이 분단으로 말미암은 동족의 고통을 덜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70년 '8·15 선언'에서 남북한간의 긴장 완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다음해 8월 12일 우리측은 남북 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으며, 작년 7월 4일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리하여 남북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근 2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성과는 우리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이하고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남북간의 장벽을 점차 제거하고,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서 상호간의 불신을 신뢰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대화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길이며,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불신 요소를 남겨둔 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군사 및 정치 문제의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측은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진행 중 밖으로는 사실상 조국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현상으로 보아 우리가 기대하는 바 남북대화의 결실을 얻기까지에는 앞으로도 많은 나관이 예견되며 상당히 긴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결과적으로 불신의 심화와 긴장의 고조마저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편 최근의 국제정세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 시대가 끝나고 현상유지를 기조로 하는 열강들



의 세력균형으로 평화공존을 유지하려는 것이 주된 주류라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일련의 주변 정세의 발전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국토 통일이 단시일 내에 성취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도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조국 통일이라는 민족 지상의 염원과 목표를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 현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 통일을 국내외의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화곡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강인하게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자주 역량으로 통일을 기필코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제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 완화와 국제 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민국은 상호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은 대외정책은 평화 선언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우호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대북한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둔다.

친애하는 남북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오늘의 내외 정세를 냉엄히 평가할 때 이 길만이 긴장 완화의 국제조류 속에서 민족의 위신과 긍지를 유지하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즐거움과 용감한 민족 앞에는 결코 실망이나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찬 용기와 슬기로 한반도의 평화, 거래의 변영, 그리고 조국 통일을 위해 힘차게 매진합시다.

1973년 6월 23일

대통령 朴正熙

#### 4) 대통령 국정연설 중 '민족화합 민주평화통일 제의' 발취

1982년 1월 22일

그동안 펼쳐진 역사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자기의 사상, 이념, 제도를

앞세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통일만을 고집하는 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 한 핏줄, 한 역사, 같은 문화와 같은 전통을 이어 온 하나의 민족이라는 입장에서 서서 이를 해결하려 할 때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은 어느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의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주도되어서도 안되고 무력 또는 폭력의 방법으로 추구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자유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본인은 지난해 1월 12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의 상호 방문과 직접 회담을 제의했던 것은 바로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길을 허심탄회하게 찾아보자는 데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의가 실현되도록 지금까지 기울어 온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본인은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이 실현될 경우 제시하려고 구상했던 통일방안을 밝힘으로써 북한 당국과 전세계에 대하여 우리의 참 뜻을 이해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한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 전체의 통일 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통일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 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서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헌법을 기초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통일헌법 초안이 마련되면 쌍방은 남북한 전역에 걸쳐 민주 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통일헌법을 확정 공포하고 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대방의 통일국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조국의 정치 이념과 國號, 대내외 정책의 기본 방향, 정부 형태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과 시기 및 절차 등은 민족통일협의회가 구성되어 쌍방이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토의·합의할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은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제시될 것입니다.

북한측이 진정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민족통일협의회에서 그들이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정당당당하게 내어놓고 우리측의 초안과 비교·검토하는 가운데 하나의 단일안을 만드는 절차에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 쌍방간에 이같은 통일헌법의 마련을 위한 역사적인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우선 신뢰가 조성되어야 하고 민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착실하게 해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남북 쌍방은 그 동안의 민족 자해적이며 비정상적인 관계에 중지부를 찍고 하루속히 민족적 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民族自愛의인 정상 관계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본인은 남북 쌍방이 무엇보다도 상호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 기초 위에서 민족 화합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 조치로서 다음의 합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첫째, 쌍방은 장차 통일국가가 수립될 때까지는 상호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둘째, 쌍방은 쌍방간 분쟁 문제 해결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셋째, 쌍방은 상호 관계에 있어서 현존하는 상이한 정치 질서와 사회 제도를 상호 인정하며 서로 상

대방의 내부 문제에 일체 간섭하지 아니한다.

넷째,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전쟁 방지를 위하여 현존 휴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 경쟁의 지양과 군사적 대치 상대의 해소 조치를 협의한다.

다섯째, 쌍방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며,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이산가족의 인도적 재회 문제를 포함하여 남·북간의 자유로운 인적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역·교통·우편·통신·체육·학술·교육·문화·보도·보건·기술·환경보존 등 제분야에서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다.

여섯째, 쌍방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상·이념·제도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전세계 모든 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모든 쌍무적 및 다자간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한다.

일곱째, 쌍방은 각료급 전권대표를 임명하여 각기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 쌍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락대표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자기측 관할 영역에 주재하는 상대방 연락대표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본인은 북한측이 하루속히 남북한 당국 최고대표자간의 회담에 호응하여 이 자리에서 이상의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본인은 조속한 시일 안에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쌍방의 최고대표단간의 예비회담을 개최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만약 북한측이 이같은 예비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한다면 이 예비회담에 소정의 대표단을 파견할 모든 준비를 이미 갖추어 놓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두고자 합니다.

## 5)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

1988년 7월 7일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온 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새 공화국의 정책을 밝히려 합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 분단의 고통을 겪어온지 반세기가 가까워 옵니다. 분단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슬픈 시련과 고난을 주었으며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남북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번영된 통일 조국을 여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겨레 모두에게 맡겨진 민족사의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분단된 남북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으며 남북으로 갈라진 겨레는 분단 그 날부터 오늘까지 서로가 서로를 불신, 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고통스런 분단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나 민족 통합은 우리의 책임 아래 우리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민족 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문화와 역사가 다른 민족 사이에도 과감한 개방과 교류의 새 물결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전쟁의 위험과 대결의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가 아직 비극적인 분단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등진 채 서로를 대결의 상대로 여겨 적대관계를 격화시켜 온 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겨레의 힘과 슬기를 모아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빛나는 역사와 문화 전통을 창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통일 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 길이 곧 민족 자존의 길이며 민족 통합의 길입니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해 나갈 적극적 조치를 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결의 관계를 지양해야 합니다.

북한이 책임있는 成員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그것이 북한 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은 상호간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 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합니다.

1.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 동포간의 상호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 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2.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생사·주소 확인, 서신 왕래, 상호 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지원한다.
3.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4.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5.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 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6.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

나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조치에 대해 북한측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측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온다면 보다 진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밝혀 둡니다.

나는 오늘의 이 선언이 통일을 향한 남북간의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천만 우리 겨레 모두가 슬기와 힘을 모은다면, 이 세기가 가기 전에 남과 북은 하나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1988년 7월 7일

대통령 盧泰愚

6)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관련 대통령 특별연설 발췌

1989년 9월 11일

저는 오늘 국민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이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민족사의 소망이며,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실현할 방안을 밝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시련으로 시작된 20세기를 영광으로 마무리지어야 할 이 세기의 마지막 연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세기에 들어서면서 주변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힘이 모자라 끝내 나라를 잃고 만 우리 민족은 해방의 날을 맞았음에도 그 불운의 연장선상에서 국토 분단과 동족상잔의 엄청난 비극을 겪어왔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와 힘을 모아 민족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兩斷한 이 분단의 아픔은 우리들 다음 세대, 다음 세기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겨레의 뜻과 열망을 한 데 모아 통일의 횃불을 높이 들고 민족 통일의 길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이야말로 우리의 넘치는 민족적 역량으로,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는 역사적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정치·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당당한 힘을 쌓았고 그것을 실천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불바다가 되었던 갯바위 위에서 일어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세계 10대 무역국가에 들어선 新興産業國家產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민주주의의 새로운 활력 속에 서울 올림픽을 사상 가장 훌륭한 대회로 치렀습니다.

동서남북 세계 160개국의 젊은이들이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교의 벽을 넘어 서울의 한마당에 모인 이 인류 화합의 대축제는 국제질서 속에서 파동적인 존재로 비쳐서 있던 우리 민족이 세계에 화해의 물결을 주도한 위업이었습니다.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같은 성취에 힘입어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 협력하는 적극적인 관계를 이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 동구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일고 있는 개방과 개혁의 물결은 그들 내부 체제와 정책의 변화는 물론 국제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단을 안겨주었고 그것을 40여 년 고착시켰던 세계의 질서와 힘의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같은 거대한 안팎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작년 7월 남북한이 더 이상 적대·대결하는 상대가 아니라 공동의 번영을 향해 협력해 가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상을 전세계에 밝혔습니다.

북한을 폐쇄와 고립으로부터 개방으로 이끌어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고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정책은 동·서 세계로부터 기대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40여 년의 세월동안 우리 스스로와 세계를 바꾸어 놓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장애가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한반도를 가르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으며 긴장과 대결은 늦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천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네 번을 거듭하여도 북한을 지배해온 경직한 체제는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거대한 물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공산화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기본 전략이나, 모든 것이 통제된 북한 사회 내부도 아직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열정은 뜨겁지만 우리가 맞고 있는 분단 현실은 이처럼 냉엄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북한은 도도한 세계적 변화의 물결이 도달하는 마지막 해안이 될지는 모르나, 결코 이 물결을 끝내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폐쇄 노선에 한계 상황을 맞고 있는 북한은 변화의 물결에 순응하여 끝내는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앞당겨지도록 돕고 이끌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탐과 인내, 겨레의 슬기와 문친 힘이 들어가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쏟아 그들이 통일의 길로 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작년 10월 4일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겨레의 뜻을 모아 새로운 정세 변화에 부응하여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방안을 밝히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국민들의 광범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국회 공청회를 거쳐 겨레의 소망을 실현할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는 엄숙한 의무에 따라 저는 남북이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 과정을 거쳐 민족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통일된 우리의 조국은 민족 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합니다.

민족 성원 모두의 참여와 기회 균등이 보장되고 다양한 주의·주장이 자유로이 표현되고 대변되는 민주공화체제는 온 겨레의 오랜 소망이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통일된 나라의 유일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된 조국에서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집단, 어느 계급도 특권이나 주도적인 지위를 누리거나 독재로 전횡하는 일은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된 조국은 민족 성원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며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을 보장하면서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를 이루어 세계의 평화와 인종의 복리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통일된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여야 하며, 이것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개의 나라를 영속시키는 형태는 온전한 통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민족 자결의 정신에 따라 주도적으로,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통일은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과 북이 분단 40여 년간 누적된 깊은 불신과 오랜 대결·적대의



관계를 그대로 두고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단이 있기까지 5천년의 긴 역사를 통해 한 핏줄,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전통, 그리고 같은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왔습니다.

이 민족공동체야말로 현재도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바탕이며 우리 민족의 결합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이자 이를 보장하는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국토 분단은 좌·우익간의 유혈 투쟁과 6·25 남침으로 인한 동족간의 처절한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의 분열로 심화되었습니다. 적대하는 두 체제로 나뉘어 반세기 가까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북의 겨레는 생활 양식과 가치관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이질화된 민족 사회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민족공동체를 올바로 회복,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 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간에 개방과 교류·협력을 넓혀 신뢰를 심어 민족국가로 통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면서 남북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정치적 통합의 여건은 성숙될 것입니다.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현장에 따라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합체제 아래에서 남과 북은 민족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토록 하여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 과정의 과도적 통일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남북 연합은 최고 결정 기구로 '남북 정상회의'를 두고, 쌍방 정부 대표로 구성된 '남북 각료회의'와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 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북은 각료회의와 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 사항 이행 등 실무를 위해 공동 사무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 대표를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 사무처를 비롯한 남북 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 구역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 구역은 점차 '統一平和市'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 각료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 의장으로 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인도,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분야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각료회의는 남북간의 모든 현안과 민족 문제를 협의·조정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되 구체적인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으로는 1천만 이산가족의 재결합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남북간에 정치적 대결 상황을 완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민족 역량의 쓸모 없는 낭비를 막으며 해외동포의 권익은 물론 민족적 이익을 함께 신장시킬 것입니다.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우선 남북 사회의 개방과 다각적인 교류·교역·협력을 추진하고 민족공동화를 함께 창달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 번영의 經濟圈을 형성하면 남북 모두의 발전을 이루고 민족 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과도한 군비 경쟁을 지양하고 무력 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뀌어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 평의회'는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同數의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되, 통일헌법의

기초와 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 각료회의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평의회는 통일헌법의 기초 과정에서 통일국가의 政治理念·國號·國家形態 등을 논의하고, 대내외 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정부 형태는 물론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시간·절차 등을 토의하여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은 각기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남북 평의회에 내놓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헌법 초안이 마련되면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통일조국의 국회는 지역 대표성에 입각한 상원과 국민 대표성에 입각한 하원으로 구성되는 兩院制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우리 겨레의 아상과 의사에 맞고, 남북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새 공화국 출범 이후 저는 남북간에 화해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남북의 정상이 서로 만나는 것임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열려 본격적인 남북 협력과 통일의 시대를 열 현장에 합의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현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 방안, 상호 불가침에 관한 사항, 통일의 중간 단계로서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담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속히 이같은 민족공동체 현상이 마련되어 온 겨레 앞에 공포되기를 기대합니다.

분단 45년이 되는 내년 8월 15일까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열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사에 통일을 이룩하는 새로운 장을 펼쳐 우리 세대에게 부여된 역사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유럽의 여러 민족과 국가들은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함께 번영을 일구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공동체 국가들은 지난날의 적대와 대결을 동반자의 관계로 바꾸어 1992년 완전한 경제통합체를 이루며 정치적 통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 지배 아래서도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지켜왔던 우리가 분단의 벽을 넘어 수천년 이어온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들도 자유와 인권의 폭을 넓히며 다양한 의사를 대표하는 복수정당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이념과 체제를 떠난 보편적 가치입니다.

나는 민족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우리 북한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들이 이같은 조처를 취하지 않고는 개방의 길로 나설 수도 없고, 우리와 교류·협력·연합하여 민족공동체에 합류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은 말로만 평화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적화통일 노선을 실질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자주·평화·민주적 통일의 길은 열릴 수 없습니다.

나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할 이같은 일을 실천



할 경우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기원을 여는 조처를 취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분단의 장벽이 높고 무거운 만큼 통일의 길은 험난합니다.

분단의 고통과 비극이 큰 만큼, 그것을 가시게 하는 데는 우리의 더 큰 역량과 지혜, 무한한 참을성과 피땀을 쏟아야 합니다.

이 모든 준엄한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환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은 조국의 통일이 아니라 겨레의 더 긴 시련일 뿐입니다.

민족 문제를 해결할 통일에 관한 한, 우리의 내부적인 이견과 갈등, 반목과 분열은 민주주의의 거대한 용광로 속에 녹여 무쇠와 같은 민족의 통일 의지를 창조해 내어야 합니다.

민주 변영으로 우리의 통일 역량이 더한층 커질 때 분단의 벽은 무너질 것이며, 겨레의 단합된 힘이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이겨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겨레의 보람 위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가장 훌륭한 올림피가 이 땅에서 열렸듯이, 온 민족의 지성이 응집되어 통일의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온 겨레의 염원을 담은 통일방안을 밝히면서 통일의 빛나는 그날을 여러분과 함께, 7천만 동포 모두와 함께 힘차게 열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9월 11일

대통령 盧泰愚

### 7)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 중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발췌

1994년 8월 15일

7천만 내외동포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7천만 민족의 안전과 생존, 그리고 통일과 변영에 대한 책임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7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책임을 통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사와 남북관계의 흐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나는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 번 가다듬고자 합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우리는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광복은 민주주의가 꽃피고, 변영이 넘치는 통일된 나라를 이룩할 때 완성됩니다.

세계사는 이미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하였고,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민주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민주주의의 기틀이 이 땅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았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이렇게 확립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수호될 것입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통일을 추진하는 우리의 기본철학 역시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 없는 민주가 있을 수 없고, 민주 없이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민족의 자주적 역량으로 냉전과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속원인 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해야 합니다.

통일은 어떻게 권력을 배분하느냐보다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통일은 계급이나 집단 중심의 이념보다도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가공적인 국가체제의 조립보다도,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 건설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일은 오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통일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서 반목과 불신을 쌓아온 남과 북이 하루 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하나의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단계>를 거쳐서, <민족 1국가 통일국가 완성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남과 북은 적대와 대립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예멘이 정치적 통일을 이루고도 내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화해와 협력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외형만의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존공영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남북연합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킴으로써 정치적 통합을 위한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은 통일의 중간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1민족 1국가로 통일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통일의 길은 민주와 번영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된 조국은 7천만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내외동포 여러분!

이제 한반도에서도 냉전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체제경쟁도 이미 끝났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로 귀결된 20세기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인류는 이미 냉전 대신에 자유화, 복지화,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대세 앞에 한반도만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구시대적 대남 적화전략을 마땅히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을 개선하는 과감한 개혁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를 기본적인 인권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 역류자 문제의 해결에도 지체없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허한 이념의 대결 대신에 민족의 복리증진을 남북관계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의 변화를 읽고,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를 하나씩 갖추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정권 탄생 이후 처음으로 권력승계 작업을 진행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안정 속에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국정부와 국민은 같은 민족으로서 할 수 있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이 협력 속에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여,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때, 자연스런 통일, 바람직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결코 민족공동체의 선진국 진입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창의와 능력을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은 신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신뢰는 서로가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실천에 옮기는 데서 생겨납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세계와 민족 앞에 그 실천을 약속한 화해와 협력의 대장전입니다.

지난 1년 여 동안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핵문제의 해결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준수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남북간의 화해 분위기를 위배하는 상호 비방은 중지되어야 하며,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 속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북한의 고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을 무기로 하는 폐쇄지향의 모험을 중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평화적 핵 에너지의 개발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첫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이 언제, 어떻게 오더라도, 통일은 결국 남과 북의 이질화된 민족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 발전시키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부터 모범적인 민족공동체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에의 영광과 환희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고통과 희생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의 문제는 곧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같은 민족으로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의연하고도 한결같은 자세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1994년 8월 15일

대통령 金永三

### 8) 제50주년 광복절 경축사 중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원칙’ 발췌

1995년 8월 15일

내외동포 여러분, 우리의 성취가 이처럼 빛나는 것임에도 우리의 광복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의 민족 성원 모두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의 완성일 것입니다.

통일의 큰 길을 열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평화 없이는 통일된 조국은 물론 민족의 장래 또한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민족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반드시 남북 당사자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책임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간의 합의 사항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첫걸음은 신뢰 구축이며, 신뢰는 서로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 실천에 옮기는 데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같은 기본 원칙을 밝히면서 남과 북이 지금의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광복 50주년이 되는 올해야말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나는 북한이 조속히 안정되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오고 남북간에도 신뢰가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평화통일은 우리 모두의 절실한 염원이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냉엄한 현실의 과제입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환상적인 기대도, 성급한 포기도 모두 금물입니다. 꾸준한 인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1994년 8월 15일

대통령 金 永 三

## 9) 제15대 대통령 취임사 중 ‘대북 3원칙’ 발췌

1998년 2월 25일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경쟁과 협력의 세기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외교는 냉전 시대와는 다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외교의 중심은 경제와 문화로 옮겨갈 것입니다. 협력 속에 이루어지는 무한경쟁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무역, 투자, 관광,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자주적 집단안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단결과 사기 넘치는 강군을 토대로 자주적 안보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한·미 안보체제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등의 집단안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을 위해 4자회담을 반드시 성공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 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나가기 바랍니다.

분단 반세기가 넘도록 대화와 교류는 커녕 이산가족이 서로 부모형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냉전적 남북관계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합니다. 1,300여 년간 통일을 유지해 온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도 안없는 죄책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북문제 해결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과 불가침,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미 남북한 당국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남북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의 대로를 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당면한 3원칙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셋째,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의 우방국가나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을 추진해도 이를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식량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북한 당국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나이 들어 차츰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남북의 가족들이 만나고 서로 소식을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점에 관해서 최근 북한이 긍정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예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학술의 교류, 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교류도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남북간의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의 교환을 제의합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1998년 2월 25일

대통령 金大中

## 10) 제16대 대통령 취임사 중 ‘평화변영정책’ 발췌

2003년 2월 25일

진정한 동북아 시대를 열자면 먼저 한반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은 것은 20세기의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런 한반도가 21세기에는 세계를 향해 평화를 발신하는 평화지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의 평화로운 관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부산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사서 평양, 신의주,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 유럽의 한복판에 도착하는 날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성과는 괄목할 만합니다. 남북한 사이에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일상적인 일처럼 빈번해졌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의 길이 모두 열렸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는 더욱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정책의 추진방식은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변영정책’을, 몇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호신뢰를 우선하고 호혜주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해 원활한 국제협력을 추구하겠습니다.

넷째, 대내외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참여를 확대하며 초당적 협력을 얻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변영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울러 저는 북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서는 안됩니다. 북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되도록, 우리는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러시아·유럽연합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50주년입니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소중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혜평등의 관계로 더욱 성숙시켜 나갈 것입니다. 전통우방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盧武鉉

## 11)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 중 ‘신 한반도 평화구상’ 발췌

2009년 8월 15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저는 북한 당국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북한이 그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입니다.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도 논의해야 합니다. 불과 4km를 사이에 두고 이토록 중화기와 병력을 반세기 이상 집중시키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눈앞에서 총부리를 겨누면서 어떻게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와 병력을 서로 줄이고, 뒤로 물러서야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두고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2009년 8월 15일  
대통령 李明博

## 2. 협정 및 합의서

### 1) 7·4 남북 공동성명

1972년 7월 4일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 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 적십자 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 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의 사항을 추진시키고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 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의 사항이 조국 통일을 一日千秋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

###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 남북 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장 남북 화해

-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 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태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 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합의한다.

### 제2장 남북 불가침

-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 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 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 연습의 통보 및 통제 문제,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 인사 교류 및 정보 교환 문제, 대량살상 무기와 공격 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문제, 검증 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 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 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선을 설치·운영한다.
-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태두리 안에서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 제3장 남북 교류·협력

-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 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교류·협력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 남북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 “제1장 남북 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 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장 체제(제도) 인정·존중

제1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중한다.

제4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결한다.

#### 제2장 내부 문제 불가침

제5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6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장 비방·중상 중지

제8조 남과 북은 언론·패러 및 그 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징인에 대한 지명 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계시물)을 비롯한 그 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군중 집회와 군중 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 제4장 파괴·전복 행위 금지

- 제15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 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 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비호하지 아니한다.

#### 제5장 정전 상태의 평화 상태로의 전환

- 제18조 남과 북은 현 정전 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인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현 정전 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 조치를 강구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민족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 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24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 제7장 이행 기구

- 제25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 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 화해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26조 “남북 화해 공동위원회” 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 중지 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 화해 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 제8장 수정 및 발효

- 제27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8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기 : 북측이 제기한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 민족을 대표하여 유일 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범불침투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 “제2장 남북 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장 무력 불사용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 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 사용 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 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 구역에 정규 무력이나 비정규 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3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 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 지역과 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문제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 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 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 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 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인 무력 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 재해나 항로 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 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

측에 그 사유와 적대 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6조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 충돌과 같은 분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 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 집단의 적대 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 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군사 분야의 모든 의견 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쌍방 군사 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 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 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남과 북의 지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 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 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 수단으로 문서 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 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 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 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 실무자 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 제5장 협의·이행 기구

제16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 합의서 제12조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 제6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장 경제 교류·협력

제1조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1. 남과 북은 물자 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 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사업을 실시한다.
2.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 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 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 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 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3.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 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 사업의 규모, 물자 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 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4.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 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5.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 사업과 물자 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6. 교류 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물자 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7. 남과 북 사이의 물자 교류는 상호성과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8. 남과 북 사이의 물자 교류에 대한 대금 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9. 남과 북은 청산결제는행 지정, 결제 통화 선정 등 대금 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10. 남과 북은 물자 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 관계를 민족 내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11. 남과 북은 경제 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 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12. 남과 북은 경제 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 보장, 이증과세 방지, 분쟁 조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13.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 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1. 북은 과학·기술, 환경 분야에서 정보 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 연구 및 조사, 산업 부문의 기술 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 보호 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2.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1.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2.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 상태가 해소되는 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3.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 왕래와 물자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 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4.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5. 남북 사이의 교류 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6.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 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취한다.
7.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8.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운행되는 교통 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 절차, 교통 수단 운행 방법, 통과 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 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1.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정보 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2.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4.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 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5. 남과 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 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 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1. 남과 북은 경제 분야의 여러 국제 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경제 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 설치 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 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 교류·협력”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 경제 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한다.

## 제2장 사회문화 교류·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1.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 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2.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 중단 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4.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 사업, 행

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 전시회를 진행한다.

5.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1. 남과 북은 모든 민족 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 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2. 민족 구성원들의 왕래는 남과 북 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이 방문 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 안전 및 무사 귀환을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5.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6.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게 왕래와 방문 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7.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취한다.
8.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 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 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1. 남과 북은 사회문화 분야의 여러 국제 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사회문화 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구 설치 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 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 교류·협력”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한다.

###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 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1.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 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 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3.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 면회소 설치 문제를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 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5.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 처리, 유골 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 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 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의 협의·실천은 적십자 단체들이 한다.

#### 제4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기: 쌍방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 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 문제를 남북 화해 공동 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 3)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년 1월 20일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 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실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1개월 안에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표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4) 미·북 간 기본합의문(일명 ‘제네바 합의’)

1994년 10월 21일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eneva, 21 October 1994

Delegations of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talks in Geneva from September 23 to October 21, 1994, to negotiate an overall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sides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attaining the objectives contained in the August 12, 1994 Agreed Statement between the U.S. and the DPRK and upholding the principles of the June 11, 1993 Joint Statement of the U.S. and the DPRK to achieve peace and security o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e U.S. and DPRK decided to take the following actions for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I. Both sides will cooperate to replace the DPRK's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with light-water reactor (LWR) power plants.

- 1) In accordance with the October 20, 1994 letter of assurance from the U.S. President, the U.S. will undertake to make arrangements for the provision to the DPRK of a light-water reactor project with a total generating capacity of approximately 2,000 MW(e) by a target date of 2003.

The U.S. will organize under its leadership an international consortium to finance and supply the light-water reactor project to be provided to the DPRK. The U.S., representing the international consortium, will serve as the principal point of contact with the DPRK for the LWR project.

The U.S., representing the consortium, will make best efforts to secure the conclusion of a supply contract with the DPRK within six months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for the provision of the LWR project. Contract talks will begin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date of this document.

As necessary, the U.S. and the DPRK will conclude a bilateral agreement f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 2) In accordance with the October 20, 1994 U.S. letter of assurance from the U.S. President, the U.S., representing the consortium, will make arrangements to offset the energy foregone due to the freeze of the DPRK's graphite moderated reactors, pending completion of the first LWR unit.

Alternative energy will be provided in the form of heavy oil for heating and electricity production.

Deliveries of heavy oil will begin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and will reach a rate of 500,000 tons annually, in accordance with an agreed schedule of deliveries.

- 3) Upon receipt of U.S. assurance for the provision of light-water reactor and for arrangements for interim energy alternatives, the DPRK will freeze its graphite moderated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and will eventually dismantle these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The freeze on the DPRK's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will be fully implemented within one month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During this one-month period, and throughout the freeze, the IAEA will be allowed to monitor this freeze, and the DPRK will provide full cooperation to the IAEA for this purpose.

Dismantlement of the DPRK's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will be completed when the LWR project is completed.

The U.S. and DPRK will cooperate in finding a method to store safely the spent fuel from the 5 MW(e) experimental reactor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LWR project, and to dispose of the fuel in a safe manner that does not involve reprocessing in the DPRK.

- 4)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date of this document U.S. and DPRK experts will hold two sets of experts talks.

At one set of talks, experts will discuss issues related to alternative energy and the replacement of the graphite-moderated reactor program with the LWR project.

At the other set of talks, experts will discuss specific arrangements for spent fuel storage and ultimate disposition.

## II. The two sides will move toward full normaliz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 1)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both sides will reduce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including restrictions o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financial transactions.
- 2) Each side will open a liaison office in the other's capital following resolution of consular and other technical issues through expert level discussions.
- 3) As progress is made on issues of concern to each side, the U.S. and DPRK will upgrade bilateral relations to the Ambassadorial level.

## III. Both sides will work together for peace and security o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 1) The U.S. will provide formal assurances to the DPRK, against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by the U.S.
- 2) The DPRK will consistently take steps to implement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3) The DPRK will engage in North-South dialogue, as this agreed framework will help create an atmosphere that promotes such a dialogue.

## IV. Both sides will work together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 1) The DPRK will remain a party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and will allow implementation of its safeguards agreement under the Treaty.
- 2) Upon conclusion of the supply contract for the provision of the LWR project, ad hoc and routine inspections will resume under the DPRK's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AEA with respect to the facilities not subject to the freeze. Pending conclusion of the supply contract, inspections required by the IAEA for the continuity of safeguards will continue at the facilities not subject to the freeze.

3) When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LWR project is completed, but before delivery of key nuclear components, the DPRK will come into full compliance with its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AEA(INFCIRC/403), including taking all steps that may be deemed necessary by the IAEA,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the Agency with regard to verifying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the DPRK's initial report on all nuclear material in the DPRK.

Kang Sok Ju  
Head of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rst Vice-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obert L. Gallucci  
Head of the Deleg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bassador at Larg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5) 6.15 남북공동선언

2000년 6월 15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 6)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2005년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7.12차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Joint Statement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19 September 2005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China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July 26th to August 7th, and from September 13th to 19th, 2005.

Mr. Wu Dawei,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Mr. Kim Gye Gw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Mr. Kenichiro Sasae,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r. Song Min-soon,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OK; Mr. Alexandr Alekseyev,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r. Christopher Hill,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United States attended the talks as heads of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chaired the talks.

For the cause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t large, the Six Parties held, in the spirit of mutual respect and equality, serious and practical talks concern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basis of the common understanding of the previous three rounds of talks, and agreed, in this context, to the following:

1. The Six Parties unanimously reaffirmed that the goal of the Six-Party Talks is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The DPRK committed to abandoning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nd returning, at an early date,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o IAEA safeguards.

The United States affirmed that it has no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as no intention to attack or invade the DPRK with nuclear or conventional weapons.

The ROK reaffirmed its commitment not to receive or deploy nuclear weapons in accordance with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affirming that there exist no nuclear weapons within its territory.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observed and implemented.

The DPRK stated that it has the right to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other parties expressed their respect and agreed to discuss, at an appropriate time, the subject of the provision of light water reactor to the DPRK.

2. Six Parties undertook, in their relations, to abide by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recognized no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undertook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exist peacefully together, and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subject to their respective bilateral policies.

The DPRK and Japan undertook to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3. The Six Parties undertook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nergy, trade and investment, bilaterally and/or multilaterally.

China, Japan, ROK, Russia and the US stated their willingness to provide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The ROK reaffirmed its proposal of July 12th 2005 concerning the provision of 2 million kilowatts of electric power to the DPRK.

4. The Six Parties committed to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The Six Parties agreed to explore ways and means for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5. The Six Parties agreed to take coordinated steps to implement the afore-mentioned consensus in a phased manner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commitment for commitment, action for action”.
6. The Six Parties agreed to hold the Fif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in Beijing in early November 2005 at a date to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s.

## 7)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007년 2월 13일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 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 I.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일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 II.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사용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인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 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5.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 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하였다.

Ⅲ.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을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 1) 한반도 비핵화
- 2) 미, 북 관계정상화
- 3) 일, 북 관계정상화
-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 5)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그룹들은 각각의 작업 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Ⅳ.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단계 기간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Ⅴ.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Ⅵ.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VII.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

중화인민공화국, 미합중국, 러시아연방, 대한민국은 각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II 조 5항 및 IV 조에 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이 자국의 우려사항이 다루어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또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

##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3 February 2007

The Third Session of the Fif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8 to 13 February 2007.

Mr. Wu Dawei,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Mr. Kim Gye Gw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Mr. Kenichiro Sasae,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r. Chun Yung-woo,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of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r. Alexander Losyukov,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r. Christopher Hill,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Department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attended the talks as heads of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chaired the talks.

I. The Parties held serious and productive discussions on the actions each party will take in the initial phas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The Parties reaffirmed their common goal and will to achieve early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and reiterated that they would earnestly fulfill their commitments in the Joint Statement. The Parties agreed to take coordinated steps to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in a phased manner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action for action".

II. The Parties agreed to take the following actions in parallel in the initial phase:

1. The DPRK will shut down and seal for the purpose of eventual abandonment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including the reprocessing facility and invite back IAEA personnel to conduct all necessary monitoring and verifications as agreed between IAEA and the DPRK.
2. The DPRK will discuss with other parties a list of all its nuclear programs as described in the Joint Statement, including plutonium extracted from used fuel rods, that would be abandoned pursuant to the Joint Statement.
3. The DPRK and the US will start bilateral talks aimed at resolving pending bilateral issues and moving toward full diplomatic relations. The US will begin the process of removing the designation of the DPRK as a state-sponsor of terrorism and advance the process of



terminating the application of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with respect to the DPRK.

4. The DPRK and Japan will start bilateral talks aimed at taking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5. Recalling Section 1 and 3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the Parties agreed to cooperate in 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In this regard, the Parties agreed to the provision of emergency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in the initial phase. The initial shipment of emergency energy assistance equivalent to 50,000 tons of heavy fuel oil (HFO) will commence within next 60 days.

The Parties agreed that the above-mentioned initial actions will be implemented within next 60 days and that they will take coordinated steps toward this goal.

III. The Parties agre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following Working Groups (WG) in order to carry out the initial actions and for the purpose of full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2. Normalization of DPRK-US relations
3. Normalization of DPRK-Japan relations
4. Economy and Energy Cooperation
5.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The WGs will discuss and formulate specific pla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n their respective areas. The WGs shall report to the Six-Party Heads of Delegation Meeting on the progress of their work. In principle, progress in one WG shall not affect progress in other WGs. Plans made by the five WGs will be implemented as a whole in a coordinated manner.

The Parties agreed that all WGs will meet within next 30 days.

IV. During the period of the Initial Actions phase and the next phase which includes provision by the DPRK of a complete declaration of all nuclear programs and disablement of all existing nuclear facilities, including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processing plant 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up to the equivalent of 1 million tons of heavy fuel oil (HFO), including the initial shipment equivalent to 50,000 tons of HFO, will be provided to the DPRK.

The detailed modalities of the said assistance will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s and appropriate assessments in the Working Group on Economic and Energy Cooperation.

V. Once the initial actions are implemented, the Six Parties will promptly hold a ministerial meeting to confirm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and explore ways and means for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VI. The Parties reaffirmed that they will take positive steps to increase mutual trust, and will make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VII. The Parties agreed to hold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on 19 March 2007 to hear reports of WGs and discuss on actions for the next phase.

#### Agreed Minute on Burden Sharing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the ROK, subject to their respective national governments' decisions, agreed to share the burden of assistance to the DPRK referred to in Paragraph II (5) and IV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equity; look forward to the participation of Japan on the basis of the same principle as its concerns are addressed; and welcome the particip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process.

### 8)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

2007년 10월 3일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 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 승인하였으며, 2.13 합의상의 초기조치 이행을 확인하였고, 실무그룹회의에서 도달한 컨센서스에 따라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 I. 한반도 비핵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따라 포기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영변의 5MWe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 조치들은, 모든 참가국들에게 수용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칙들에 따라 수석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여타 참가국들의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첫번째 조치로서, 미합중국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2주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이끌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13 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 II.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한다. 양측은 양자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합중국은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 및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양측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공약하였다.

## I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 및 에너지 지원

2.13 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기전달된 중유 10만톤 포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것이다. 구체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협력 실무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

## IV. 6자 외교장관회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북경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외교장관회담 이전에 동 회담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3 October 2007

The Second Session of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27 to 30 September 2007.

Mr. Wu Dawei,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Mr. Kim Gye Gw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Mr. Kenichiro Sasae,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r. Chun Yung-woo,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of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r. Alexander Losyukov,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r. Christopher Hill,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Department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attended the talks as heads of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chaired the talks.

The Parties listened to and endorsed the reports of the five Working Groups, confirmed the implementation of the initial actions provided for in the February 13 agreement, agreed to push forward the Six-Party Talks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consensus reached at the meetings of the Working Groups and reached agreement on 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the goal of which is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 I .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1. The DPRK agreed to disable all existing nuclear facilities subject to abandonment under the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and the February 13 agreement.

The disablement of the 5 megawatt Experimental Reactor at Yongbyon, the Reprocessing Plant (Radiochemical Laboratory) at Yongbyon and the Nuclear Fuel Rod Fabrication Facility at Yongbyon will be completed by 31 December 2007. Specific measures recommended by the expert group will be adopted by heads of delegation in line with the principles of being acceptable to all Parties, scientific, safe, verifiable,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t the request of the other Parties, the United States will lead disablement activities and provide the initial funding for those activities. As a first step, the US side will lead the expert group to the DPRK within the next two weeks to prepare for disablement.

2. The DPRK agreed to provide a complete and correct declaration of all its nuclear programs in accordance with the February 13 agreement by 31 December 2007.
3. The DPRK reaffirmed its commitment not to transfer nuclear materials, technology, or know-how.

#### II . On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Relevant Countries

1.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remain committed to improving their bilateral relations and moving towards a full diplomatic relationship. The two sides will increase bilateral exchanges and enhance mutual trust. Recalling the commitments to begin the process of removing the designation of the DPRK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and advance the process of terminating the application of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with respect to the DPRK, the United States will fulfill its commitments to the DPRK in parallel with the DPRK's actions based on consensus reached at the meetings of the Working Group on Normalization of DPRK-U.S. Relations.
2. The DPRK and Japan will make sincere effort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expeditiously in accordance with the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the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The DPRK and Japan committed themselves to taking specific actions toward this end through intensive consultations between them.

#### III . On Economic and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In accordance with the February 13 agreement, 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up to the equivalent of one million tons of HFO (inclusive of the 100,000 tons of HFO already delivered) will be provided to the DPRK. Specific modalities will be finalized through discussion by the Working Group on Economy and Energy Cooperation.

## IV. On the Six-Party Ministerial Meeting

The Parties reiterated that the Six-Party Ministerial Meeting will be held in Beijing at an appropriate time.

The Parties agreed to hold a heads of delegation meeting prior to the Ministerial Meeting to discuss the agenda for the Meeting.

### 9)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

2007년 10월 4일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아가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중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

- 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 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 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 Ⅲ. 경제·통상외교 활동

#### 1.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1-1〉 우리나라의 ODA 현황(순지출 기준)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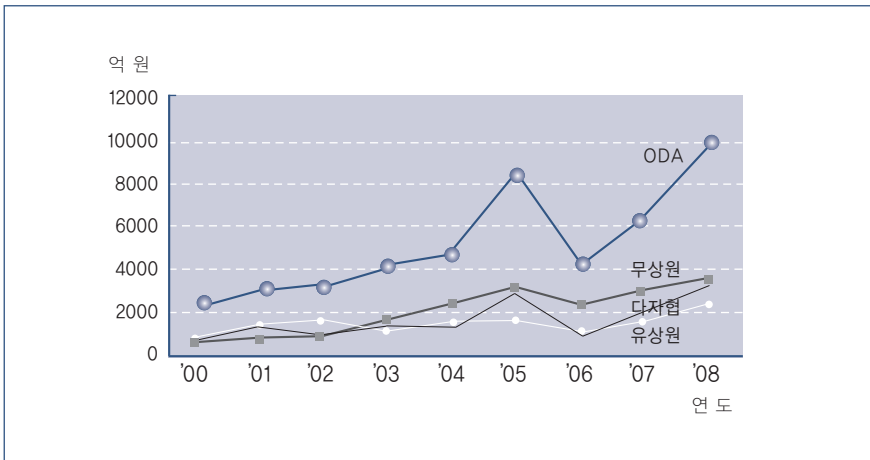
구분	'87~'00	'01	'02	'03	'04	'05	'06	'07	'08	총계
공적개발원조 (ODA)	1,711.6	264.7	278.8	365.9	423.3	752.3	455.3	699.1	797.2	5,748
① 양자간 협력										
○ 무상원조 (KOICA)	911.1	174.5	206.8	245.2	330.8	463.3	376.1	493.5	519.7	3,717.9
○ 유상원조 (EDCF)	(378.5)	(47.0)	(58.6)	(121.8)	(174.6)	(201.9)	(193.1)	(270.1)	(277.1)	(1,445.6)
② 다자간 협력	800.5	93.1	72.0	120.7	92.6	289.0	79.2	205.6	277.5	2,030.2
ODA/GNI (%)		0.06	0.05	0.06	0.06	0.10	0.05	0.07	0.09	

\* 1991~1993년간 KOICA 실적은 무상원조 전체 실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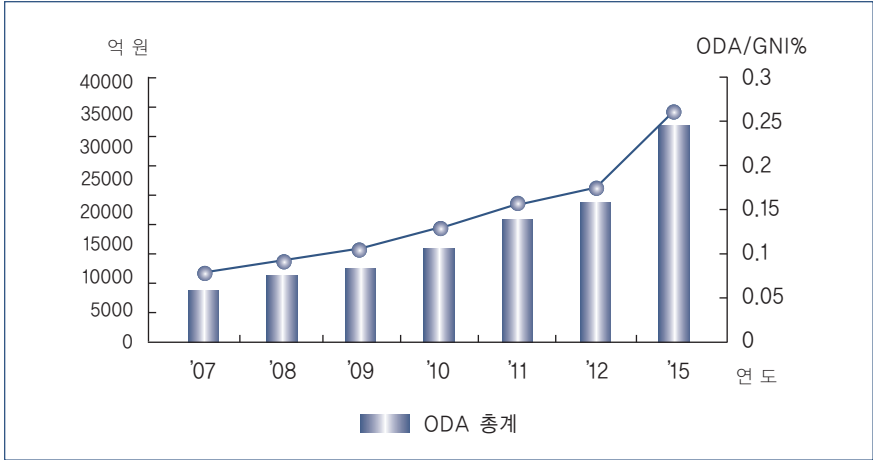
\* 2008년 실적은 잠정치임.

\*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한국국제협력단)

〈1-2〉 우리나라의 ODA 지원현황



〈1-3〉 우리나라의 ODA 증기 확대계획



2. 투자보장협정 체결 현황

구분	국 가	
발효국(84)	아 주(16)	
	스리랑카(1980.7.15)	방글라데시(1988.10.6)
	말레이시아(1989.3.31)	태국(1989.9.30)
	파키스탄(1990.4.15)	몽골(1991.4.30)
	중국(2007.12.1, 신협정)	인도네시아(1994.3.10)
	인도(1996.5.7)	라오스(1996.6.14)
	필리핀(1996.9.25)	캄보디아(1997.3.12)
	홍콩(1997.7.30)	일본(2003.1.1)
	브루나이(2003.10.30)	베트남(2004.6.5)
	미 주(16)	
	파라과이(1993.8.6)	페루(1994.4.20)
	아르헨티나(1996.9.24)	볼리비아(1997.6.4)
	미국(1998.7.30)	니카라과(2001.6.22)
	온두라스(2001.7.19)	파나마(2002.2.8)
엘살바도르(2002.5.25)	멕시코(2002.6.27)	
과테말라(2002.8.17)	코스타리카(2002.8.25)	
트리니다드토바고(2003.11.27)	가이아나(2006.8.20)	
자메이카(2007.11.5)	도미니카(공)(2008.6.10)	
구 주(33)		
서독(1967.1.15)	스위스(1971.4.7)	



## 한국외교 60년

구 분	국 가	
	화란(2005.3.1)	영국(1976.3.4)
	벨·룩경제동맹(1976.9.3)	프랑스(1976.11.4)
	덴마크(1988.6.2)	헝가리(1989.1.1)
	폴란드(1990.2.2)	러시아(1991.7.1)
	오스트리아(1991.11.1)	우즈베키스탄(1992.11.20)
	이태리(1992.6.26)	리투아니아(1993.11.9)
	터키(1994.6.4)	스페인(1994.7.19)
	루마니아(1994.12.31)	체코(1995.3.16)
	타지키스탄(1995.8.13)	그리스(1995.11.4)
	핀란드(1996.5.11)	포르투갈(1996.8.11)
	카자흐스탄(1996.12.26)	라트비아(1997.1.26)
	스웨덴(1997.6.18)	벨라루스(1997.8.9)
	우크라이나(1997.11.14)	슬로바키아(2006.2.7)
	알바니아(2006.5.18)	크로아티아(2006.5.31)
	불가리아(2006.11.16)	아제르바이잔(2008.1.25)
	키르기즈스탄(2008.7.8)	
	<b>중동·아프리카(19)</b>	
	튀니지(1975.11.28)	세네갈(1985.9.2)
	이집트(1997.5.25)	남아공(1997.6.6)
	나이지리아(1999.2.1)	카타르(1999.5.16)
	모로코(2001.5.8)	알제리(2001.9.30)
	사우디아라비아(2003.2.19)	이스라엘(2003.6.19)
	오만(2004.2.10)	아랍에미리트(2004.6.15)
	요르단(2004.12.25)	이란(2006.3.31)
	모리타니아(2006.7.21)	레바논(2006.12.21)
	리비아(2007.3.28)	쿠웨이트(2007.8.31)
	모리셔스(2008.3.7)	
서명국(15)	<b>미 주(1)</b>	
	브라질(1995.9.1)	
	<b>중동·아프리카(9)</b>	
	이란(1998.10.31)	탄자니아(1998.12.18)
	쿠웨이트(2004.7.15)	부르키나파소(2004.10.26)
	모리타니아(2004.12.15)	콩고(DRC) (2005.3.17)
	리비아(2006.9.21)	콩고(CC) (2006.11.8)
	가봉(2007.8.10)	
	<b>구 주(5)</b>	
	네덜란드(2003.7.12)	알바니아(2003.12.15)
	슬로바키아(2005.5.27)	크로아티아(2005.7.19)
	벨기에·룩셈부르크경제동맹(2006.12.12)	

(2008년 12월 31일 현재)

## 3. 양자간 무역 관련 협정 체결 현황

번호	국명	서명일	발효일	비고
1	필리핀	1961.2.24	1961.2.24	
2	대만	1961.3.3	1961.3.3	
3	태국	1961.9.15	1961.9.15	
4	말레이시아	1962.11.5	1962.12.31	
5	브라질	1963.5.21	1963.5.21	
6	인도	1964.4.29	1964.4.29	
7	캄보디아	1964.10.16	1964.12.8	2002.11.6 신협정 서명
8	이탈리아	1965.3.9	1965.3.9	
9	독일	1965.4.9	1965.4.9	
10	호주	1965.9.21	1965.9.21	1975.6.17 협정으로 대체
11	일본	1966.3.24	1966.3.24	
12	캐나다	1966.12.20	1966.12.20	
13	뉴질랜드	1967.1.31	1967.1.31	
14	스웨덴	1967.4.13	1967.4.13	의정서, 1998.4.26 종료
15	미얀마	1967.9.30	1967.9.30	
16	파키스탄	1968.10.21	1968.10.21	
17	멕시코	1966.12.12	1969.3.17	
18	니제르	1969.12.17	1969.12.17	
19	엘살바도르	1970.10.2	1971.1.26	
20	네팔	1971.5.6	1971.5.6	
21	오스트리아	1971.9.1	1971.10.30	
22	요르단	1972.11.19	1973.3.12	
23	가이아나	1973.3.26	1973.3.26	
24	중앙아프리카	1973.5.10	1973.5.10	
25	그리스	1974.10.4	1974.10.4	
26	코스타리카	1974.3.15	1975.6.27	
27	페루	1974.3.19	1976.5.5	
28	모로코	1976.5.22	1976.5.22	
29	이란	1976.2.12	1976.6.14	
30	세네갈	1975.4.15	1976.6.23	
31	포르투갈	1977.12.2	1977.12.2	
32	차드	1977.11.11	1978.1.27	
33	아이티	1977.5.11	1978.4.27	
34	과테말라	1977.3.26	1978.4.28	
35	칠레	1977.12.3	1978.7.14	
36	자메이카	1979.5.19	1979.5.19	
37	가봉	1975.7.7	1980.11.18	
38	라이베리아	1980.12.22	1981.5.7	
39	우루과이	1981.11.14	1982.8.11	

## 한국외교 60년

번호	국명	서명일	발효일	비고
40	자이르	1981.11.20	1982.8.11	
41	부르키나파소	1978.10.16	1982.9.13	
42	카메룬	1979.5.1	1983.8.13	
43	스리랑카	1984.5.28	1984.10.8	
44	코트디보르	1986.8.9	1986.8.9	
45	보츠와나	1986.5.1	1986.8.14	
46	콜롬비아	1985.5.31	1986.12.10	
47	파라과이	1981.12.17	1988.6.24	
48	폴란드	1989.11.1	1990.2.2	2004.5.1 종료
49	러시아	1990.12.14	1990.12.14	
50	루마니아	1990.8.7	1990.12.21	2007.1.1 종료
51	몽골	1991.3.28	1991.4.30	
52	카자흐스탄	1992.7.3	1992.7.3	
53	우스베키스탄	1992.6.17	1992.11.20	
54	중국	1992.9.30	1992.10.30	
55	베트남	1993.5.13	1993.6.12	
56	리투아니아	1993.9.24	1993.11.9	
57	크로아티아	1995.6.12	1995.11.15	
58	불가리아	1994.7.14	1996.6.10	2006.12.31 종료
59	우크라이나	1995.11.30	1997.4.25	2008.10.13 개정
60	이집트	1996.3.18	1998.5.2	
61	이디오피아	2002.6.3	2003.4.24	
62	벨라루스	2004.5.17	2004.11.8	
63	리비아	2006.9.21	2007.2.26	
66	이란	2006.7.6	2009.6.3	
[7-1]	캄보디아	2002.11.6	미발효	
64	아르헨티나	2004.11.15	미발효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65	레바논	2005.1.27	미발효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2009년 6월 30일 현재)

## 4. 항공협정 체결 현황

번호	국명	서명일	발효일	비고
1	말레이시아	1967.3.2	1967.6.29	
2	일본	1967.5.16	1967.8.30	
3	태국	1967.7.7	1968.3.5	개정: 1969.11.17, 1970.5.26, 1978.12.13, 1989.10.19, 1991.10.31
4	필리핀	1969.7.22	1969.8.11	
5	네덜란드	1970.6.24	1970.12.30	개정: 1995.9.19
6	싱가포르	1972.2.2	1972.2.2	
7	프랑스	1974.6.7	1974.7.16	개정: 1989.3.30, 2008.10.9
8	벨기에	1975.10.20	1975.10.20	
9	스위스	1975.12.15	1976.11.20	개정: 1984.11.17, 1990.8.20
10	스리랑카	1978.1.20	1978.1.20	
11	미얀마	1978.1.28	1978.1.28	
12	요르단	1978.5.14	1978.7.23	
13	라이베리아	1978.6.13	1978.9.27	
14	방글라데시	1979.2.13	1979.3.12	
15	오스트리아	1979.5.15	1979.7.14	
16	터키	1976.6.17	1979.10.16	
17	칠레	1979.8.14	1980.10.24	개정: 2006.6.20.
18	케냐	1981.1.13	1981.1.13	
19	쿠웨이트	1981.10.13	1982.1.12	
20	파나마	1979.12.28	1982.10.14	
21	사우디아라비아	1976.11.12	1984.1.21	가서명 후 발효
22	영국	1984.3.5	1984.3.5	개정: 1990.10.24 (고시198), 1991.10.30 (고시210), 1996.7.9 (고시294), 2001.6.29 (고시418)
23	이라크	1985.5.29	1986.1.29	
24	대만	1986.11.14	1986.11.14	
25	오만	1983.5.5	1987.2.1	
26	이집트	1979.7.30	1988.6.1	
27	캐나다	1989.9.20	1989.9.20	
28	인도네시아	1989.9.27	1989.9.27	
29	멕시코	1988.7.21	1989.11.9	개정: 2003.1.3
30	헝가리	1989.11.22	1990.5.19	
31	몰디브	1990.6.27	1990.8.20	

## 한국외교 60년

번호	국명	서명일	발효일	비고
32	체코	1990.10.26	1990.10.26	*분리전 체코슬로바키아 *2005.2.14 개정
33	스페인	1989.6.21	1991.1.14	
34	유고	1990.11.10	1991.5.31	
35	몽골	1991.10.23	1991.11.28	
36	인도	1992.3.16	1992.3.16	
37	폴란드	1991.10.14	1992.4.3	
38	호주	1992.2.26	1992.4.9	
39	베트남	1993.5.13	1993.6.14	2008.4.28 개정
40	뉴질랜드	1993.5.10	1993.8.20	2007.8.21 개정
41	우즈베키스탄	1994.6.6	1994.6.6	
42	튀지	1994.10.28	1994.10.28	
43	중국	1994.10.31	1994.10.31	
44	튀니지	1994.11.24	1995.2.6	
45	불가리아	1994.8.19	1995.2.23	
46	브라질	1992.8.11	1995.5.31	
47	남아공	1995.7.7	1995.7.7	
48	그리스	1995.1.25	1996.4.9	
49	홍콩	1996.3.29	1996.7.9	
50	파키스탄	1996.7.22	1996.8.7	
51	핀란드	1996.11.12	1997.2.1	
52	마카오	1997.4.3	1997.4.10	
53	몰타	1997.3.25	1997.5.22	
54	루마니아	1994.3.10	1997.7.15	
55	이스라엘	1994.12.15	1997.7.22	
56	미국	1998.6.9	1998.6.9	2008.2.19 항공안전협정 체결
57	독일	1995.3.7	1998.7.19	
58	이란	1998.10.31	2001.3.12	
59	캄보디아	2001.4.10	2001.5.10	
60	우크라이나	1996.12.16	2003.3.6	
61	모로코	2000.6.1	2003.4.10	
62	룩셈부르크	2000.9.27	2003.5.21	
63	러시아	2003.3.13	2003.5.21	
64	브루나이	1992.8.5	2003.7.30	
65	아르헨티나	1996.9.9	2004.1.15	
66	네팔	2004.9.21	2005.3.18	
67	아제르바이잔	2006.5.11	2006.12.7	2007.12.25 개정
68	키르기즈	2006.7.11	2007.6.26	
69	벨라루스	2007.11.5	2008.11.13	
70	투르크메니스탄	2008.11.6	2009.1.5	

번호	국명	서명일	발효일	비고
71	카타르	2005.11.27	2009.2.15	
72	지부티	1980.6.13	미발효	
73	가봉	1984.9.22	미발효	
74	알제리	2005.1.17	미발효	
75	아랍에미리트	2005.11.22	미발효	

(2009년 6월 30일 현재)

## 5. 어업협정 체결 현황

국가명	서명일	발효일	국가명	서명일	발효일
이란	1977.5.11	1978.4.1	모리타니아	1984.1.7	1984.1.7
투발루	1980.6.18	1980.6.18	에쿠아도르	1984.5.22	1984.9.19
쿠파일랜드	1980.8.25	1980.8.25	러시아	1991.9.16	1991.10.22
프랑스	1980.9.19	1980.12.12	파푸아뉴기니	1992.1.25	1992.4.15
솔로몬아일랜드	1980.12.12	1980.12.18	일본	1998.11.28	1999.1.22
키리바시	1980.12.18	1980.12.19	중국	2000.8.3	2001.6.30
호주	1983.11.23	1983.11.24			

(2009년 6월 30일 현재)

## 6. 해운협정 체결 현황

번호	국명	서명일	발효일	비고
1	일본	1950.10.4	1950.10.4	연장적용합의
2	미국	1956.11.28	1957.11.7	우호·통상·항해조약
3	독일	1965.4.9	1970.12.30	
4	덴마크	1980.1.9	1980.1.9	
5	싱가포르	1981.5.26	1981.5.26	
6	대만	1983.9.19	1984.1.16	정지
7	파키스탄	1984.3.3	1984.4.1	
8	노르웨이	1984.9.17	1984.9.17	
9	말레이시아	1988.7.21	1988.9.23	
10	나이지리아	1989.8.17	1990.10.4	
11	중국	1993.5.27	1993.6.26	
12	영국	1994.8.11	1995.7.10	
13	네덜란드	1995.2.3	1995.12.1	
14	베트남	1995.4.12	1996.11.11	
15	태국	2002.5.13	2002.8.28	
16	이스라엘	2004.8.31	2005.2.27	
17	알제리	2003.12.9	2005.8.18	
18	불가리아	2005.6.16	2005.11.24	
19	그리스	2006.9.4	2007.7.31	

번호	국명	서명일	발효일	비고
20	사이프러스	2008.12.2	2009.7.10	
21	벨·룩 경제동맹	1987.1.9	미발효	
22	우크라이나	2005.10.20	미발효	

(2009년 6월 30일 현재)

## 7. 양자간 원자력협정 체결 현황

번호	국명	서명일	발효일	비고
1	미국	1972.11.24	1973.3.19	1974.6.26 개정
2	캐나다	1976.1.26	1976.1.26	2002.7.10 개정
3	호주	1979.5.2	1979.5.2	
4	벨기에	1981.3.3	1981.3.3	
5	프랑스	1981.4.4	1981.4.4	
6	독일	1986.4.11	1986.4.11	
7	일본	1990.5.25	1990.5.25	
8	영국	1991.11.27	1991.11.27	
9	중국	1994.10.31	1995.2.11	
10	베트남	1996.11.20	1997.1.6	
11	아르헨티나	1996.9.9	1997.9.19	
12	터키	1998.10.26	1999.6.4	
13	러시아	1999.5.28	1999.10.8	
14	체코	2001.3.16	2001.6.1	
15	이집트	2001.8.14	2002.6.24	
16	루마니아	2004.2.3	2004.9.6	산업·연구개발 분야
17	브라질	2001.1.18	2005.7.25	
18	칠레	2002.11.12	2006.9.3	
19	우크라이나	2001.7.23	2009.6.11	
20	요르단	2008.12.1	2009.5.5	
21	카자흐스탄	2004.9.20	미발효	
22	인도네시아	2006.12.4	미발효	
23	UAE	2009.6.22	미발효	

(2009년 6월 30일 현재)

## 8.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현황

번호	국명	서명일	발효일	비고
1	캐나다	1971.4.2	1971.4.2	기술협력(각서)
2	스페인	1975.7.14	1976.3.17	
3	파라과이	1975.7.31	1977.12.9	
4	코스타리카	1979.8.20	1981.9.18	
5	프랑스	1981.4.4	1981.12.18	
6	콜롬비아	1981.6.1	1982.2.5	
7	도미니카공화국	1982.2.2	1982.11.10	
8	파푸아뉴기니	1983.7.4	1983.11.9	
9	이탈리아	1984.2.3	1984.2.3	
10	영국	1985.6.14	1985.6.14	
11	태국	1985.6.11	1985.8.27	
12	일본	1985.12.20	1985.12.20	
13	필리핀	1981.7.7	1986.8.12	
14	독일	1986.4.11	1986.9.9	
15	파키스탄	1985.5.9	1986.10.27	
16	말레이시아	1985.7.18	1986.11.24	
17	핀란드	1989.5.24	1989.7.6	
18	헝가리	1989.3.29	1989.7.7	
19	멕시코	1991.9.25	1991.9.25	과학협력(약정)
20	러시아	1990.12.14	1991.12.18	
21	중국	1992.9.30	1992.10.30	
22	우즈베키스탄	1992.6.17	1992.11.20	
23	브라질	1991.8.8	1992.12.30	
24	그리스	1987.9.16	1994.5.9	
25	우크라이나	1992.7.1	1994.5.20	
26	스리랑카	1994.5.25	1994.6.24	
27	베네수엘라	1993.10.8	1994.8.4	
28	폴란드	1993.6.29	1994.10.3	
29	튀니지	1994.11.24	1994.12.24	
30	체코	1995.3.4	1995.4.3	
31	슬로베니아	1994.5.30	1995.4.24	
32	베트남	1995.4.12	1995.5.12	
33	방글라데시	1995.5.26	1995.6.25	
34	이스라엘	1994.11.21	1995.9.22	
35	칠레	1994.11.21	1996.7.8	
36	카자흐스탄	1995.5.16	1997.2.13	
37	싱가포르	1997.2.15	1997.3.17	
38	미국	1999.7.2	1999.7.2	1993년도 조약 개정, 2004.7.2 연장교환각서



## 한국외교 60년

번호	국명	서명일	발효일	비고
39	호주	1999.9.17	2000.4.5	
40	아르헨티나	2000.10.31	2003.2.12	
41	남아공	2004.2.24	2004.8.31	
42	알바니아	1995.5.24	2006.5.18	
43	인도	2006.2.7	2006.8.3	1976.8.30 조약 대체
44	루마니아	2006.9.6	2007.2.27	과학기술개발 및 혁신 협력 의정서
45	스위스	2008.5.6	2008.5.26	
46	이탈리아	2007.2.16	미발효	

(2009년 6월 30일 현재)

### 9. 환경 관련 국제협약 가입 현황

	협약 명(영문, 국문)	체결 년도	발효 일자	한국가입 (발효일자)
1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1985 3.22	1988 9.22	1992.2.27 (1992.5.27)
2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1987 9.16	1989 1.1	1992.2.27 (1992.5.27)
3	The London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몬트리올의정서의 런던 개정서)	1990 6.29	1992 8.1	1992.12.10 (1993.3.10)
4	The Copenhagen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몬트리올의정서의 코펜하겐 개정서)	1992 11.25	1994 6.14	1994.12.2 (1995.3.2)
5	The Montreal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몬트리올의정서의 몬트리올 개정서)	1997 9.17	미발효	1998.8.19 (1999.11.10)
6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국제포경규제협약)	1946 12.2	1948 11.1	1978.12.29 (1978.12.29)
7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ea by Oil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1954년 국제협약)	1954 5.12	1958 7.26	1978.7.31 (1978.10.31)
8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1969 11.29	1975 6.19	1993.12.21 (1994.1.20)
9	Protocol to the 196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 의정서)	1976 11.19	1981 4.8	1992.12.8 (1993.3.8)
10	Protocol of 1992 to Amend the 196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	1992 11.27	1996 5.3	1997.3.7 (1998.5.15)

	협약명(영문, 국문)	체결 년도	발효 일자	한국가입 (발효일자)
1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유류오염 손해배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1971 12.18	1978 10.16	1992.12.8 (1993.3.8) 1997.3.7 탈퇴선언
12	Protocol of 1992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1971년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	1992 11.27	1996 5.3	1997.3.7 (1998.5.15)
13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London Convention)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1972 12.29	1975 8.3	1993.12.21 (1994.1.20)
14	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96년 의정서)	1996 11.7	2006 3.24	2009.1.22 (2009.2.21)
15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1973 11.2	1983 10.2	1984.7.23 (1984.10.23)
16	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 국제협약 1978년 의정서)	1978 2.17	1983 10.2	1984.7.23 (1984.10.23)
17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1980 5.2	1981 4.7	1985.3.29 (1985.4.28)
18	The Antarctic Treaty (남극조약)	1959 12.1	1961 6.23	1986.11.28 (1986.11.28)
19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1973 3.3	1975 7.1	1993.7.9 (1993.10.7)
20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1992 5.22	1993 12.29	1994.10.3 (1995.1.1)
21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Ramsar Convention)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람사협약)	1971 2.2	1975 12.21	1997.3.28 (1997.7.28)

	협약 명(영문, 국문)	체결 년도	발효 일자	한국가입 (발효일자)
22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심각한 한발 및/또는 사막화를 경험한 국가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연합 협약)	1994 10.14	1996 12.26	1999.8.17 (1999.11.15)
23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종 및 고도회유성어종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	1995 12.	2001 12.11	2008.2.1 (2008.3.2)
24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1989 3.22	1992 5.5	1994.2.28 (1994.5.29)
25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1998 9.1	2004 2.24	2003.8.11 (2004.2.24)
26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국제식물보호협약)	1951 12.6	1952 4.3	1953.12.8 (1953.12.8)
27	Plant Protection Agreement for the East Asia and Pacific Region(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 협정)	1956 2.27	1956 7.2	1981.11.4 (1981.11.4)
28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ICCAT)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1966 5.14	1969 3.21	1970.8.28 (1970.8.28)
29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1992 5.9	1994 3.21	1993.12.14 (1994.3.21)
30	Kyoto Protocol to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1997 12.11	2005 2.16	2002.11.8 (2005.2.16)
31	Convention on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South-East Atlantic (동남대서양 생물자원보존협약)	1969 10.23	1971 10.24	1981.1.19 (1981.2.19)
32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World Heritage Convention)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1972 11.23	1975 12.17	1988.9.14 (1988.12.14)

	협약명(영문, 국문)	체결 년도	발효 일자	한국가입 (발효일자)
33	Convention for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1976 12.10	1978 10.5	1986.12.2 (1986.12.2)
34	Convention on Future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Northwest Atlantic (북대서양 다자간 장래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1978 10.24	1979 1.1	1993.12.21 (1993.12.21)
35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1980 3.3	1987 2.8	1982.4.7 (1987.2.8)
36	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 (Assistance Convention)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1986 9.26	1987 2.26	1990.6.8 (1990.7.9)
37	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 (Notification Convention)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1986 9.26	1986 10.27	1990.6.8 (1990.7.9)
38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1994 (ITTA) (1994년 국제열대목재협정)	1994 1.26	1997 1.1	1995.9.12 (1997.1.1)

(2009년 6월 30일 현재)

## 10. FTA 추진 현황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체결 및 서명	칠레	1999년 12월 협상 개시, 2003년 2월 서명, 2004년 4월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4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8월 서명, 2006년 3월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	2005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12월 서명, 2006년 9월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2005년 2월 협상 개시, 2006년 8월 기본·분쟁 상품무역협정 서명, 2007년 6월 발효, 2007년 11월 서비스무역협정 서명 2009년 5월 발효, 2009년 4월 투자협정 협상 타결, 2009년 6월 서명	우리의 제5위 교역상대국
	미국	2006년 6월 협상 개시, 2007년 6월 협정문 서명	거대선진경제권
	인도	2006년 3월 협상 개시, 2009년 2월 9일 가서명	BRICs국가, 거대시장
	EU	2007년 5월 협상 개시, 2009년 3월 제8차 협상 (공식협상 종료)	세계최대경제권 (GDP기준)

## 한국외교 60년

진행단계	상 대 국	추 진 현 황	의 의
협상 진행 단계	캐나다	2005년 7월 협상 개시, 2008년 3월 제13차 협상	북미 선진 시장
	GCC	2007년 11월 사전협의 개최, 2008년 7월 제1차 협상 2009년 3월 제2차 협상	자원부국, 아중동 국가와의 최초 FTA
	멕시코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2007년 12월 협상 재개, 2008년 6월 제2차 협상	북중미 시장 교두보
	페루	2007년 10월~2008년 5월 민간공동연구, 2009년 3월 제1차 협상 2009년 5월 제2차 협상 개최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호주	2007년 5월~2008년 4월 민간공동연구, 2008년 10, 12월 2차례 정부간 예비협의 개최 2009년 5월 제1차 협상 개최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뉴질랜드	2007년 2월~2007년 11월 민간공동연구, 2008년 9, 11월 2차례 정부간 예비협의 개최 2009년 6월 제1차 협상 개최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협상 준비 또는 공동 연구	터키	2008년 6월 공동연구 개시, 2008.9월 제1차 공동연구 회의 2009년 5월말 공동연구 종료후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 추진 예정
콜롬비아		2009년 상반기 중 민간공동연구 개시, 2009년 하반기 공동연구 종료후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추진 예정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일본		2003년 12월 협상개시, 2004년 11월 6차 협상 후 중단 2008년 12월 협상 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제2차 실무협의	우리의 제3위
중국		2007년 3월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 2008년 6월 산관학 공동연구 5차 회의 개최	우리의 제1위 교역상대국
MERCOSUR		2005년 5월 ~ 2006년 12월 정부간 공동연구 (2007년 10월 연구보고서 채택)	BRICs 국가, 자원부국
러시아		2007년 10월 공동연구그룹 출범, 2008년 7월 제2차 공동연구그룹 회의 개최	BRICs 국가, 자원부국
SACU		2008년 12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아프리카 진출 거점, 자원부국
한중일		2003년부터 한·중·일 3국간 민간공동연구를 통해 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연구 및 산업별 영향 분석을 진행 - 2009년부터 제2기 연구 개시 예정	1999년 3국 정상회의 성과사업으로 추진

## 11.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 현황

	발 호(73)	서 명(6) / 가서명(2)-미발호	비 고(개정)
구주지역 (36개국)	덴마크(1978), 독일(1978), 영국(1978), 벨지움(1979), 프랑스(1981), 네덜란드(1981), 스위스(1981), 핀란드(1981), 스웨덴(1982), 노르웨이(1984), 터키(1984), 룩셈부르크(1986), 오스트리아(1987), 헝가리(1990), 아일랜드(1991), 폴란드(1992), 이태리(1992), 루마니아(1994), 스페인(1994), 체코(1995), 불가리아(1995), 러시아(1995), 포르투갈(1997), 몰타(1998), 그리스(1998), 우즈베키스탄(1998), 카자흐스탄(1999), 우크라이나(2002), 벨라루스(2003), 슬로바크(2003), 슬로베니아(2006), 크로아티아(2006), 알바니아(2007), 리투아니아(2007), 아제르바이잔(2008), 아이슬란드 (2008)	가서명: 에스토니아(1999)  서명: 라트비아(2008)	프랑스(1992), 영국(1996), 벨지움(1996), 네덜란드(1999), 독일(2002), 오스트리아(2002)
아시아지역 (20개국)	일본(1970), 싱가포르(1981), 말레이시아(1983), 뉴질랜드(1983), 방글라데시(1984), 호주(1984), 스리랑카(1986), 인도(1986), 필리핀(1986), 파키스탄(1987), 인도네시아(1989), 몽골(1993), 베트남(1994), 중국(1994), 휘지(1995), 파푸아뉴기니(1998), 미얀마(1993), 네팔(2003), 라오스(2006), 태국(2007)		뉴질랜드(1997), 일본(1999), 태국(2007)
중동지역 (7개국)	이집트(1994), 이스라엘(1997), 쿠웨이트(2000), 아랍에미리트(2005), 요르단(2005), 오만(2006), 사우디(2008)	서명: 카타르 (2008 우리측 비준동의 완료), 이란 (2006), 쿠웨이트 (2008 우리측 비준동의 완료)	
아프리카 지역 (4개국)	튀니시아(1989), 남아프리카공화국(1996), 모로코(2000), 알제리(2006)	서명: 수단(2004), 나이지리아(2006) 가서명: 탄자니아 (1999)	
미주지역 (6개국)	미국(1978), 캐나다(1980), 브라질(1991), 멕시코(1995), 칠레(2003), 베네수엘라(2007)		캐나다(2006)

(2009년 6월 현재)

## 12.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국 가 명	서 명 일	발 호 일
이란	1977.5.11	1978.6.10
캐나다	1997.1.10	1999.5.1
영국	1999.4.20	2000.8.1
미국	2000.3.13	2001.4.1
독일	2000.3.10	2003.1.1
네덜란드	2002.7.3	2003.10.1
이태리	2000.3.3	2005.4.1
중국	2003.2.28	잠정조치 발효
일본	2004.2.17	2005.4.1
우즈베키스탄	2005.5.10	2005.5.1
몽골	2006.5.8	2007.3.1
헝가리	2006.5.12	2007.3.1
프랑스	2004.12.6	2007.6.1
호주	2006.12.6	2008.10.1
체코	2007.12.14	2008.11.1
아일랜드	2007.10.31	2009.1.1
벨기에	2005.7.5	미발효 (2009.7.1 발효 예정)
필리핀	2005.12.15.	미발효 (2006.12. 국회비준동의)
루마니아	2008.9.11.	미발효
불가리아	2008.10.30.	미발효
슬로바키아	2009.2.9	미발효
폴란드	2009.2.25	미발효
스페인,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칠레, 아르헨티나 등		교섭중

(2009년 6월 현재)

## IV. 재외동포 및 영사 관련 현황

### 1. 연도별 재외동포 현황

연도	동포수	증감	증감률(%)
1971	702,928		
1972	728,470	(+)25,542	3.6
1973	801,432	(+)72,962	10.0
1974	871,405	(+)69,973	8.7
1975	920,358	(+)48,953	5.6
1976	1,016,016	(+)95,658	10.3
1977	1,171,290	(+)155,274	15.3
1978	1,253,139	(+)81,849	6.9
1979	1,341,709	(+)88,562	7.1
1980	1,470,916	(+)129,215	9.6
1981	1,590,832	(+)119,916	8.2
1982	1,685,380	(+)94,548	5.9
1983	1,733,589	(+)48,209	2.9
1984	1,778,707	(+)45,118	2.6
1985	1,905,181	(+)126,474	7.1
1986	2,006,216	(+)100,035	5.3
1987	2,045,169	(+)38,953	1.9
1988	2,123,641	(+)78,472	3.8
1989	2,272,912	(+)149,271	7.0
1990	2,320,099	(+)47,187	2.1
1991	4,832,414	(+)2,512,315	108.3
1992	4,943,590	(+)111,176	2.3
1995	5,228,573	(+)284,983	5.7
1997	5,544,229	(+)315,656	6.0
1999	5,644,558	(+)100,329	1.8
2001	5,653,809	(+)9,251	0.16
2003	6,336,951	(+)683,142	12.08
2005	6,638,338	(+)301,387	4.76
2007	7,044,716	(+)406,378	6.12
2008.12	6,822,606	(-)222,110	-3.15

\* 1991년부터 중국동포 및 독립국가연합동포를 포함, 2003년부터 재일동포 귀화자 포함

\* 근거: 해외동포 현황 보고 규정(외교통상부 훈령 제113호)



## 2. 지역별 재외동포 현황

지역	동포 수(명)	백분율(%)	전년비 증감율(%)
아주지역	3,710,553	54.39	-8.16
일본	912,655	13.38	2.12
중국	2,336,771	34.25	-15.4
기타	461,127	6.76	19.94
미주지역	2,432,634	35.65	3.91
미국	2,102,283	30.81	4.23
캐나다	223,322	3.27	3.09
중남미	107,029	1.57	-0.55
구주지역	655,843	9.61	1.64
독립국가연합	537,889	7.88	0.73
유럽	117,954	1.73	6.00
중동지역	13,999	0.2	48.29
아프리카지역	9,577	0.14	12.87
총 계	6,822,606	100	-3.15

(2008년 12월 현재)

## 3. 사증면제협정 체결 현황

총 체결국	적용 대상	국 가 명		
88개국	외교관 (2개국)	우크라이나(90일), 투르크메니스탄(30일)		
	외교관 · 관용 (23개국)	필리핀(무제한), 파라과이(90일), 이란 (3개월), 몽골 (30일), 베냉 (90일), 베트남(90일), 에콰도르(외교: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사이프러스(90일), 벨리즈(90일), 이집트 (90일), 파키스탄(3개월), 일본(3개월), 크로아티아 (90일), 우루과이(90일), 인도(90일), 아르헨티나(90일), 러시아(90일), 알제리(90일), 벨라루스(90일), 아제르바이잔(30일), 캄보디아(60일), 카자흐스탄(90일), 방글라데시 (90일),		
	30일 (1개국)	튀니지		
		60일 (2개국)	포르투갈, 레소토	
		아주지역 (4개국)	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주지역 (24개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브라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바부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외교·관용 30일, 일반 90일)			

총 체결국	적용 대상	국 가 명	
	외교관· 관용· 일반 (63개국)	90일 (60개국)	구주지역 (29개국)
			[헝가리(25개국 중 슬로베니아 제외)] 그리스, 오스트리아(외교·관용 180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몰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하 180일 중 90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포르투갈은 60일에 해당)
		아프리카 중동지역 (3개국)	[비헝가리] 리히텐슈타인,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2008년 12월 31일 현재)

- ※ 캐나다: 상호합의에 의거 6개월간 사증면제(협정 미체결, 1998.4.10)
- ※ 파키스탄: 2001.10.1부터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상태
- ※ 방글라데시: 2008.7.15일자로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일시중지
- ※ 이탈리아: 협정상외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6.15)
- ※ 일본: 일반은 구상서 교환에 의한 90일간 사증면제 (외교·관용은 사증면제협정체결)
- ※ 우크라이나: 우리국민에 대한 일방적 사증면제(2006.6.24부 발효), 우크라이나 국민은 사증필요

## V. 조약 체결 현황

### 1. 분야별 현황

양자 조약		다자 조약	
분야	건수	분야	건수
군사·안보	93	군축·원자력	39
범죄·사법공조	46	국제범죄·인도법	31
경제·과학·기술	426	사회·문화	41
무역·통상	176	무역·경제	112
조세·차관·투자보장	534	농업·어업	65
항공·해운·교통	175	해사·항공·교통	58
외교·영사·사증	134	노동·인권	51
문화·관광·사회보장	165	우편·방송통신	105
환경·자원·통신·기타	175	환경	43
국제기구·기타	118	기타	35
계	2,042	계	580

(발효기준: 2009년 6월 30일 현재)

### 2. 연도별 현황

연도	양자 조약	다자 조약	계
1948~1960	88	38	126
1961~1970	231	62	293
1971~1980	329	90	419
1981~1990	326	112	438
1991	48	14	62
1992	44	10	54
1993	49	14	63
1994	73	10	83
1995	69	9	78
1996	44	25	69
1997	74	16	90
1998	26	13	39
1999	37	11	48
2000	59	14	73
2001	54	16	70
2002	44	17	61
2003	47	11	58
2004	62	24	86

연도	양자 조약	다자 조약	계
2005	71	19	90
2006	90	16	106
2007	81	17	98
2008	70	12	82
2009.6.30	26	10	36
계	2,042	580	2,622

(발효기준: 2009년 6월 30일 현재)

## VI. 외교관계 수립 현황

### 1. 지역별 수교 현황

구 분	한 국	북 한	동시수교
아주	36	25	25
미주	34	24	23
구주	53	49	48
중동	19	17	16
아프리카	46	45	45
계	188	160	157

(2009년 2월 현재)

\* 한국은 남북함을 제외한 세계 총 192개 국가 (대만 제외) 중 188개국과 수교.  
- 미수교국4개국 (마케도니아, 시리아, 코소보, 쿠버)

### 2. 연도별 수교 현황

연 도	수 교	누 계	단 교
1948	미국, 대만(2)	2	
1949	영국, 프랑스, 필리핀(3)	5	
1950	스페인(1)	6	
1955	독일(1)	7	
1956	이탈리아, 베트남(2)	9	
1957	터키(1)	10	
1958	태국(1)	11	
1959	브라질,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4)	15	
1960	말레이시아(1)	16	
1961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그리스, 카메룬, 네덜란드, 포르투갈, 차드,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베냉, 콩고(11)	27	
1962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마라,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부르키나파소, 가봉,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시에라리온(28)	55	
1963	캐나다, 페루, 오스트리아, 중앙아프리카, 모리타니,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자이르, 스위스, 교황청(12)	67	
1964	우루과이, 케냐, 라이베리아(3)	69	모리타니 단교(12.10)
1965	일본,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몰타, 말라위, 감비아(6)	74	콩고 단교(5.11)
1966	레소토(1)	75	
1967	몰디브(1)	76	
1968	가이아나, 보츠와나, 스와질랜드(3)	79	
1969	튀니지(1)	80	

연도	수교	누계	단교
1970	통가, 캄보디아(2)	82	
1971	모리셔스, 피지(2)	84	
1972	서사모아(1)	85	
1973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핀란드, 아프가니스탄(5)	90	
1974	네팔, 그레나다, 오만, 카타르, 라오스(5)	97	토고 단교(9.17)
1975	미얀마, 싱가포르, 수리남(3)	93	캄보디아 단교(4.5) 베트남 단교(4.30) 라오스 단교(7.24) 베냉 단교(10.6)
1976	파푸아뉴기니, 바레인, 세이셸(3)	96	
1977	스리랑카, 바베이도스, 지부티, 수단, 가나(5)	101	
1978	솔로몬군도, 도미니카연방, 모리타니, 투발루(4)	104	아프가니스탄 단교(9.17)
1979	나우루, 세인트루시아, 쿠웨이트, 코모로,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적도기네(6)	110	
1980	키리바시, 바누아투,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나이지리아(5)	114	세이셸 단교(5.28)
1981	안티구아바루다, 레바논(2)	116	
1983	파키스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일랜드(3)	119	
1984	브루나이, 기네비쏘(2)	121	
1985	바하마, 트리니다드토바고, 북예멘(3)	124	
1986	벨리즈(1)-남미과 87년으로 기록(확인요)	125	
1987	소말리아, 부탄(2)	127	
1988	카보베르데, 쌍둥이프린시페(2)	129	
1989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이라크(4)	133	
1990	몽골,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러시아, 알제리, 남예멘, 베냉, 콩고, 말리, 나미비아, 잠비아(12)	144	예멘 통일(5.22)
1991	마셜군도, 마이크로네시아, 알바니아, 부룬디, 토고,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8)	152	
1992	앙골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투르크메니스탄,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우크라이나, 중국,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그루지야, 베트남, 남아공(18)	169	대만 단교(8.24)
1993	슬로바키아, 리히텐슈타인, 에리트레아, 모잠비크(4)	173	
1994	짐바브웨(1)	174	
1995	세이셸, 안도라, 팔라우, 이집트, 라오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사이프러스(7)	181	
1997	캄보디아(1)	182	
2000	산마리노(1)	183	
2002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2)	185	
2006	기니, 몬테네그로(2)	187	몬테네그로: 세르비아와 분리독립
2007	모나코	188	

## Ⅶ. 역대 외교통상부 장·차관 일람표

(2009년 6월 현재)

### 1. 장관

代順	성명	재직기간	代順	성명	재직기간
1대	張澤相	1948. 8 ~ 1948.12	18대	盧信永	1980. 9 ~ 1982. 6
2대	林炳稷	1948.12 ~ 1951. 4	19대	李範錫	1982. 6 ~ 1983.10
3대	卞榮泰	1951. 4 ~ 1955. 7	20대	李源京	1983.10 ~ 1986. 8
서리	曹正煥	1955. 7 ~ 1956.12	21대	崔伉洙	1986. 8 ~ 1988.12
4대	"	1956.12 ~ 1959.12	22대	崔浩中	1988.12 ~ 1990.12
직무대리	崔圭夏	1959.12 ~ 1960. 4	23대	李相玉	1990.12 ~ 1993. 2
5대	許 政	1960. 4 ~ 1960. 8	24대	韓昇洲	1993. 2 ~ 1994.12
6대	鄭一亨	1960. 8 ~ 1961. 5	25대	孔魯明	1994.12 ~ 1996.11
7대	金弘臺	1961. 5 ~ 1961. 7	26대	柳宗夏	1996.11 ~ 1998. 3
8대	宋真讚	1961. 7 ~ 1961.10	27대	朴定洙	1998. 3 ~ 1998. 8
9대	崔德新	1961.10 ~ 1963. 3	28대	洪淳瑛	1998. 8 ~ 2000. 1
10대	金溶植	1963. 3 ~ 1963.12	29대	李廷彬	2000. 1 ~ 2001. 3
11대	丁一權	1963.12 ~ 1964. 7	30대	韓昇洙	2001. 3 ~ 2002. 2
12대	李東元	1964. 7 ~ 1966.12	31대	崔成泓	2002. 2 ~ 2003. 2
13대	丁一權	1966.12 ~ 1967. 6	32대	尹永寬	2003. 2 ~ 2004. 1
14대	崔圭夏	1967. 6 ~ 1971. 6	33대	潘基文	2004. 1 ~ 2006.11
15대	金溶植	1971. 6 ~ 1973.12	34대	宋旻淳	2006.12 ~ 2008. 2
16대	金東祚	1973.12 ~ 1975.12	35대	柳明桓	2008. 2 ~
17대	朴東鎭	1975.12 ~ 1980. 9			

### 2. 통상교섭본부장

代順	성명	재직기간	代順	성명	재직기간
1대	韓憲洙	1998. 3 ~ 2001. 2	3대	金茲宗	2004. 7 ~ 2007. 8
2대	黃斗淵	2001. 2 ~ 2004. 7	4대	金宗燾	2007. 8 ~

### 3. 제1차관

代順	성명	재직기간	代順	성명	재직기간
1대	高昌一	1948. 8 ~ 1949. 3	6대	金東祚	1957. 5 ~ 1959. 9
2대	曹正煥	1949. 3 ~ 1951. 7	7대	崔圭夏	1959. 9 ~ 1960. 5
3대	朴 嚴	1951. 7 ~ 1951. 8	8대	李壽榮	1960. 5 ~ 1960. 8
4대	葛弘基	1952. 2 ~ 1952.10	9대(정무)	禹熙昌	1960. 8 ~ 1961. 1
5대	曹正煥	1952.10 ~ 1955. 7	9대(사무)	金溶植	1960. 8 ~ 1961. 6

代順	성명	재직기간	代順	성명	재직기간
10대(정무)	金在淳	1961. 1 ~ 1961. 5	27대	申東元	1988. 3 ~ 1989.12
10대(사무)	李壽永	1961. 6 ~ 1961. 7	28대	柳宗夏	1989.12 ~ 1992. 2
11대	朴東鎭	1961. 7 ~ 1961.10	29대	盧昌憲	1992. 2 ~ 1993. 3
12대	李源京	1961.10 ~ 1962. 8	30대	洪淳瑛	1993. 3 ~ 1994. 5
13대	崔文卿	1962. 8 ~ 1963.12	31대	朴健雨	1994. 5 ~ 1995. 1
14대	鄭一永	1963.12 ~ 1964.10	32대	李時榮	1995. 1 ~ 1995.12
15대	文德周	1964.10 ~ 1965.10	33대	李祺周	1995.12 ~ 1998. 3
16대	金永周	1965.10 ~ 1967. 9	34대	宣峻英	1998. 3 ~ 2000. 1
17대	陳弼植	1967. 9 ~ 1969.12	35대	潘基文	2000. 1 ~ 2001. 4
18대	尹錫憲	1969.12 ~ 1974. 2	36대	崔成弘	2001. 4 ~ 2002. 2
19대	盧信永	1974. 2 ~ 1976. 3	37대	金恒經	2002. 2 ~ 2003. 3
20대	尹河斑	1976. 3 ~ 1978. 5	38대	金在燮	2003. 3 ~ 2004. 1
21대	李玟容	1978. 5 ~ 1980. 5	39대	崔英鎭	2004. 1 ~ 2005. 1
22대	金東輝	1980. 5 ~ 1982. 5	40대	李泰植	2005. 1 ~ 2005. 9
23대	盧載源	1982. 5 ~ 1984. 3	41대	柳明桓	2005. 9 ~ 2006.12
24대	李相玉	1984. 3 ~ 1986. 9	42대	趙重杓	2006.12 ~ 2008. 3
25대	吳在熙	1986. 9 ~ 1987. 9	43대	權鍾洛	2008. 3 ~
26대	朴雙龍	1987. 9 ~ 1988. 3			

### 4. 제2차관

代順	성명	재직기간	代順	성명	재직기간
1대	柳明桓	2005. 7 ~ 2005. 9	4대	金星煥	2008. 3 ~ 2008. 6
2대	李揆亨	2005. 9 ~ 2006.12	5대	申珪秀	2008. 7 ~
3대	金浩榮	2006.12 ~ 2008. 3			



5. 외교안보연구원장

代順	성명	재직기간	代順	성명	재직기간
1대	延河龜	1963.10 ~ 1964. 9	16대	林東源	1988. 3 ~ 1992. 1
2대	申應均	1964.10 ~ 1965. 4	17대	孔魯明	1992. 1 ~ 1993. 4
3대	尹錫憲	1966. 9 ~ 1967. 9	18대	朴銖吉	1993. 4 ~ 1995. 1
4대	崔完福	1967.12 ~ 1970. 6	19대	李延彬	1995. 1 ~ 1996. 1
5대	韓有東	1970. 6 ~ 1972. 2	20대	金爽圭	1996. 1 ~ 1998. 3
6대	延河龜	1972. 2 ~ 1974. 3	21대	朴尙植	1998. 3 ~ 2000. 1
7대	鄭一永	1974. 3 ~ 1976. 2	22대	李承坤	2000. 1 ~ 2001. 6
8대	張偉敦	1976. 8 ~ 1978. 2	23대	鄭泰翼	2001. 7 ~ 2001.10
9대	姜英勳	1978. 2 ~ 1980.12	24대	金恒經	2001.10 ~ 2002. 2
10대	盧載源	1981. 5 ~ 1982. 5	25대	辛成梧	2002. 2 ~ 2003. 4
11대	李相玉	1982. 8 ~ 1983. 6	26대	崔英鎭	2003. 4 ~ 2004. 1
12대	朴 權	1983. 6 ~ 1984.11	27대	韓泰奎	2004. 3 ~ 2005.12
13대	吳在熙	1984.11 ~ 1986. 9	28대	趙重杓	2005.12 ~ 2006.12
14대	朴雙龍	1986. 9 ~ 1987. 9	29대	李柱欽	2006.12 ~ 2008. 4
15대	申東元	1987. 9 ~ 1988. 3	30대	李順天	2008. 4 ~

## Ⅷ. 역대 상주 재외공관장 일람표

(2009년 6월 현재)

### 1. 대사관

#### 가. 아시아지역

##### 1) 주네팔대사관

가) 총영사 (1972. 6. 19 주카트만두총영사관 개설)

1	洪壽憲	1972. 5 ~ 1974. 7			
---	-----	-------------------	--	--	--

나) 대사 (1974. 5. 15 대사관 승격)

1	洪壽憲	1974. 7 ~ 1978. 5	8	成正慶	1993. 5 ~ 1996. 2
2	權泰雄	1978. 5 ~ 1980.12	9	申鉉培	1996. 2 ~ 1997. 6
3	金炯洙	1980.12 ~ 1983. 6	10	黃富弘	1997. 6 ~ 2000. 7
4	李延彬	1983. 6 ~ 1984.10	11	柳時也	2000. 7 ~ 2003. 6
5	李文洙	1984.11 ~ 1988. 4	12	朴相焄	2003. 6 ~ 2006. 2
6	李鉉弘	1988. 4 ~ 1990. 6	13	南相正	2006. 2 ~ 2008. 9
7	金日健	1990. 6 ~ 1993. 5	14	洪承睦	2008. 9 ~

##### 2) 주뉴질랜드대사관 (1971. 7. 16 개설)

대리	李乘錄	1971. 5 ~ 1971. 9	7	尹榮燁	1991. 7 ~ 1994. 8
“	朴 英	1971. 9 ~ 1974. 3	8	李東翊	1994. 8 ~ 1995. 9
1	姜春熙	1974. 4 ~ 1977. 5	9	吳潤卿	1996. 2 ~ 1999. 2
2	李春成	1977. 5 ~ 1981. 5	10	文偉柱	1999. 2 ~ 2001. 8
3	咸永焄	1981. 7 ~ 1984. 3	11	丁宇聲	2001. 8 ~ 2004. 3
4	尹永教	1984. 3 ~ 1986. 3	12	辛正承	2004. 3 ~ 2006. 9
5	崔弼立	1986. 3 ~ 1989. 2	13	李俊揆	2006. 9 ~ 2009. 2
6	徐京錫	1989. 2 ~ 1991. 3	14	魯光益	2009. 2 ~

### 3) 주동티모르민주공화국대사관

가) 대표부 (2001.6.25 대표부 개설)

1	崔炳九	2001. 4 ~ 2002. 4	2	林炳孝	2002. 4 ~ 2002. 8
---	-----	-------------------	---	-----	-------------------

나) 대사 (2002. 8. 8 대사관 승격)

1	林炳孝	2002. 8 ~ 2003. 6	3	文皓準	2006. 2 ~ 2007. 8
2	柳珍奎	2003. 6 ~ 2006. 2	4	金守一	2007. 8 ~

4) 주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대사관 (1974. 8. 14 대사관 개설)  
(1975. 7. 25 대사관 폐쇄)  
(1996. 10. 4 대사관 재개설)

1	崔根培	1996. 8 ~ 1998. 8	4	金義澤	2003. 8 ~ 2005. 5
2	鄭華泰	1998. 8 ~ 2001. 2	5	鄭淳爽	2005. 5 ~ 2007. 3
3	張哲均	2001. 2 ~ 2003. 8	6	朴宰鉉	2007. 3 ~

### 5) 주말레이시아대사관 (1962. 5. 1 개설)

1	崔泓熙	1962. 4 ~ 1964.11	9	洪淳瑛	1990. 2 ~ 1992. 2
2	崔圭夏	1964.11 ~ 1967. 6	10	李常九	1992. 3 ~ 1995. 2
3	葛弘基	1967. 9 ~ 1971. 8	11	鄭慶逸	1995. 2 ~ 1997. 9
4	金星鏞	1971. 8 ~ 1975. 2	12	李炳浩	1997. 9 ~ 2000. 7
5	全祥振	1975. 2 ~ 1979. 4	13	李瑩敏	2000. 7 ~ 2003. 6
6	崔浩中	1979. 4 ~ 1983. 1	14	李英俊	2003. 6 ~ 2005. 8
7	沈基哲	1983. 2 ~ 1986.11	15	孫相賀	2005. 8 ~ 2007. 8
8	孫章來	1986.11 ~ 1990. 2	16	梁峰烈	2007. 8 ~

### 6) 주몽골대사관 (1990. 6. 18 개설)

1	權永純	1990. 6 ~ 1992. 5	6	金元泰	2002. 8 ~ 2004. 8
2	金教植	1992. 5 ~ 1994. 6	7	琴秉穆	2004. 8 ~ 2006. 2
3	金正舜	1994. 8 ~ 1997. 1	8	朴進鎬	2006. 2 ~ 2009. 1
4	黃吉信	1997. 1 ~ 1999. 8	9	鄭 日	2009. 2 ~
5	崔英喆	1999. 8 ~ 2002. 8			

7) 주미안마연방대사관

가) 총영사 (1962. 9. 7 주량군총영사관 개설)

1	朴俊夏	1962. 8 ~ 1968. 5	3	崔明俊	1970. 11 ~ 1973. 7
2	沈明源	1963. 5 ~ 1970.10	4	李文洙	1973. 7 ~ 1975. 7

나) 대사 (1975. 5. 16 대사관 승격)

1	安珍生	1975. 9 ~ 1979. 5	7	金正煥	1992.12 ~ 1995.12
2	金炯根	1979. 5 ~ 1980.12	8	崔京甫	1996. 2 ~ 1999. 2
3	李啓哲	1981. 3 ~ 1983.10	9	鄭貞儉	1999. 2 ~ 2002. 2
4	李相悅	1984. 1 ~ 1987. 3	10	李慶雨	2002. 2 ~ 2005. 2
5	權丙鉉	1987. 3 ~ 1990. 6	11	李柱欽	2005. 2 ~ 2006.12
6	金恒經	1990. 6 ~ 1992.12	12	朴琦鐘	2007. 3 ~

8) 주방글라데시대사관 (1975. 3. 1 개설)

1	金淳教	1975. 2 ~ 1976. 1	8	辛成梧	1991. 7 ~ 1994. 1
2	尹 燦	1976. 6 ~ 1979. 8	9	卞鍾圭	1994. 1 ~ 1997. 1
3	文基烈	1979. 8 ~ 1984. 3	10	韓泰奎	1997. 1 ~ 1999. 8
4	張基安	1984. 3 ~ 1986.10	11	鄭榮助	1999. 9 ~ 2002. 8
5	尹處遠	1986. 10 (미부임)	12	李揆亨	2002. 8 ~ 2004. 8
6	張萬淳	1987. 2 ~ 1990. 2	13	朴聖雄	2004. 8 ~ 2007. 3
7	李在春	1990. 2 ~ 1991. 7	14	朴錫凡	2007. 3 ~

9)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가) 주월남대사관 (1958. 3. 1 공사관에서 승격)  
(1975. 4. 30 대사관 폐쇄)

1	朴東鎭	1961.11 ~ 1962. 8	3	柳陽洙	1971. 2 ~ 1975. 8
2	申尙澈	1962.10 ~ 1970.12	4	金營寬	1974. 3 ~ 1975. 4

나)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1992. 12. 22 대사관 재개설)

1	朴魯洙	1992. 8 ~ 1994. 8	5	柳泰鉉	2003. 2 ~ 2005. 5
2	金泰奎	1994. 8 ~ 1997. 1	6	金義基	2005. 5 ~ 2007. 9
3	趙源一	1997. 1 ~ 2000. 2	7	任洪宰	2007. 9 ~
4	白樂煥	2000. 2 ~ 2003. 2			

## 한국외교 60년

### 10) 주브루나이대사관 (1984. 1. 1 총영사관에서 승격)

1	崔培植	1984. 1 ~ 1986. 3	6	史富盛	1996. 8 ~ 1999. 8
2	姜勝求	1986. 3 ~ 1989. 3	7	金浩泰	1999. 8 ~ 2002.12
3	許世麟	1989. 3 ~ 1990.12	8	金雄男	2003. 2 ~ 2005. 8
4	白聖一	1991. 2 ~ 1994. 1	9	黃元權	2005. 8 ~ 2008. 9
5	崔廣植	1994. 1 ~ 1996. 6	10	金大式	2008. 9 ~

### 11) 주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1977. 11. 14 통상대표부에서 승격)

1	尹永教	1977.12 ~ 1981. 7	7	金明培	1996. 8 ~ 1999. 8
2	鄭咬吉	1981. 7 ~ 1984.11	8	宋永吾	1999. 8 ~ 2001. 7
3	金以銘	1984.11 ~ 1987.10	9	李南洙	2001. 8 ~ 2004. 3
4	金奉奎	1987.10 ~ 1990.12	10	林栽弘	2004. 3 ~ 2006. 9
5	張勳	1990.12 ~ 1993.10	11	權榮達	2006. 9 ~ 2008. 5
6	洪正杓	1993.10 ~ 1996. 8	12	崔基出	2008. 5 ~

### 12) 주싱가포르대사관

#### 가) 총영사 (1972. 7. 5 총영사관 개설)

1	林明鎭	1973. 7 ~ 1974. 6	2	蘇鎭轍	1974. 6 ~ 1975. 10
---	-----	-------------------	---	-----	--------------------

#### 나) 대사 (1975. 8. 8 대사관 승격)

1	李圭星	1975.10 ~ 1978. 6	8	孫明鉉	1993. 5 ~ 1996. 2
2	李相玉	1978. 6 ~ 1982. 5	9	朴尙植	1996. 2 ~ 1998. 3
3	金庚哲	1982. 5 ~ 1985.10	10	鄭基鈺	1998. 5 ~ 2000. 7
4	李長春	1985.10 ~ 1989. 2	11	咸明澈	2000. 7 ~ 2003. 6
5	金世澤	1989. 2 ~ 1991. 2	12	柳光錫	2003. 6 ~ 2006. 2
6	金聖鎭	1991. 2 ~ 1991. 9	13	朴峻雨	2006. 2 ~ 2006.12
7	韓昌植	1991. 9 ~ 1993. 5	14	金中根	2007. 3 ~

### 13) 주아프가니스탄회교국대사관 (1975. 3 개설, 1978.10 폐쇄) (2002. 9. 2 재개설)

대리	金昌煥	1975. 1 ~ 1978. 2	4	劉永方	2004. 3 ~ 2006. 9
1	崔明俊	1975. 4 ~ 1978. 6	5	姜聲柱	2006. 9 ~ 2008. 5
2	蘇鎭轍	1978. 6 ~ 1979. 3	6	宋雄燁	2008. 5 ~
3	朴鍾純	2002. 8 ~ 2004. 1			

14) 주오스트레일리아대사관 (1962. 1. 23 개설)

1	李東煥	1962. 2 ~ 1970. 2	9	李昌範	1991. 2 ~ 1994. 1
2	閔忠植	1970. 2 ~ 1973.10	10	權丙鉉	1994. 1 ~ 1996. 9
3	盧錫瓚	1974. 2 ~ 1977. 4	11	文東錫	1996. 9 ~ 1998.12
4	李翰林	1977. 4 ~ 1980. 4	12	申孝憲	1999. 2 ~ 2001. 8
5	尹河斑	1980. 4 ~ 1983. 6	13	宋永植	2001. 8 ~ 2003. 6
6	金相球	1983. 6 ~ 1984.10	14	趙商勳	2003. 6 ~ 2006. 2
7	林東源	1984.10 ~ 1987.10	15	曹昌範	2006. 2 ~ 2008. 4
8	李昌洙	1987.10 ~ 1991. 2	16	金宇祥	2008. 4 ~

15) 주인도공화국대사관

가) 총영사 (1962. 4. 24 주뉴델리총영사관 개설)

1	方 熙	1962. 3 ~ 1963. 5	4	崔雲祥	1967. 2 ~ 1972. 2
2	韓麒鳳	1963. 5 ~ 1964.10	5	盧信永	1972. 2 ~ 1974. 4
3	林炳稷	1964.10 ~ 1967. 2			

나) 대사 (1973. 12. 10 대사관 승격)

1	朴瓚鉉	1974. 1 ~ 1976. 6	7	蘇秉用	1994. 2 ~ 1996. 9
2	李範錫	1976. 6 ~ 1980. 9	8	崔大和	1996. 9 ~ 1999. 2
3	金正泰	1980.12 ~ 1984. 4	9	李鍾武	1999. 2 ~ 2002. 2
4	申東元	1984. 4 ~ 1987. 9	10	權純大	2002. 2 ~ 2004. 3
5	金太智	1987. 9 ~ 1991. 7	11	崔禎益	2004. 3 ~ 2007. 3
6	李延彬	1991. 7 ~ 1994. 2	12	白暎善	2007. 3 ~

16)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가) 총영사 (1966. 12. 1 주자카르타총영사관 개설)

1	李昌熙	1967. 5 ~ 1968. 7	3	金佐謙	1969.11 ~ 1973.10
2	韓有東	1968. 7 ~ 1969.11			

## 한국외교 60년

### 나) 대사 (1973. 9. 18 대사관 승격)

1	金佐謙	1973.10 ~ 1974. 3	9	金庚哲	1994. 1 ~ 1995. 2
2	李載高	1974. 3 ~ 1978.12	10	閔形基	1995. 2 ~ 1998. 4
3	咸永焄	1979. 4 ~ 1980.11	11	洪正杓	1998. 5 ~ 2000. 7
4	韓宇錫	1980.12 ~ 1984. 3	12	金在燮	2000. 7 ~ 2003. 3
5	崔常燮	1984. 4 ~ 1987. 3	13	尹海重	2003. 6 ~ 2005. 5
6	金泳燮	1987. 3 ~ 1989. 9	14	李先鎭	2005. 5 ~ 2008. 5
7	金在春	1989. 9 ~ 1992.12	15	金浩榮	2008. 5 ~
8	張明貫	1992.12 ~ 1994. 1			

### 17) 주일본국대사관

#### 가) 대표부 (1949. 1. 19 대표부 개설)

1	鄭翰景	1949. 1 ~ 1949. 1	8	柳泰夏	1958.10 ~ 1959. 3
2	鄭桓範	1949. 1 ~ 1950. 1	9	柳泰夏	1959. 3 ~ 1960. 4
3	申興雨	1950. 2 ~ 1950. 5	10	李載沆	1960. 7 ~ 1960. 9
4	金龍周	1950. 6 ~ 1951. 6	11	嚴堯燮	1960. 9 ~ 1961. 3
5	申性模	1951. 6 ~ 1951.12	12	李東煥	1961. 7 ~ 1961.12
6	金容植	1951.12 ~ 1957. 5	13	裴義煥	1961.12 ~ 1964.10
7	金裕澤	1957. 5 ~ 1958. 9	14	金東祚	1964.10 ~ 1965.12

### 나) 대사 (1965. 12. 18 대사관 승격)

1	金東祚	1965.12 ~ 1967.10	10	吳在熙	1991. 2 ~ 1993. 4
2	嚴敏永	1967.10 ~ 1969.12	11	孔魯明	1993. 4 ~ 1994.12
3	李厚洛	1970. 1 ~ 1970.12	12	金太智	1995. 1 ~ 1998. 4
4	李 滉	1971. 1 ~ 1974. 1	13	金爽圭	1998. 4 ~ 2000. 2
5	金永善	1974. 1 ~ 1979. 1	14	崔相龍	2000. 2 ~ 2002. 2
6	金正濂	1979. 2 ~ 1980. 8	15	趙世衡	2002. 2 ~ 2004. 3
7	崔慶祿	1980. 8 ~ 1985.10	16	羅鍾一	2004. 3 ~ 2007. 3
8	李奎浩	1985.10 ~ 1988. 3	17	柳明桓	2007. 3 ~ 2008. 2
9	李源京	1988. 3 ~ 1991. 2	18	權哲賢	2008. 4 ~

## 18)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1992. 8. 27 개설)

1	盧載源	1992. 9 ~ 1993. 4	5	洪淳瑛	2000. 7 ~ 2001. 9
2	黃秉泰	1993. 4 ~ 1995.12	6	金夏中	2001.10 ~ 2008. 3
3	鄭鐘旭	1996. 1 ~ 1998. 4	7	辛正承	2008. 4 ~
4	權丙鉉	1998. 4 ~ 2000. 7			

## 19) 주캄보디아왕국대사관

가) 주프놈펜총영사관 (1962. 7 개설, 1967. 1 폐쇄)

1	李澤根	1962. 5 ~ 1963.11	3	韓麒鳳	1966. 9 ~ 1967. 4
2	洪聖郁	1963.11 ~ 1966. 9			

나) 주크메르대사관 (1970. 8. 15 개설, 1975. 4. 5 폐쇄)

1	李澤根	1970. 8 ~ 1972. 8	2	金世源	1972. 8 ~ 1975. 5
---	-----	-------------------	---	-----	-------------------

다) 대표부 (1996. 9. 18 대표부 개설)

1	朴慶泰	1996. 8 ~ 1998. 2			
---	-----	-------------------	--	--	--

라) 대사 (1997. 10. 30 대사관 승격)

1	朴慶泰	1998. 2 ~ 1999. 2	4	李漢坤	2003. 6 ~ 2006. 2
2	金元泰	1999. 2 ~ 2001. 2	5	申鉉錫	2006. 2 ~ 2009. 2
3	李元炯	2001. 2 ~ 2003. 6	6	李京秀	2009. 2 ~

## 20) 주타이왕국대사관 (1960. 3. 1 개설)

1	劉載興	1960. 8 ~ 1963. 8	11	鄭壯年	1989. 2 ~ 1992. 7
2	李東元	1963.12 ~ 1964. 7	12	韓鐸琛	1992. 8 ~ 1993.10
3	張盛煥	1964.11 ~ 1967.10	13	鄭泰東	1994. 2 ~ 1997. 2
4	韓豹瑛	1968. 4 ~ 1971. 3	14	金乃誠	1997. 2 ~ 1999. 2
5	林胤英	1971. 3 ~ 1974. 4	15	金國振	1999. 2 ~ 2002. 2
6	千炳圭	1974. 4 ~ 1976. 5	16	崔 革	2002. 2 ~ 2004. 1
7	朴 權	1976. 5 ~ 1979. 8	17	尹志峻	2004. 1 ~ 2006. 2
8	金寅權	1979. 8 ~ 1980.11	18	韓泰奎	2006. 2 ~ 2008. 9
9	權泰雄	1980.12 ~ 1984.11	19	鄭海文	2008. 9 ~
10	金左洙	1984.11 ~ 1988.12			



## 21) 주파키스탄회교공화국대사관

### 가) 총영사 (1968. 4. 18 총영사관 개설)

1	李圭星	1968. 5 ~ 1971.12	5	崔鍾益	1976.10 ~ 1980. 6
2	尹慶道	1971.12 ~ 1973. 5	6	李源昊	1980. 6 ~ 1982. 2
3	朴民秀	1973. 6 ~ 1974. 4	7	吳在熙	1982. 2 ~ 1983.11
4	咸永焄	1974. 4 ~ 1976.10			

### 나) 대사 (1983. 11. 7 대사관 승격)

1	吳在熙	1983.11 ~ 1984.11	7	琴正鎬	1996. 8 ~ 1999. 2
2	洪淳瑛	1984.11 ~ 1987. 2	8	尹志峻	1999. 2 ~ 2002. 2
3	崔 雄	1987. 2 ~ 1989.10	9	全富寬	2002. 2 ~ 2005. 2
4	全順奎	1989.10 ~ 1992. 3	10	金周錫	2005. 2 ~ 2007. 8
5	金正勳	1992. 3 ~ 1993.10	11	辛 彦	2007. 8 ~
6	高昌秀	1994. 1 ~ 1996. 8			

## 22)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1981. 12. 18 개설)

1	尹處遠	1982. 2 ~ 1985. 4	6	徐賢燮	1996. 2 ~ 1998. 4
2	禹文旗	1985. 5 ~ 1989. 2	7	余漢宗	1998. 5 ~ 2002. 2
3	崔南俊	1989. 2 ~ 1991. 7	8	劉彰鉉	2002. 2 ~ 2005. 2
4	李錫坤	1991. 7 ~ 1994. 8	9	朴商允	2005. 2 ~ 2008. 9
5	李鉉泰	1994. 8 ~ 1995.12	10	韓元仲	2008. 9 ~

## 23) 주필리핀공화국대사관

### 가) 공사 (1954. 1. 19 공사관 개설)

1	金永琦	1953.11 ~ 1957. 7	2	金 勳	1957. 7 ~ 1958. 2
---	-----	-------------------	---	-----	-------------------

나) 대사 (1958. 2. 1 대사관 승격)

1	金勳	1958. 2 ~ 1960.11	12	金昌勳	1984. 4 ~ 1987. 3
2	申東起	1960.12 ~ 1961. 6	13	安在碩	1987. 3 ~ 1989. 2
3	李亨根	1961. 6 ~ 1962. 8	14	盧正基	1989. 2 ~ 1992.12
4	金溶植	1962. 8 ~ 1963. 3	15	李昌洙	1992.12 ~ 1994.12
5	柳錫洙	1963.11 ~ 1967. 9	16	李長春	1995. 2 ~ 1997.10
6	尹錫憲	1967.11 ~ 1969.12	17	朴東淳	1997.10 ~ 1999. 2
7	金世鍊	1969.12 ~ 1973. 6	18	辛成梧	1999. 2 ~ 2001. 8
8	張志良	1973. 6 ~ 1976. 5	19	孫相賀	2001. 8 ~ 2004. 3
9	姜永奎	1976. 5 ~ 1980. 4	20	柳明桓	2004. 3 ~ 2005. 7
10	宋光楨	1980. 4 ~ 1981. 9	21	洪宗崎	2005.10 ~ 2008. 9
11	李楠基	1981. 9 ~ 1984. 4	22	崔重卿	2008. 9 ~

24) 주피지군도공화국대사관(1980. 12. 17 개설)

1	張基安	1981. 2 ~ 1983. 6	6	文炳祿	1996. 2 ~ 1999. 2
2	金聖九	1983. 6 ~ 1986.11	7	林大澤	1999. 2 ~ 2001.12
3	金賢珍	1986.11 ~ 1990. 2	8	朴丙然	2002. 2 ~ 2005. 2
4	白英基	1990. 2 ~ 1992.12	9	金奉珠	2005. 2 ~ 2007. 8
5	姜根鐸	1992.12 ~ 1996. 2	10	全南鎮	2007. 8 ~

나. 미주지역

25) 주과테말라공화국대사관 (1974. 9. 10 개설)

1	李楠基	1976. 7 ~ 1980. 4	6	朱進燁	1994. 8 ~ 1997. 8
2	鄭海濂	1980.12 ~ 1984.11	7	鄭泰植	1997. 8 ~ 1999.10
3	文昌華	1984.11 ~ 1988. 3	8	韓榮熙	2000. 2 ~ 2003. 6
4	曹基成	1988. 3 ~ 1991. 7	9	金洪洛	2003. 6 ~ 2006. 9
5	姜雄植	1991. 7 ~ 1994. 8	10	柳枝殷	2006. 9 ~

26) 주니카라과공화국대사관 (2007. 12. 15 개설)

1	李尙八	2007.11 ~			
---	-----	-----------	--	--	--

## 한국외교 60년

### 27)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1980. 12. 16 개설)

1	李福衡	1981. 3 ~ 1983. 6	7	裴 進	1998. 8 ~ 2001. 8
2	姜大完	1983. 6 ~ 1986.10	8	金周億	2001. 8 ~ 2003. 8
3	金聖湜	1986.10 ~ 1990.12	9	李準日	2003. 8 ~ 2006. 2
4	朴 鍊	1990.12 ~ 1993.10	10	印炳澤	2006. 2 ~ 2008. 5
5	曹基一	1993.10 ~ 1996. 8	11	姜聲柱	2008. 5 ~
6	李昌浩	1996. 8 ~ 1998. 8			

### 28) 주멕시코합중국대사관 (1962. 7. 11 개설)

1	李成佳	1962. 4 ~ 1964.10	10	李福衡	1989.10 ~ 1992.12
2	吳天錫	1964.11 ~ 1967. 6	11	李相振	1992.12 ~ 1995.12
3	崔慶祿	1967. 9 ~ 1971. 7	12	羅元燦	1996. 2 ~ 1999. 2
4	李昌熙	1972. 3 ~ 1975. 8	13	朱進燁	1999. 2 ~ 2001. 2
5	張相文	1975. 8 ~ 1978. 6	14	姜雄植	2001. 2 ~ 2003. 6
6	玄時學	1978. 6 ~ 1980.11	15	曹圭滢	2003. 6 ~ 2006. 2
7	申東元	1980.12 ~ 1984. 4	16	元鍾贊	2006. 2 ~ 2009. 2
8	具忠會	1984. 4 ~ 1987. 2	17	趙煥復	2009. 2 ~
9	卓羅鉉	1987. 2 ~ 1989.10			

### 29) 주미합중국대사관 (1949. 3. 25 개설)

1	張 勉	1949. 2 ~ 1951. 2	12	金瓊元	1985.10 ~ 1988. 4
2	梁裕燦	1951. 4 ~ 1960. 4	13	朴東鎭	1988. 4 ~ 1991. 2
3	丁一權	1960. 5 ~ 1960. 9	14	玄鴻柱	1991. 2 ~ 1993. 4
4	張利郁	1960.10 ~ 1961. 6	15	韓昇洙	1993. 4 ~ 1994.12
5	丁一權	1961. 6 ~ 1963. 4	16	朴健雨	1995. 1 ~ 1998. 4
6	金貞烈	1964. 4 ~ 1964.11	17	李洪九	1998. 4 ~ 2000. 7
7	金顯哲	1964.11 ~ 1967.10	18	梁性喆	2000. 7 ~ 2003. 4
8	金東祚	1967.10 ~ 1973.12	19	韓昇洲	2003. 4 ~ 2005. 2
9	咸秉春	1973.12 ~ 1977. 2	20	洪錫炫	2005. 2 ~ 2005. 9
10	金溶植	1977. 2 ~ 1981. 5	21	李泰植	2005. 9 ~ 2009. 2
11	柳炳賢	1981. 6 ~ 1985.10	22	韓惠洙	2009. 2 ~

### 30) 주바베이도스대사관 (1983. 8. 5 개설) (1989. 5. 31 폐쇄)

1	張瑄燮	1984. 1 ~ 1985. 9	2	閔秀弘	1985.10 ~ 1989. 5
---	-----	-------------------	---	-----	-------------------

31) 주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대사관 (1973. 7. 7 개설)

대리	金炯洙	1973. 7 ~ 1974. 2	6	尹泰鉉	1992. 5 ~ 1996. 2
1	宋光楨	1974. 2 ~ 1978. 5	7	張在龍	1996. 2 ~ 1999. 1
2	具忠會	1978. 5 ~ 1982.12	8	張東哲	1999. 2 ~ 2001. 8
3	林明鎭	1983. 1 ~ 1986. 3	11	金英吉	2001. 8 ~ 2004. 8
4	趙光濟	1986. 3 ~ 1989. 3	12	申崇澈	2004. 8 ~ 2008. 5
5	金在勳	1989. 4 ~ 1992. 5	13	崔元善	2008. 5 ~

32) 주볼리비아공화국대사관 (1976. 7. 6 개설, 1998. 12. 31 폐쇄)  
(2008. 10. 9 재개설)

대리	文種律	1976. 6 ~ 1979. 6	5	明仁世	1989.10 ~ 1992. 4
1	文種律	1979. 6 ~ 1980.11	6	金相哲	1994. 1 ~ 1997. 9
2	朴贊極	1980.11 ~ 1983. 8	7	金洪洛	2008. 9 ~
3	邊正鉉	1983. 8 ~ 1986.11			
4	趙甲東	1986.11 ~ 1989.10			

33)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사관 (1962. 7. 11 개설)

1	朴東鎭	1962.10 ~ 1968. 2	10	韓哲洙	1991. 7 ~ 1993. 4
2	張昌國	1968. 5 ~ 1971. 3	11	邊正鉉	1993. 4 ~ 1996. 2
3	盧錫贊	1971. 3 ~ 1974. 2	12	金三勳	1996. 2 ~ 1998. 4
4	宋贊鎬	1974. 2 ~ 1977. 4	13	李元永	1998. 5 ~ 2001. 2
5	蔡命新	1977. 4 ~ 1981. 5	14	金明培	2001. 2 ~ 2003. 6
6	申鉉鉢	1981. 7 ~ 1983. 5	15	金光東	2003. 6 ~ 2006. 2
7	孔魯明	1983. 6 ~ 1986. 10	16	崔鍾華	2006. 2 ~ 2008. 5
8	權泰雄	1986.10 ~ 1989. 9	17	曹圭滢	2008. 5 ~
9	金琦洙	1989. 9 ~ 1991. 7			

34) 주수리남공화국대사관 (1976. 2. 19 총영사관에서 승격)  
(1993. 6. 30 폐쇄)

대리	鄭熙澤	1976. 4 ~ 1978. 6	2	崔公天	1986. 4 ~ 1988.12
〃	李文洙	1978. 6 ~ 1981. 9	3	金教植	1989. 2 ~ 1992. 5
1	文熙哲	1981. 9 ~ 1986. 4			

## 한국외교 60년

### 35)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관 (1963. 12. 15 개설)

대리	文鍾律	1963. 4 ~ 1964.11	8	金海宣	1991. 7 ~ 1994. 8
1	裴義煥	1964.11 ~ 1967. 9	9	曹基成	1994. 8 ~ 1997. 8
2	金東晟	1967.11 ~ 1976. 5	10	慶昌憲	1997. 8 ~ 2000. 7
3	南 鐵	1976. 5 ~ 1978. 6	11	金昇永	2000. 7 ~ 2002. 8
4	盧錫贊	1978. 6 ~ 1981. 5	12	申孝憲	2002. 8 ~ 2003. 6
5	李秀佑	1981. 7 ~ 1985. 4	13	崔洋夫	2003. 6 ~ 2006. 2
6	李福衡	1985. 4 ~ 1988. 3	14	黃義昇	2006. 2 ~ 2009. 2
7	李相振	1988. 3 ~ 1991. 7	15	金炳堯	2009. 2 ~

### 36) 주아이티공화국대사관 (1985. 11. 25 개설) (1992. 1. 31 폐쇄)

1	權仁赫	1987. 6 ~ 1990.11			
---	-----	-------------------	--	--	--

### 37) 주에콰도르공화국대사관 (1974. 3. 15개설)

대리	朴昌南	1975. 2 ~ 1978. 6	7	吳彩基	1992.12 ~ 1995.12
1	張偉敦	1978. 6 ~ 1979.10	8	趙庸河	1995.12 ~ 1998. 4
2	李起周	1979.10 ~ 1980.11	9	成弼柱	1998. 4 ~ 2001. 2
3	金以銘	1980.12 ~ 1984. 3	10	南相旭	2001. 2 ~ 2003. 6
4	尹泰鉉	1984. 3 ~ 1987. 2	11	沈國雄	2003. 6 ~ 2005. 8
5	黃永在	1987. 2 ~ 1989. 3	12	金京錫	2005. 8 ~ 2008. 5
6	鄭海融	1989. 5 ~ 1992.11	13	張根鎬	2008. 5 ~

### 38) 주엘살바도르공화국대사관 (1987. 12. 21 개설)

1	朴春範	1988. 3 ~ 1990. 2	5	張世敦	1998. 8 ~ 2000.12
2	曹基一	1990. 2 ~ 1992. 9	6	金玉洲	2001. 8 ~ 2004. 3
3	洪章憲	1992. 9 ~ 1995. 9	7	秋淵坤	2004. 3 ~ 2007. 3
4	裴 進	1995. 9 ~ 1998. 8	8	吳大星	2007. 3 ~

### 39) 주온두라스공화국대사관 (2007. 4 개설)

1	金舜圭	2007. 3 ~			
---	-----	-----------	--	--	--

40) 주우루과이동방공화국대사관 (1966. 12. 16 개설, 1998. 8. 31 폐쇄)  
(2002. 9. 2 개설)

대리	李楠基	1966. 7 ~ 1968. 7	7	金海宣	1987. 2 ~ 1989.10
1	崔文卿	1968.12 ~ 1971.12	8	卓羅鉉	1989.10 ~ 1992.12
2	洪聖郁	1971.12 ~ 1975. 2	9	朴泰璠	1992.12 ~ 1995. 5
3	吳尹卿	1975. 2 ~ 1980. 4	10	金永湜	1995. 5 ~ 1998. 8
4	李楠基	1980. 4 ~ 1981. 9	11	金宰範	2002. 8 ~ 2005. 2
5	張潤傑	1981. 9 ~ 1984. 1	12	張泰信	2005. 2 ~ 2008. 5
6	金炳連	1984. 1 ~ 1987. 2	13	李起泉	2008. 5 ~

41) 주자메리카대사관 (1974. 10. 14 개설, 1998. 11. 30 폐쇄)

대리	徐京錫	1974.10 ~ 1977. 5	4	文基烈	1987.10 ~ 1990.12
1	崔震祥	1977. 5 ~ 1980.11	5	金錫鉉	1990.12 ~ 1992. 8
2	崔相鎭	1981. 1 ~ 1984. 4	6	金龍圭	1992. 8 ~ 1995. 7
3	朴民秀	1984. 6 ~ 1987.10	7	金永基	1995. 7 ~ 1998.10

42) 주칠레공화국대사관 (1966. 11. 7 개설)

1	陳弼植	1966.12 ~ 1967. 9	9	李龍勳	1987.10 ~ 1990.12
2	尹甯榮	1967.11 ~ 1970. 8	10	文昌華	1990.12 ~ 1993.10
3	姜春熙	1970. 8 ~ 1974. 1	11	姜信盛	1993.10 ~ 1996. 1
4	韓丙起	1974. 4 ~ 1975. 5	12	趙明行	1996. 1 ~ 1999. 8
5	張在鏞	1975. 8 ~ 1979. 5	13	趙庸河	1999. 8 ~ 2002. 8
6	尹慶道	1979. 5 ~ 1981. 5	14	愼長範	2002. 8 ~ 2005. 8
7	趙光濟	1981. 7 ~ 1984.10	15	奇賢舒	2005. 8 ~ 2008. 5
8	徐京錫	1984.11 ~ 1987.10	16	任昌淳	2008. 5 ~

43) 주캐나다대사관 (1965. 8. 23 개설)

1	白善燁	1965. 8 ~ 1970. 1	9	申基鎭	1994. 1 ~ 1996. 9
2	陳弼植	1970. 1 ~ 1974. 2	10	金恒經	1996. 9 ~ 1999. 8
3	金永周	1974. 2 ~ 1977. 4	11	金三勳	1999. 8 ~ 2002. 8
4	韓丙起	1977. 4 ~ 1979.11	12	張基浩	2002. 8 ~ 2004. 3
5	李揆現	1980. 6 ~ 1984. 3	13	任晷準	2004. 3 ~ 2007. 2
6	盧載源	1984. 3 ~ 1988. 4	14	金秀東	2007. 3 ~ 2009. 2
7	朴銖吉	1988. 4 ~ 1991. 1	15	河燦浩	2009. 2 ~
8	朴健雨	1991. 2 ~ 1994. 1			

## 한국외교 60년

### 44) 주코스타리카공화국대사관 (1974. 9. 11 개설)

대리	李福衡	1974. 9 ~ 1978. 6	7	金昇永	1995. 7 ~ 1998. 8
1	張相文	1978. 6 ~ 1979. 6	8	金永湜	1998. 8 ~ 2001. 8
2	李龍勳	1979. 6 ~ 1982. 9	9	申崇澈	2001. 8 ~ 2003. 5
3	金在勳	1982. 9 ~ 1985.11	10	任昌淳	2003. 6 ~ 2006. 9
4	鄭海憲	1986. 1 ~ 1989. 1	11	趙炳立	2006. 9 ~ 2009. 2
5	金昌根	1989. 2 ~ 1992. 7	12	權泰勳	2009. 2 ~
6	李正秀	1992. 8 ~ 1995. 7			

### 45) 주콜롬비아공화국대사관 (1971. 6. 10 개설)

대리	黃永在	1971. 5 ~ 1973. 5	8	趙甲東	1994. 1 ~ 1996. 6
1	安珍生	1973. 5 ~ 1975. 2	9	李正秀	1996. 8 ~ 1998. 8
2	玉滿鎬	1975. 2 ~ 1978.11	10	金昇永	1998. 8 ~ 2000. 7
3	池連泰	1979. 3 ~ 1982. 9	11	元鍾贊	2000. 7 ~ 2003. 6
4	李龍勳	1982. 9 ~ 1985. 9	12	朴相均	2003. 6 ~ 2006. 2
5	朴健雨	1985. 9 ~ 1988. 3	13	宋基道	2006. 2 ~ 2008. 4
6	安煥哲	1988. 3 ~ 1991. 7	14	洪性禾	2008. 4 ~
7	張溟河	1991. 7 ~ 1994. 1			

### 46) 주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대사관 (1985. 11. 28 개설, 1999. 2 폐쇄) (2007. 10 상주공관 재개설, 2008. 7 대사관으로 승격)

1	朱東雲	1985.11 ~ 1989. 3	5	李潤馥	1997. 9 ~ 1999. 2
2	朴富悅	1989. 3 ~ 1992. 3	대리	元鍾溫	2007.10 ~ 2008.12
3	宋永植	1992. 3 ~ 1995. 1	6	權容珪	2009. 2 ~
4	俞炳勳	1995. 2 ~ 1997. 9			

### 47) 주파나마공화국대사관 (1973. 5. 5 개설)

대리	李禎南	1973. 5 ~ 1974.12	7	洪淳龍	1994. 1 ~ 1995.12
1	黃鎬乙	1975. 3 ~ 1976. 4	8	黃源卓	1996. 1 ~ 1999. 2
2	崔爽信	1976. 6 ~ 1980.11	9	嚴勤燮	1999. 2 ~ 2002. 2
3	韓相國	1980.11 ~ 1984. 1	10	鄭達鎬	2002. 2 ~ 2004. 8
4	金大溶	1984. 1 ~ 1987. 2	11	文太暎	2004. 8 ~ 2007. 3
5	崔鍾益	1987. 2 ~ 1990.12	12	金光根	2007. 3 ~
6	崔相鎭	1990.12 ~ 1994. 1			

48) 주파라과이공화국대사관 (1976. 3. 개설)

대리	金鏡河	1976. 2 ~ 1978. 6	6	慶昌憲	1992. 5 ~ 1995. 5
"	朴俊夏	1978. 6 ~ 1979. 6	7	申東璉	1995. 5 ~ 1998. 8
1	朴俊夏	1979. 6 ~ 1980.11	8	金周億	1999. 3 ~ 2001. 8
2	卓羅鉉	1980.12 ~ 1983. 1	9	鄭榮九	2001. 8 ~ 2004. 8
3	金爽圭	1983. 1 ~ 1986. 2	10	金炳堯	2004. 8 ~ 2007. 8
4	權永純	1986. 3 ~ 1989. 1	11	金周澤	2007. 8 ~
5	金興洙	1989. 2 ~ 1992. 2			

49) 주페루공화국대사관 (1971. 8. 1 개설)

1	全祥振	1971.12 ~ 1975. 2	7	李元永	1994. 8 ~ 1997. 2
2	金寅權	1975. 2 ~ 1979. 8	8	洪章憲	1997. 2 ~ 1999. 2
3	尹 燦	1979. 8 ~ 1985.11	9	朴喜珠	1999. 2 ~ 2002. 2
4	金在勳	1985.11 ~ 1989. 2	10	鄭鎭鎬	2002. 2 ~ 2005. 2
5	尹泰鉉	1989. 1 ~ 1992. 2	11	韓榮熙	2005. 2 ~ 2008. 5
6	曹基成	1992. 2 ~ 1994. 8	12	韓秉吉	2008. 5 ~

다. 유럽지역

50) 주교황청대사관 (1977. 4. 8 공사관에서 승격)

1	申鉉俊	1974. 2 ~ 1980.11	7	金興洙	1995. 5 ~ 1999. 2
2	金左洙	1980.12 ~ 1984.11	8	裴洋一	1999. 2 ~ 2002. 2
3	姜英勳	1984.11 ~ 1987. 2	9	徐賢燮	2002. 2 ~ 2003. 6
4	金庚哲	1987. 2 ~ 1990. 2	10	成 稔	2003. 6 ~ 2007. 9
5	李時容	1990. 2 ~ 1992.12	11	金芝榮	2007. 9 ~
6	朴魯榮	1992.12 ~ 1995. 5			



## 한국외교 60년

### 51) 주그리스공화국대사관 (1973. 7. 6 대사관 개설)

1	蔡命新	1973. 7 ~ 1977. 4	8	宋學源	1995. 2 ~ 1997. 9
2	韓有東	1977. 4 ~ 1980.11	9	蘇秉用	1997.10 ~ 1999. 2
3	鄭淳根	1981. 1 ~ 1982. 12	10	朴昌一	1999. 2 ~ 2001. 8
4	沈璋燮	1983. 2 ~ 1986.11	11	韓泰奎	2001. 8 ~ 2004. 3
5	沈基哲	1986.11 ~ 1990. 2	12	鄭海文	2004. 3 ~ 2006.12
6	朴南均	1990. 2 ~ 1992. 2	13	裴永漢	2006.12 ~
7	李升煥	1992. 2 ~ 1995. 2			

### 52) 주네덜란드왕국대사관 겸 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 (1969. 11. 17 개설) (2005. 4. 15 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 겸임)

대리	安珍生	1969.11 ~ 1971. 2	8	林寅造	1992. 8 ~ 1995. 8
"	宋光楨	1971. 2 ~ 1974. 2	9	金庚哲	1995. 8 ~ 1997. 2
1	崔完福	1977. 2 ~ 1977. 4	10	權仁赫	1997. 2 ~ 1998. 5
2	延河龜	1977. 5 ~ 1981. 7	11	宋永植	1998. 5 ~ 2000. 7
3	尹永敦	1981. 7 ~ 1983. 6	12	金龍圭	2000. 7 ~ 2003. 6
4	尹河珽	1983. 6 ~ 1986. 3	13	嚴勤燮	2003. 6 ~ 2006. 2
5	韓宇錫	1986. 3 ~ 1987. 2	14	崔鍾武	2006. 2 ~ 2008. 9
6	尹億燮	1987. 2 ~ 1989. 9	15	金永元	2008. 9 ~
7	崔常燮	1989. 9 ~ 1992. 8			

### 53) 주노르웨이왕국대사관 (1972. 12. 22 개설)

1	南 鐵	1973. 5 ~ 1976. 5	8	崔大和	1993.10 ~ 1995. 2
2	韓相國	1976. 5 ~ 1980.11	9	權寧民	1995. 2 ~ 1997. 9
3	崔爽信	1980.11 ~ 1984. 3	10	梁世勳	1997. 9 ~ 1999. 2
4	李揆現	1984. 3 ~ 1985. 10	11	朴慶泰	1999. 2 ~ 2002. 6
5	宋成漢	1985.10 ~ 1989. 2	12	崔秉孝	2002. 8 ~ 2005. 2
6	金正勳	1989. 2 ~ 1990.12	13	金榮錫	2005. 2 ~ 2007. 9
7	金炳連	1990.12 ~ 1993.10	14	崔炳九	2007. 9 ~

54) 주덴마크왕국대사관 (1972. 4. 15 개설)

대리	金正克	1972. 4 ~ 1973.10	9	李源昊	1993.10 ~ 1995.12
1	李圭星	1973.10 ~ 1975. 2	10	朴鍾沂	1996. 2 ~ 1998. 4
2	洪聖郁	1975. 2 ~ 1976. 5	11	權寧民	1998. 5 ~ 2000. 7
3	張志良	1976. 5 ~ 1979. 4	12	鄭基鈺	2000. 7 ~ 2002. 2
4	林明鎮	1979. 4 ~ 1983. 1	13	崔尙德	2002. 2 ~ 2004. 3
5	延河龜	1983. 1 ~ 1986. 3	14	安孝承	2004. 3 ~ 2007. 3
6	鄭旼吉	1986. 3 ~ 1989. 3	15	李銘洙	2007. 3 ~ 2008. 5
7	張瑄燮	1989. 3 ~ 1991. 2	16	任根亨	2008. 5 ~
8	金世澤	1991. 2 ~ 1993.10			

55) 주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

가) 공사 (1957. 3. 5 총영사관에서 공사관으로 승격)

1	孫元一	1957. 6 ~ 1958. 8			
---	-----	-------------------	--	--	--

나) 대사 (1958. 8. 1 대사관 승격)

1	孫元一	1958. 8 ~ 1960. 8	11	申貞燮	1987. 2 ~ 1990. 2
2	全奎弘	1960.11 ~ 1961. 8	12	申東元	1990. 2 ~ 1993. 4
3	申應均	1961. 7 ~ 1963. 8	13	金太智	1993. 4 ~ 1995. 1
4	崔德新	1963. 8 ~ 1967. 9	14	洪淳瑛	1995. 1 ~ 1998. 4
5	金永周	1967.11 ~ 1974. 1	15	李禎周	1998. 4 ~ 2000.10
6	陳弼植	1974. 1 ~ 1975. 7	16	黃源卓	2000.10 ~ 2003. 6
7	李昌熙	1975. 7 ~ 1980. 6	17	權寧民	2003. 6 ~ 2005. 5
8	李玟容	1980. 6 ~ 1981. 9	18	李秀赫	2005. 5 ~ 2006.11
9	宋光楨	1981. 9 ~ 1984. 3	19	崔禎益	2007. 3 ~
10	鄭享根	1984. 3 ~ 1987. 2			

56) 주러시아연방대사관 (1990. 10. 30 영사처에서 승격)

1	孔魯明	1990.10 ~ 1992. 1	6	李在春	2000. 2 ~ 2002. 2
2	洪淳瑛	1992. 2 ~ 1993. 3	7	鄭泰翼	2002. 2 ~ 2004.11
3	金爽圭	1993. 4 ~ 1996. 1	8	金在燮	2004.11 ~ 2007. 3
4	李廷彬	1996. 1 ~ 1998. 4	9	李揆亨	2007. 3 ~
5	李仁浩	1998. 4 ~ 2000. 2			

## 한국외교 60년

### 57) 주루마니아대사관 (1990. 6. 13 개설)

1	李鉉弘	1990. 6 ~ 1992. 12	5	姜光遠	1999. 2 ~ 2001. 8
2	朴宗相	1992.12 ~ 1994. 12	6	金義基	2001. 8 ~ 2004. 3
3	白樂煥	1995. 2 ~ 1998. 4	7	金大式	2004. 3 ~ 2006. 7
4	朴楊千	1998. 5 ~ 1999. 1	8	崔一松	2006. 7 ~

### 58) 주벨기에왕국대사관 겸 주유럽연합대사관

#### 가) 주벨기에왕국대사관 겸 주유럽공동체대표부 (1965. 11. 1 개설)

대리	鄭淳根	1965.10 ~ 1966. 1	5	安光鎬	1976. 5 ~ 1979. 7
1	文德周	1966. 1 ~ 1971. 5	6	朴 權	1979. 8 ~ 1982.12
2	鄭一永	1971. 5 ~ 1972. 9	7	崔浩中	1983. 1 ~ 1984. 4
3	崔完福	1972. 9 ~ 1974. 3	8	申貞燮	1984. 6 ~ 1987. 2
4	宋仁相	1974. 3 ~ 1976. 5	9	柳宗夏	1987. 2 ~ 1989. 2

#### 나) 주벨기에왕국대사관 (1989. 2 주유럽공동체대표부 분리)

1	鄭宇永	1989. 2 ~ 1992. 3	3	文昌華	1995. 4 ~ 1998. 4
2	金以銘	1992. 3 ~ 1995. 4			

#### 다) 주벨기에왕국대사관 겸 유럽연합대사관 (1998. 7. 1 유럽연합대표부와 통합) (2009. 1. 1 유럽연합대사관으로 승격)

1	李在春	1998. 9 ~ 1999. 2	4	吳行兼	2003. 6 ~ 2006. 2
2	崔大和	1999. 2 ~ 2001. 8	5	丁宇聲	2006. 2 ~ 2008. 9
3	朴楊千	2001. 9 ~ 2003. 6	6	朴峻雨	2008. 9 ~

### 59) 주벨라루스공화국대사관 (2007. 12. 17 개설)

1	李連秀	2007.11 ~			
---	-----	-----------	--	--	--

### 60) 주불가리아공화국대사관 (1990. 6. 13 개설)

1	金左洙	1990. 6 ~ 1993. 5	5	金勝義	2001. 2 ~ 2004. 3
2	金興洙	1993. 5 ~ 1995. 5	6	鄭在植	2004. 3 ~ 2007. 3
3	成弼柱	1995. 5 ~ 1998. 4	7	金明珍	2007. 3 ~
4	李錫祚	1998. 4 ~ 2001. 2			

61) 주세르비아공화국대사관 (1990. 1. 30 개설)  
(1998. 2. 1 폐쇄)  
(2002. 3. 4 재개설)

1	申斗柄	1990. 2 ~ 1992. 12	4	金英姬	2005. 8 ~ 2008. 9
2	李秀赫	2002. 2 ~ 2003. 4	5	金鍾海	2008. 9 ~
3	金秀東	2003. 6 ~ 2005. 8			

62) 주스웨덴왕국대사관 (1963. 7. 18 개설)

1	劉載興	1963. 8 ~ 1967. 9	11	崔弼立	1989. 2 ~ 1990. 2
2	姜文奉	1967. 9 ~ 1971. 8	12	崔東鎮	1990. 2 ~ 1992.12
3	方 熙	1971.11 ~ 1972.12	13	李時容	1992.12 ~ 1993. 5
4	蔡命新	1972.12 ~ 1973.11	14	蔡義錫	1993. 5 ~ 1995.12
5	張相文	1973.11 ~ 1975. 8	15	李昌範	1996. 2 ~ 1998. 8
6	金世源	1975. 8 ~ 1978. 5	16	孫明鉉	1998. 8 ~ 2001. 2
7	尹河珽	1978. 5 ~ 1980. 4	17	琴正鎬	2001. 2 ~ 2003. 7
8	姜永奎	1980. 4 ~ 1983. 1	18	鄭榮助	2003. 7 ~ 2005.12
9	李昌洙	1983. 2 ~ 1986. 3	19	李浚熙	2005.12 ~ 2008. 5
10	李延彬	1986. 3 ~ 1989. 2	20	曹喜庸	2008. 5 ~

63) 주스위스연방대사관 (1963. 3. 29 개설)

1	李漢彬	1963. 8 ~ 1966. 3	10	權東萬	1986. 3 ~ 1989. 3
2	鄭一永	1966. 3 ~ 1971. 5	11	李源昊	1989. 3 ~ 1992. 2
3	姜文奉	1971. 5 ~ 1973. 8	12	姜大完	1992. 2 ~ 1995. 4
4	李東元	1973. 8 ~ 1975. 2	13	金海宣	1995. 4 ~ 1998. 4
5	朴 權	1975. 2 ~ 1976. 5	14	權純大	1998. 5 ~ 2001. 2
6	千炳圭	1976. 5 ~ 1979. 2	15	文東錫	2001. 2 ~ 2004. 3
7	宋贊鎬	1979. 3 ~ 1980.11	16	朴源華	2004. 3 ~ 2007. 3
8	鄭度淳	1980.12 ~ 1982.10	17	張哲均	2007. 3 ~
9	安在碩	1983. 3 ~ 1986. 3			

64) 주스페인왕국대사관 (1970. 4. 11 개설)

1	崔完福	1970. 7 ~ 1972.10	9	權泰雄	1991. 7 ~ 1994. 2
2	沈興善	1972.10 ~ 1973.12	10	趙光濟	1994. 2 ~ 1995.12
3	申尙澈	1974. 1 ~ 1979. 4	11	玄熙剛	1996. 2 ~ 1999. 2
4	張在鏞	1979. 5 ~ 1981. 4	12	洪章憲	1999. 2 ~ 2001. 8
5	延河龜	1981. 7 ~ 1983. 1	13	李元永	2001. 8 ~ 2003. 6
6	卓羅鉉	1983. 1 ~ 1986. 3	14	張東哲	2003. 6 ~ 2005. 9
7	尹 燦	1986. 3 ~ 1988. 4	15	李春先	2005. 9 ~ 2008. 5
8	張明貫	1988. 4 ~ 1991. 7	16	趙兌烈	2008. 5 ~

65) 주슬로바키아공화국대사관 (2005. 3 상주공관 개설, 2006. 9. 28 대사관으로 승격)

대리	鄭周憲	2005. 2 ~ 2006.12	1	朴龍奎	2006.12 ~
----	-----	-------------------	---	-----	-----------

66) 주아일랜드대사관 (1987. 7. 10 개설)

1	李祺周	1987. 7 ~ 1989.12	5	張基浩	1998. 8 ~ 2001. 7
2	閔形基	1990. 2 ~ 1992.12	6	李 樑	2001. 8 ~ 2004. 8
3	朴南均	1992.12 ~ 1995.12	7	權鍾洛	2004. 8 ~ 2007. 8
4	金錫鉉	1996. 2 ~ 1998. 8	8	趙太庸	2007. 8 ~

67) 주아제르바이잔공화국대사관 (2006. 3. 1 상주공관 개설, 2006. 9. 28 대사관으로 승격)

대리	柳光哲	2006. 3 ~ 2006.12	1	柳光哲	2006.12 ~
----	-----	-------------------	---	-----	-----------

68) 주영국대사관

가) 공사 (1950. 2. 17 공사관 개설)

1	尹致昌	1949.12 ~ 1951. 3	2	李卯默	1951. 5 ~ 1957. 2
---	-----	-------------------	---	-----	-------------------

나) 대사 (1957. 6. 13 대사관 승격)

1	金用雨	1957. 8 ~ 1958. 5	11	吳在熙	1987. 9 ~ 1991. 2
2	金裕澤	1958.10 ~ 1960. 5	12	李洪九	1991. 2 ~ 1993. 4
3	金溶植	1961. 5 ~ 1962. 8	13	盧昌熹	1993. 4 ~ 1996. 2
4	李亨根	1962. 8 ~ 1967. 9	14	崔東鎭	1996. 2 ~ 1999. 2
5	裴義煥	1967. 9 ~ 1971. 7	15	崔成泓	1999. 2 ~ 2001. 4
6	崔慶祿	1971.11 ~ 1974.10	16	羅鍾一	2001. 4 ~ 2003. 2
7	金溶植	1974.10 ~ 1977. 2	17	李泰植	2003. 6 ~ 2005. 1
8	韓豹瑛	1977. 2 ~ 1980.11	18	趙潤濟	2005. 2 ~ 2008. 2
9	姜英勳	1980.12 ~ 1984.11	19	千英宇	2008. 5 ~
10	金永周	1984.11 ~ 1987. 9			

69)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사관 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1966. 12. 1 개설)  
(1992. 7. 31 주빈국제기구대표부 겸임)

대리	李玟容	1966.11 ~ 1967. 9	9	李時榮	1992. 2 ~ 1995. 1
1	柳陽洙	1967. 9 ~ 1971. 2	10	李承坤	1995. 2 ~ 1998. 4
2	李成佳	1971. 2 ~ 1973. 5	11	潘基文	1998. 5 ~ 2000. 1
3	韓豹瑛	1973. 5 ~ 1977. 2	12	崔尙德	2000. 2 ~ 2002. 2
4	金永周	1977. 4 ~ 1980. 3	13	崔英鎭	2002. 2 ~ 2003. 4
5	沈明源	1980. 4 ~ 1982. 9	14	曹昌範	2003. 6 ~ 2006. 2
6	金炯根	1982. 9 ~ 1985.10	15	金星煥	2006. 2 ~ 2008. 3
7	李時容	1985.10 ~ 1989. 3	16	沈允肇	2008. 5 ~
8	李長春	1989. 3 ~ 1992. 2			

70)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사관 (1993. 12. 21 개설)

1	徐健二	1994. 2 ~ 1997. 1	4	金星煥	2002. 8 ~ 2004. 8
2	崔永夏	1997. 1 ~ 2000. 2	5	文河泳	2004. 9 ~ 2007. 3
3	張勳	2000. 2 ~ 2002. 8	6	甄濟民	2007. 3 ~

71) 주우크라이나대사관 (1992. 12. 24 개설)

1	安賢源	1992. 12 ~ 1995. 8	5	李晁周	2003. 6 ~ 2006. 2
2	李漢春	1995. 8 ~ 1998. 4	6	許勝澈	2006. 2 ~ 2008. 5
3	姜根鐸	1998. 5 ~ 2000. 7	7	朴魯壁	2008. 5 ~
4	丁新	2000. 7 ~ 2003. 6			

## 72) 주이탈리아공화국대사관 (1959. 4. 16 공사관에서 승격)

1	金永琦	1959. 9 ~ 1960. 9	9	金爽圭	1989. 2 ~ 1992. 2
2	李鍾贊	1961. 7 ~ 1967.11	10	李祺周	1992. 2 ~ 1995. 2
3	劉載興	1967.11 ~ 1971. 2	11	申斗柄	1995. 2 ~ 1998. 4
4	文德周	1971. 2 ~ 1974.12	12	鄭泰翼	1998. 4 ~ 2000. 7
5	曹相鎬	1974.12 ~ 1979. 3	13	金錫鉉	2000. 7 ~ 2002. 8
6	安光鎬	1979. 4 ~ 1982. 9	14	宋永吾	2002. 8 ~ 2004. 8
7	池連泰	1982. 9 ~ 1985. 1	15	曹永載	2004. 8 ~ 2007. 8
8	李楠基	1985. 4 ~ 1989. 2	16	金中宰	2007. 8 ~

## 73) 주체코공화국대사관 (1990. 6. 13 개설)

1	宣峻英	1990. 6 ~ 1992.12	5	曹昌範	1999. 8 ~ 2002. 1
2	閔炳錫	1992.12 ~ 1995. 7	6	李浚熙	2002. 2 ~ 2004. 8
3	金在燮	1995. 8 ~ 1998. 4	7	全海鎭	2004. 8 ~ 2007. 3
4	咸明澈	1998. 5 ~ 1999. 7	8	趙誠勇	2007. 3 ~

## 74)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사관 (1993. 7. 12 개설)

1	金昌根	1993.10 ~ 1996. 6	4	大錫源	2002. 8 ~ 2005. 8
2	李瑩敏	1996. 8 ~ 1999. 8	5	金一秀	2005. 8 ~ 2009. 2
3	崔勝浩	1999. 8 ~ 2002. 8	6	李炳和	2009. 2 ~

## 75) 주크로아티아공화국대사관 (2005. 12. 12 상주 공관 개설, 2007. 8 대사관으로 승격)

대리	鄭貞儉	2005.10 ~ 2007. 1	1	邊大豪	2007.11 ~
"	邊大豪	2007. 4 ~ 2007.11			

## 76) 주키르기스스탄공화국대사관 (2007. 9 상주 공관 개설, 2008. 7. 3 대사관 승격)

대리	李京烈	2007. 7 ~ 2008. 7	1	金炳豪	2008. 9 ~
----	-----	-------------------	---	-----	-----------

77) 주터키공화국대사관 (1957. 6. 17 개설)

1	丁一權	1955. 5 ~ 1959. 4	10	李相振	1983. 6 ~ 1986. 3
2	申應均	1959. 7 ~ 1960. 9	11	張溟河	1986. 3 ~ 1989. 1
3	尹致昌	1961. 1 ~ 1961.12	12	金乃誠	1989. 2 ~ 1992. 1
4	崔榮喜	1962. 4 ~ 1966. 3	13	文東錫	1992. 2 ~ 1995. 1
대리	池蓮泰	1966. 3 ~ 1966. 9	14	俞炳宇	1995. 2 ~ 1998. 4
5	李成佳	1966. 9 ~ 1971. 3	15	趙商勳	1998. 5 ~ 2001. 2
6	朴瓊鉉	1971. 3 ~ 1974. 2	16	金永基	2001. 2 ~ 2004. 3
7	李翰林	1974. 2 ~ 1976. 4	17	權寧載	2004. 3 ~ 2006. 2
8	文哲淳	1976. 4 ~ 1980. 4	18	金昌輝	2006. 2 ~ 2009. 2
9	朴 英	1980. 4 ~ 1983. 6	19	裴宰鉉	2009. 2 ~

78)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2007. 6. 8 상주 공관 개설, 2007. 8. 22 대사관 승격)

대리	金鍾烈	2007. 5 ~ 2007. 11	1	金鍾烈	2007. 11 ~
----	-----	--------------------	---	-----	------------

79) 주포르투갈공화국대사관 (1975. 6. 11 개설)

1	尹浩根	1975. 8 ~ 1977. 4	8	全順奎	1994. 2 ~ 1997. 3
2	金正泰	1977. 4 ~ 1980.12	9	李東翊	1997. 3 ~ 1998. 8
3	李允熙	1980.12 ~ 1982. 3	10	邊承國	1998. 9 ~ 2001. 2
4	金琦洙	1982. 4 ~ 1985. 4	11	崔京甫	2001. 2 ~ 2004. 3
5	盧永璨	1985. 5 ~ 1988. 3	12	沈允肇	2004. 3 ~ 2006. 9
6	柳赫仁	1988. 3 ~ 1991. 2	13	鄭義敏	2006. 9 ~ 2009. 2
7	趙光濟	1991. 2 ~ 1994. 2	14	姜大鉉	2009. 2 ~

80) 주폴란드공화국대사관 (1989. 11. 27 개설)

1	金庚哲	1990. 2 ~ 1992. 1	6	宋旻淳	2001. 2 ~ 2003. 8
2	崔 雄	1992. 2 ~ 1994. 1	7	李相哲	2003. 8 ~ 2006. 9
3	鄭基鈺	1994. 1 ~ 1996. 8	8	李是衡	2006. 9 ~ 2009. 2
4	安賢源	1996. 8 ~ 1998. 8	9	李俊栽	2009. 2 ~
5	吳正一	1998. 8 ~ 2001. 2			



## 한국외교 60년

### 81)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

가) 공사 (1949. 7. 6 공사관 개설)

1	孔鎭恒	1949. 5 ~ 1951. 5	대리	李壽榮	1956. 1 ~ 1957. 5
2	金奎弘	1951. 4 ~ 1954. 5	3	金溶植	1957. 5 ~ 1959. 4
대리	曹元錫	1954. 8 ~ 1956. 1			

나) 대사 (1958. 10. 10 대사관 승격)

(1998. 4. 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대표부와 통합)

1	丁一權	1959. 4 ~ 1960. 5	9	韓宇錫	1987. 2 ~ 1990. 6
대리	金永周	1960. 6 ~ 1960.10	10	盧永燦	1990. 6 ~ 1993. 5
2	白善燁	1961. 7 ~ 1965. 7	11	張瑄燮	1993. 5 ~ 1996. 1
3	李壽榮	1965. 7 ~ 1972. 4	12	李時榮	1996. 2 ~ 1998. 4
4	鄭一永	1972. 7 ~ 1974. 2	13	權仁赫	1998. 5 ~ 2001. 2
5	尹錫憲	1974. 2 ~ 1979. 4	14	張在龍	2001. 2 ~ 2003. 8
6	閔丙岐	1979. 4 ~ 1981.12	15	朱鐵基	2003. 8 ~ 2006.12
7	尹錫憲	1981.12 ~ 1985. 4	16	曹一煥	2006.12 ~
8	尹億燮	1985. 5 ~ 1987. 2			

### 82) 주핀란드대사관 (1973. 8. 24 주헬싱키통상대표부에서 승격)

대리	朴東淳	1972. 5 ~ 1972.10	8	金乃誠	1993. 4 ~ 1996. 2
1	尹浩根	1972.11 ~ 1975. 8	9	李仁浩	1996. 2 ~ 1998. 4
2	尹慶道	1975. 8 ~ 1978. 6	10	李海淳	1998. 5 ~ 1999. 2
3	池成九	1978. 6 ~ 1980.11	11	梁東七	1999. 2 ~ 2001. 6
4	金東根	1980.11 ~ 1984.10	12	李榮吉	2001. 8 ~ 2003. 6
5	鄭宇永	1984.10 ~ 1987.10	13	洪正杓	2003. 6 ~ 2005. 5
6	崔相鎭	1987.10 ~ 1990.12	14	朴興信	2005. 5 ~ 2008. 5
7	尹億燮	1990.12 ~ 1993. 4	15	李浩鎭	2008. 5 ~

### 83) 주헝가리공화국대사관 (1988. 10. 25 대표부 개설)

(1989. 2. 1 대사관 승격)

1	韓鐸琛	1988.12 ~ 1991. 7	6	徐大源	2001. 2 ~ 2003. 6
2	朴永佑	1991. 7 ~ 1993.10	7	李浩鎭	2003. 6 ~ 2006. 2
3	崔成泓	1993.10 ~ 1996. 1	8	嚴錫正	2006. 2 ~ 2008. 9
4	李鍾武	1996. 1 ~ 1998. 8	9	徐正河	2008. 9 ~
5	韓和吉	1998. 8 ~ 2001. 2			

## 라. 중동지역

## 84) 주레바논공화국대사관 (1981. 2 통상대표부에서 승격)

1	金泳燮	1981. 3 ~ 1982. 2	6	李起炫	2000. 7 ~ 2003. 6
2	文昌華	1982. 2 ~ 1984.11	7	金英善	2003. 6 ~ 2006. 1
3	金賢珍	1984.11 ~ 1986.11	8	朴贊眞	2006. 2 ~ 2009. 2
4	李時鎬	1997. 2 ~ 1997. 9	9	李永夏	2009. 2 ~
5	鄭鎭鎬	1997. 9 ~ 2000. 6			

## 85) 주리비아인민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1981. 3. 2 총영사관에서 승격)

1	崔常燮	1981. 2 ~ 1983.11	7	許方彬	1999. 2 ~ 2001. 1
2	金泳燮	1983.11 ~ 1987. 3	8	金成輝	2001. 2 ~ 2003. 6
3	李相悅	1987. 3 ~ 1990. 2	9	金中宰	2003. 6 ~ 2006. 2
4	崔弼立	1990. 2 ~ 1993. 5	10	李南洙	2006. 2 ~ 2008. 9
5	金昇浩	1993. 5 ~ 1996. 2	11	張東熙	2008. 9 ~
6	孔諶燮	1996. 2 ~ 1999. 2			

## 86) 주모로코왕국대사관 (1962. 9. 6 개설)

대리	申基欽	1962. 8 ~ 1963. 1	9	許利勳	1991. 7 ~ 1994. 1
1	申鉉俊	1963. 2 ~ 1970. 4	10	金東瑚	1994. 1 ~ 1997. 1
2	玄時學	1970. 4 ~ 1974. 4	11	金昇浩	1997. 1 ~ 1999. 8
3	崔雲祥	1974. 4 ~ 1976. 5	12	朱鐵基	1999. 8 ~ 2002. 8
4	李澤根	1976. 5 ~ 1980. 4	13	朴昌一	2002. 8 ~ 2004. 3
5	鄭宇永	1980. 4 ~ 1984. 3	14	朴宰善	2004. 3 ~ 2006. 3
6	朴銖吉	1984. 3 ~ 1986. 2	15	柳正熙	2006. 3 ~ 2009. 2
7	韓碩鎭	1986. 3 ~ 1989. 1	16	崔在哲	2009. 2 ~
8	李鍾業	1989. 1 ~ 1991. 7			

87) 주모리타니아이슬람공화국대사관 (1979. 11. 5 개설)  
(1993. 5. 15 폐쇄)

공사	金聖湜	1981. 8 ~ 1983. 9	2	李斗馥	1984.11 ~ 1987.10
1	金聖湜	1983. 9 ~ 1984.11	3	李海淳	1987.10 ~ 1990. 5

## 한국외교 60년

### 88) 주바레인대사관 (1976. 6. 28 개설) (1999. 4. 1 폐쇄)

1	金仁斗	1976. 7 ~ 1980. 1	5	禹文旗	1989. 2 ~ 1991. 7
2	崔弼立	1980. 1 ~ 1981. 5	6	郭晦正	1991. 7 ~ 1994. 8
3	宋成漢	1981. 7 ~ 1985. 4	7	李秀煥	1994. 8 ~ 1997. 5
4	鄭海濂	1985. 4 ~ 1989. 1	8	鄭茂三	1997. 8 ~ 1998.12

### 89)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관 (1973. 7. 9 개설)

1	尹慶道	1973. 7 ~ 1975. 8	8	申孝憲	1995. 2 ~ 1998. 4
2	柳陽洙	1975. 8 ~ 1980. 3	9	金正琪	1998. 5 ~ 2000.10
3	張禮準	1980. 3 ~ 1982.12	10	朴明睿	2000.10 ~ 2003. 6
4	崔伋洙	1983. 1 ~ 1985.10	11	姜光遠	2003. 6 ~ 2006. 3
5	崔浩中	1985.10 ~ 1988.12	12	李裁吉	2006. 3 ~ 2008. 9
6	朱炳國	1989. 2 ~ 1992. 2	13	洪宗崎	2008. 9 ~
7	羅重培	1992. 2 ~ 1995. 2			

### 90) 주수단민주공화국대사관

#### 가) 총영사 (1976. 4. 21 총영사관 개설)

1	金東根	1976. 7 ~ 1977. 5			
---	-----	-------------------	--	--	--

#### 나) 대사 (1977. 4. 13 대사관 승격)

1	金東根	1977. 5 ~ 1980.11	7	張世敦	1994. 8 ~ 1998. 8
2	沈璋燮	1980.12 ~ 1983. 1	8	蔡洙東	1998. 8 ~ 2001. 1
3	柳宗夏	1983. 2 ~ 1985. 4	9	吳基哲	2001. 8 ~ 2004. 3
4	朴永佑	1985. 5 ~ 1988. 4	10	金東億	2004. 3 ~ 2007. 3
5	韓昌植	1988. 4 ~ 1990.12	11	李炳國	2007. 3 ~
6	李愚祥	1990.12 ~ 1994. 8			

### 91)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사관 (1980. 12. 5 개설)

1	崔弼立	1981. 5 ~ 1984.10	6	金星得	1996. 8 ~ 1999. 8
2	朴善昊	1984.10 ~ 1988. 5	7	黃吉信	1999. 8 ~ 2002. 6
3	朴鍾沂	1988. 5 ~ 1991. 7	8	姜宣容	2002. 8 ~ 2005. 2
4	洪淳龍	1991. 7 ~ 1994. 1	9	李俊載	2005. 2 ~ 2008. 5
5	琴正鎬	1994. 1 ~ 1996. 8	10	鄭鏞七	2008. 5 ~

92) 주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대사관 (1990. 4. 3 개설)

1	韓碩鎭	1990. 6 ~ 1993. 4	5	崔興植	2000. 2 ~ 2002. 7
2	權仁赫	1993. 4 ~ 1994.12	6	朴大元	2002. 8 ~ 2005. 8
3	金日健	1997. 8 ~ 1998. 4	7	丁海雄	2005. 8 ~ 2009. 2
4	車濬吉	1998. 5 ~ 1999.12	8	崔盛周	2009. 2 ~

93) 주예멘공화국대사관 (1987. 3. 24 개설, 1998. 12. 26 폐쇄)  
(2008. 5. 28 재개설)

1	李圭日	1987. 3 ~ 1990. 2	4	朴喜珠	1996. 2 ~ 1998.12
2	柳志鎬	1990. 2 ~ 1993. 5	5	郭元鎬	2007.11 ~
3	曹圭泰	1993. 5 ~ 1996. 2			

94) 주오만왕국대사관 (1976. 10. 30 개설)

대리	張東潤	1976. 9 ~ 1978. 8	6	張升鈺	1992. 9 ~ 1995. 8
"	金牧仁	1978. 8 ~ 1979. 3	7	禹鍾溟	1995. 8 ~ 1997. 9
1	鄭求郁	1979. 3 ~ 1980. 8	8	李榮現	1997. 9 ~ 2000. 2
2	李敬燾	1980. 8 ~ 1984. 4	9	朴信雄	2000. 2 ~ 2002. 2
3	李源昊	1984. 4 ~ 1987. 2	10	金義植	2002. 2 ~ 2005. 2
4	崔培植	1987. 2 ~ 1989.10	11	李相玟	2005. 2 ~ 2007. 8
5	姜宗遠	1989.10 ~ 1992. 9	12	趙成煥	2007. 8 ~

95) 주요르단왕국대사관 (1975. 3. 31 개설)

1	蘇尙永	1975. 7 ~ 1979. 3	7	吳正一	1994. 1 ~ 1997. 8
2	蘇鎮轍	1979. 3 ~ 1981. 9	8	李慶雨	1997. 8 ~ 2000. 7
3	金在晷	1981. 9 ~ 1985. 4	9	崔鍾華	2000. 7 ~ 2002. 8
4	朴東淳	1985. 4 ~ 1988. 3	10	金慶根	2002. 8 ~ 2005. 2
5	朴泰瑋	1988. 3 ~ 1991. 7	11	愼年晷	2005. 2 ~ 2007. 8
6	李漢春	1991. 7 ~ 1994. 1	12	申鳳吉	2007. 8 ~

96) 주이라크공화국대사관

가) 총영사 (1981. 7. 24 주바그다드총영사관 개설)

1	金在春	1981. 6 ~ 1983. 5	3	姜錫在	1986. 9 ~ 1987.12
2	李昌範	1983. 5 ~ 1986. 9	4	崔奉凜	1988. 2 ~ 1989. 7

## 한국외교 60년

### 나) 대사 (1989. 7. 9 대사관 승격)

1	崔奉凜	1988. 8 ~ 1991.12	4	河燦浩	2008. 4 ~ 2009. 2
대리	任洪宰	2003.11 ~ 2004.11	5	河泰允	2009. 2 ~
2	張基浩	2004.11 ~ 2007. 3			
3	河燦浩	2007. 3 ~ 2007.12			

### 97) 주이란회교공화국대사관 (1967. 4. 1 개설)

1	盧錫瓚	1968. 4 ~ 1971. 4	7	鄭慶逸	1989. 5 ~ 1992. 3
2	金種圭	1971. 4 ~ 1974. 5	8	李相悅	1992. 3 ~ 1994. 1
3	玄時學	1974. 5 ~ 1978. 6	9	辛成梧	1994. 2 ~ 1996. 1
4	金東輝	1978. 6 ~ 1980. 5	10	金在珪	1996. 2 ~ 1998. 4
5	李昌熙	1980. 6 ~ 1980.11	11	愼長範	1998. 5 ~ 2001. 2
6	沈基哲	1980.11 ~ 1982. 1	12	李相哲	2001. 2 ~ 2003. 8
공사	姜勝求	1982. 9 ~ 1985. 3	13	白基文	2003. 8 ~ 2005. 8
"	閔形基	1985. 3 ~ 1987. 9	14	任洪宰	2005. 8 ~ 2007. 9
"	姜信盛	1987. 9 (미부임)	15	金永穆	2007. 9 ~
"	吳正一	1988. 1 ~ 1989. 5			

### 98) 주이스라엘대사관 (1993. 12. 27 개설)

1	朴東淳	1994. 1 ~ 1997. 1	5	柳明桓	2002. 3 ~ 2004. 3
2	鄭義溶	1997. 1 ~ 1998. 4	6	朴暉卓	2004. 3 ~ 2006. 2
3	李彰浩	1998. 4 ~ 2000. 5	7	申珥秀	2006. 2 ~ 2008. 7
4	李泰植	2000. 7 ~ 2002. 2	8	馬寧三	2008. 9 ~

### 99) 주이집트아랍공화국대사관

#### 가) 총영사 (1962. 5. 1 주카이로총영사관 개설)

1	尹錫憲	1962. 3 ~ 1963. 5	7	咸永焄	1976. 9 ~ 1979. 2
2	姜春熙	1963. 5 ~ 1966. 9	8	孔魯明	1979. 2 ~ 1980.12
3	洪性郁	1966. 9 ~ 1969.12	9	韓鐸琛	1980.12 ~ 1984.12
4	文哲淳	1969.12 ~ 1972. 2	10	金世澤	1984.12 ~ 1986.12
5	崔雲祥	1972. 2 ~ 1974. 4	11	申基復	1986.12 ~ 1990. 6
6	張偉敦	1974. 4 ~ 1976. 9	12	朴東淳	1990. 6 ~ 1993. 2

나) 대사 (1995. 5. 1 대사관 승격)

1	鄭泰翼	1993. 2 ~ 1996. 2	5	崔勝浩	2004. 3 ~ 2006. 9
2	任晷準	1996. 3 ~ 1999. 2	6	鄭達鎬	2006. 9 ~ 2009. 2
3	沈景輔	1999. 2 ~ 2001. 2	7	尹宗坤	2009. 2 ~
4	吳潤卿	2001. 2 ~ 2004. 3			

100) 주카타르국대사관 (1976. 10. 13 개설)

대리	林弘圭	1976. 9 ~ 1978. 8	6	崔南俊	1992. 8 ~ 1995. 8
1	徐京錫	1978. 6 ~ 1981. 8	7	成樂民	1995. 8 ~ 1998. 4
2	金相圭	1981. 9 ~ 1984. 3	8	金鎭浩	1998. 5 ~ 2001. 2
3	金龍權	1984. 3 ~ 1986.10	9	金在國	2001. 2 ~ 2003. 2
4	尹榮燁	1986.10 ~ 1989.10	10	鄭文秀	2003. 2 ~ 2006. 2
5	柳來馨	1989.10 ~ 1992. 8	11	金鍾龍	2006. 2 ~

101) 주쿠웨이트대사관 (1979. 7. 17 통상대표부에서 승격)

1	金仁斗	1980. 1 ~ 1981. 9	8	權燦	1994. 1 ~ 1996. 2
2	申貞燮	1981. 9 ~ 1983.10	9	李亮	1996. 2 ~ 1999. 2
3	朴宗相	1983.11 ~ 1987. 2	10	李潤馥	1999. 2 ~ 2001. 2
4	安世勳	1987. 2 ~ 1989. 5	11	崔朝永	2001. 2 ~ 2003. 6
5	蘇秉用	1989. 5 ~ 1990.12	12	朴仁國	2003. 6 ~ 2005. 2
6	蘇秉用	1991. 3 ~ 1992. 7	13	宋根浩	2005. 2 ~ 2008. 4
7	李鍾武	1992. 8 ~ 1994. 1	14	文榮漢	2008. 4 ~

102) 주튀니지공화국대사관 (1969. 3. 31 총영사관에서 승격)

1	安光鎬	1969. 4 ~ 1970. 8	9	邊正鉉	1988. 3 ~ 1992. 2
2	李範錫	1970. 8 ~ 1972. 5	10	崔奉凜	1992. 2 ~ 1994.12
3	鄭奎燮	1972. 5 ~ 1974. 5	11	李斗馥	1995. 2 ~ 1997. 9
4	文哲淳	1974. 5 ~ 1976. 4	12	全富寬	1997. 9 ~ 2000. 7
5	黃鎬乙	1976. 4 ~ 1979. 4	13	黃龍植	2000. 7 ~ 2003. 6
6	洪逸	1979. 4 ~ 1980.11	14	金瓊任	2003. 6 ~ 2006. 9
7	蔡義錫	1980.12 ~ 1984.10	15	孫世周	2006. 9 ~ 2009. 2
8	咸泰赫	1984.10 ~ 1988. 3	16	宋奉憲	2009. 2 ~

## 마. 아프리카지역

### 103) 주가나공화국대사관 (1978. 5. 4 개설)

1	朴昌南	1978. 6 ~ 1980.11	8	白基文	1996. 2 ~ 1997. 9
2	黃光漢	1981. 1 ~ 1982.12	9	朴承武	1997.11 ~ 2000. 7
3	安煥哲	1983. 1 ~ 1986.10	10	鄭義敏	2000. 7 ~ 2003. 6
4	南洪祐	1986.10 ~ 1989.10	11	李尙八	2003. 6 ~ 2006.12
5	吳正一	1989.10 ~ 1992. 1	12	魏啓出	2006.12 ~ 2008. 9
6	申孝憲	1992. 2 ~ 1993. 4	13	李相鶴	2008. 9 ~
7	黃富弘	1993. 4 ~ 1995.12			

### 104) 주가봉공화국대사관 (1973. 5. 10 개설)

1	金昌勳	1974. 7 ~ 1978. 6	7	崔洛天	1992. 3 ~ 1995. 3
2	金海宣	1978. 6 ~ 1981. 6	8	方炳彩	1995. 3 ~ 1997. 9
3	咸奉懌	1981. 7 ~ 1982.12	9	姜宣容	1997.11 ~ 2000. 7
4	尹億燮	1983. 1 ~ 1984. 6	10	吳相式	2000. 7 ~ 2003. 6
5	黃南子	1984. 7 ~ 1989. 3	11	趙元鎬	2003. 6 ~ 2007. 3
6	朴昌一	1989. 3 ~ 1991.12	12	嚴盛俊	2007. 3 ~

### 105) 주나미비아공화국대사관 (1990. 6. 18 개설) (1994. 12. 31 폐쇄)

1	宋學源	1990. 8 ~ 1993. 8			
---	-----	-------------------	--	--	--

### 106) 주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대사관 (1980. 3. 24 개설)

1	申基欵	1980. 6 ~ 1980.11	7	李東震	1996. 3 ~ 1998.12
2	林東源	1981. 2 ~ 1984.10	8	鄭文秀	1999. 2 ~ 2002. 2
3	盧昌燾	1984.12 ~ 1987.11	9	朴信雄	2002. 2 ~ 2004. 3
4	吳彩基	1987.11 ~ 1991. 1	10	金東源	2004. 3 ~ 2006. 2
5	趙明行	1990.12 ~ 1994. 2	11	李起東	2006. 2 ~ 2009. 2
6	安鍾九	1994. 2 ~ 1996. 3	12	朴榮國	2009. 2 ~

107)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1993. 3. 5 개설)

1	崔尙德	1993. 5 ~ 1996. 2	5	金殷洙	2004. 3 ~ 2006. 9
2	金永善	1996. 2 ~ 1999. 2	6	金均燮	2006. 9 ~ 2008. 2
3	朴源華	1999. 2 ~ 2002. 2	7	金漢秀	2008. 5 ~
4	韓和吉	2002. 2 ~ 2004. 3			

108) 주니제르공화국대사관 (1985. 1. 1 개설)  
(1989. 5. 31 폐쇄)

1	柳鍾玄	1985. 5 ~ 1987.10	2	金日健	1987.10 ~ 1989. 5
---	-----	-------------------	---	-----	-------------------

109) 주라이베리아공화국대사관 (1973. 7. 17 개설)  
(1992. 3. 31 폐쇄)

1	沈明源	1974. 6 ~ 1977. 6	4	李鉉弘	1983. 1 ~ 1986. 3
2	李秀佑	1977. 7 ~ 1980.11	5	宋學源	1986. 3 ~ 1989. 3
3	李時容	1980.12 ~ 1982.12	6	金容執	1989. 4 ~ 1990.12

110) 주르완다공화국대사관 (1972. 8. 22 개설, 1975. 5. 31 폐쇄)  
(1987. 9. 11 재개설, 1990. 11. 30 폐쇄)

대리	姜宣容	1987. 9 ~ 1989. 6			
----	-----	-------------------	--	--	--

111) 주말라위공화국대사관 (1984. 7. 2. 개설)  
(1992. 3. 31 폐쇄)

1	朴南均	1984.12 ~ 1987.11	2	朴榮喆	1987.11 ~ 1992. 3
---	-----	-------------------	---	-----	-------------------

112) 주모리셔스대사관 (1985. 8. 31 개설)  
(1992. 1. 31 폐쇄)

1	丁炯勳	1987. 6 ~ 1991. 2			
---	-----	-------------------	--	--	--



## 한국외교 60년

- 113) 주부르키나파소공화국대사관 (1970. 7. 23 개설)  
(1989. 5. 31 폐쇄)

대리	金太智	1975. 5 ~ 1979. 4	2	許 陞	1984. 4 ~ 1986. 2
1	禹文旗	1979. 4 ~ 1984. 4	3	崔根培	1986. 2 ~ 1989. 5

- 114) 주세네갈공화국대사관 (1973. 5. 4 개설)

1	池成九	1974. 7 ~ 1978. 6	8	金日健	1995. 2 ~ 1997. 8
2	盧永燦	1978. 6 ~ 1981. 9	9	朴宰善	1997. 8 ~ 1999. 1
3	張明貴	1981. 9 ~ 1985. 4	10	金大成	1999. 2 ~ 2001. 2
4	李時榮	1985. 5 ~ 1987.10	11	曹一煥	2001. 2 ~ 2003. 8
5	柳鍾玄	1987.10 ~ 1990.12	12	韓在哲	2003. 8 ~ 2006. 2
6	許 陞	1990.12 ~ 1992. 1	13	崔東煥	2006. 2 ~ 2009. 2
7	梁東七	1992. 2 ~ 1995. 2	14	金炯國	2009. 2 ~

- 115) 주소말리아공화국대사관 (1987. 12. 31 개설)  
(1992. 3. 31 폐쇄)

1	姜信盛	1987.11 ~ 1990.12	2	李錫坤	1990.12 ~ 1991. 7
---	-----	-------------------	---	-----	-------------------

- 116) 주스와질랜드왕국대사관 (1985. 10. 31 개설)  
(1993. 9. 30 폐쇄)

1	李禎南	1987. 5 ~ 1990. 5			
---	-----	-------------------	--	--	--

- 117) 주시에라리온대사관 (1974. 11. 27 개설)  
(1992. 3. 5 폐쇄)

1	李春成	1974.12 ~ 1977. 5	4	李敬燾	1984.11 ~ 1988. 3
2	李允熙	1977. 5 ~ 1980.12	5	金東珍	1988. 3 ~ 1990. 5
3	崔鍾益	1980.12 ~ 1984.11			

- 118) 주앙골라공화국대사관 (2007. 7 개설)

1	韓在永	2007.11 ~			
---	-----	-----------	--	--	--

119) 주우간다공화국대사관 (1963. 4. 26 개설, 1984. 10. 18 폐쇄)  
(1986. 5. 20 재개설, 1994. 10. 31 폐쇄)

1	方 熙	1966. 6 ~ 1970. 4	5	姜錫弘	1981. 1 ~ 1984.10
2	李昌熙	1970. 4 ~ 1972. 6	6	鄭普永	1986. 4 ~ 1989. 4
3	韓有東	1972. 4 ~ 1977. 4	7	金在珪	1989. 4 ~ 1992. 2
4	鄭淳根	1977. 4 ~ 1981. 1	8	李瑩敏	1992. 2 ~ 1994.10

120) 주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대사관 (1965. 3. 25 개설)

1	張志良	1969. 7 ~ 1973. 5	8	孔詵燮	1993. 5 ~ 1996. 2
2	張在鏞	1973. 5 ~ 1975.11	9	丁 新	1996. 2 ~ 1999. 1
3	朴俊夏	1975. 7 ~ 1978. 6	10	韓在哲	1999. 2 ~ 2001. 2
4	鄭熙澤	1978. 6 ~ 1982.12	11	金昌秀	2001. 2 ~ 2003. 2
5	金得寶	1983. 1 ~ 1987.10	12	金相潤	2003. 2 ~ 2005. 8
6	高昌秀	1987.10 ~ 1990. 6	13	鄭炳菊	2005. 8 ~ 2008. 9
7	金昇永	1990. 6 ~ 1993. 5	14	鄭淳奭	2008. 9 ~

121) 주잠비아공화국대사관 (1991. 3. 5 개설)  
(1998. 8. 19 폐쇄)

1	成弼柱	1991. 3 ~ 1994. 2	3	全龍德	1996. 9 ~ 1998. 8
2	金鎭浩	1994. 2 ~ 1996. 9			

122) 주중앙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1971. 9. 19 개설)  
(1989. 5. 31 폐쇄)

1	李澤根	1972.11 ~ 1976. 5	4	李正秀	1984. 3 ~ 1987. 2
2	朴 英	1976. 5 ~ 1980. 4	5	金昇浩	1987. 2 ~ 1989. 5
3	朴魯洙	1980. 4 ~ 1984. 3			

123) 주짐바브웨공화국대사관 (1995. 5. 1 개설)

1	黃圭政	1995. 9 ~ 1998. 8	4	金貞根	2003. 2 ~ 2005. 8
2	全龍德	1998. 8 ~ 2000. 2	5	朴鍾純	2005. 8 ~ 2008. 5
3	鄭在植	2000. 2 ~ 2003. 2	6	吳在學	2008. 5 ~

## 한국외교 60년

### 124) 주카메룬공화국대사관 (1969. 3. 1 개설, 1998. 2. 1 폐쇄) (2008. 9 재개설)

1	全祥振	1969.12 ~ 1972. 7	7	金東瑚	1986. 4 ~ 1989.12
2	文哲淳	1972. 7 ~ 1974. 6	8	黃南子	1989.12 ~ 1992.11
3	尹永敎	1974. 6 ~ 1977. 7	9	孫 薰	1992.11 ~ 1995. 8
4	蔡義錫	1977. 7 ~ 1980.12	10	林大澤	1995. 8 ~ 1998. 8
5	邊正鉉	1980.12 ~ 1982.12	11	李好成	2008. 9 ~
6	韓碩鎭	1982.12 ~ 1986. 4			

### 125) 주케냐공화국대사관 (1964. 2. 7 총영사관에서 승격)

대리	安光鎬	1964. 7 ~ 1964.10	7	李東翊	1988. 4 ~ 1991. 3
대리	鄭奎燮	1964.10 ~ 1966. 9	8	羅元燦	1991. 3 ~ 1993.10
1	林胤英	1966.11 ~ 1971. 4	9	權純大	1993.10 ~ 1996. 8
2	白寅漢	1971. 4 ~ 1974. 3	10	朴明濬	1996. 8 ~ 1999. 8
3	延河龜	1974. 3 ~ 1977. 4	11	權鍾洛	1999. 8 ~ 2002. 8
4	鄭度淳	1977. 4 ~ 1980.12	12	李錫祚	2002. 8 ~ 2005. 8
5	姜錫在	1981. 1 ~ 1985. 4	13	廉其燮	2005. 8 ~ 2008. 5
6	崔東鎭	1985. 4 ~ 1988. 4	14	李漢坤	2008. 5 ~

### 126) 주코트디부아르공화국대사관 (1966. 2. 16 개설)

1	崔完福	1965. 2 ~ 1967.12	9	金昇浩	1989. 5 ~ 1991. 7
2	姜春熙	1968. 2 ~ 1970. 8	10	梁泰奎	1991. 7 ~ 1994. 8
3	南 鐵	1970. 8 ~ 1973. 8	11	裴相吉	1994. 8 ~ 1998. 4
4	姜永奎	1973. 8 ~ 1976. 5	12	金原徹	1998. 5 ~ 2000. 4
5	韓宇錫	1976. 5 ~ 1980. 5	13	金鍾日	2002. 8 ~ 2005. 2
6	權東萬	1980. 5 ~ 1984. 4	14	李志夏	2005. 2 ~ 2008. 5
7	崔奉濠	1984. 4 ~ 1987. 2	15	朴倫竣	2008. 5 ~
8	李正秀	1987. 2 ~ 1989. 3			

127) 주공고민주공화국대사관 (1969. 12. 19 개설, 1998. 12 폐쇄)  
(2005. 9 상주공관 재개설, 2008. 7. 3 대사관 승격)

1	安珍生	1971. 2 ~ 1973. 5	6	金現坤	1987. 7 ~ 1990.12
대리	黃南子	1972.12 ~ 1974. 6	7	洪承昊	1990.12 ~ 1993. 1
2	林明鎭	1974. 7 ~ 1976. 4	8	金鍾錄	1993. 1 ~ 1995. 8
3	申基欽	1976. 4 ~ 1980. 3	대리	李郁憲	2005. 7 ~ 2007. 2
4	李鍾業	1980. 4 ~ 1984. 5	대리	金鍾碩	2007. 2 ~ 2008. 7
5	全順奎	1984. 5 ~ 1987. 7	9	金成哲	2008. 9 ~

128) 주공고공화국대사관 (1962. 9. 15 개설)  
(1965. 5. 11 폐쇄)

1	崔文卿	1964. 3 ~ 1965. 6			
---	-----	-------------------	--	--	--

129) 주탄자니아합중국대사관 (1992. 10. 21 개설)

1	朴富悅	1992.12 ~ 1995. 7	4	鄭周憲	2001. 8 ~ 2004. 3
2	邊承國	1995. 7 ~ 1998. 9	5	李順天	2004. 3 ~ 2006.12
3	安孝承	1998. 9 ~ 2001. 8	6	金永俊	2006.12 ~

## 2. 대표부

1) 주유럽연합대표부 (1989. 2. 개설)  
(1998. 7. 1 벨기에왕국대사관과 통합)

1	柳宗夏	1989. 2 ~ 1989. 12	3	張萬淳	1993. 1 ~ 1996. 2
2	權東萬	1990. 2 ~ 1993. 1	4	李在春	1996. 2 ~ 1998. 9

2) 주경제협력개발기구대표부 (1997. 1. 4 개설)

1	具本英	1997. 1 ~ 1998. 4	5	權五奎	2004. 7 ~ 2006. 4
2	楊秀吉	1998. 4 ~ 2000.12	6	權泰信	2006. 5 ~ 2008. 9
3	韓惠洙	2001. 2 ~ 2001.11	7	金仲秀	2008. 9 ~
4	李景台	2001.12 ~ 2004. 7			

## 한국외교 60년

### 3) 주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대표부 (1987. 12. 15 개설) (1998. 4. 1 프랑스대사관과 통합)

1	咸泰琳	1988. 3 ~ 1992. 2	3	金現坤	1994. 8 ~ 1997. 8
2	朴尙植	1992. 2 ~ 1994. 8	4	梁東七	1997. 8 ~ 1999. 2

### 4) 주유엔대표부

#### 가) 특 사 (1951. 11. 6 개설)

1	趙炳玉	1949. 3 ~ 1950. 2			
---	-----	-------------------	--	--	--

#### 나) 대 사

1	朴炳稷	1951.11 ~ 1960. 9	12	朴雙龍	1988. 3 ~ 1990. 4
2	林昌榮	1960. 9 ~ 1961. 6	13	玄鴻柱	1990. 4 ~ 1991. 2
3	李壽榮	1961. 7 ~ 1964. 5	14	盧昌燾	1991. 2 ~ 1992. 2
4	金溶植	1964. 5 ~ 1970.12	15	柳宗夏	1992. 2 ~ 1994. 12
5	韓豹頊	1971. 1 ~ 1973. 5	16	朴銖吉	1995. 1 ~ 1998. 4
6	朴東鎭	1973. 5 ~ 1975.12	17	李時榮	1998. 4 ~ 2000. 2
7	文德周	1976. 3 ~ 1979. 4	18	宣峻英	2000. 2 ~ 2003. 6
8	尹錫憲	1979. 4 ~ 1981.12	19	金三勳	2003. 6 ~ 2005. 5
9	金瓊元	1981.12 ~ 1985.10	20	崔英鎭	2005. 5 ~ 2007. 8
10	崔旻洙	1985.10 ~ 1986. 9	21	金鉉宗	2007. 8 ~ 2008. 4
11	朴 權	1986. 9 ~ 1988. 3	22	朴仁國	2008. 4 ~

### 5) 주제네바유엔사무처 및 국제기구대표부

#### 가) 공 사 (1957. 7. 22 주제네바대표부로 개설)

1	金溶植	1959. 7 ~ 1960. 8	3	李漢彬	1961.12 ~ 1963. 8
2	金星鏞	1960.11 ~ 1961. 7	4	陳弼植	1963. 9 ~ 1964.10

나) 대 사

1	鄭一永	1964.10 ~ 1966. 3	9	李相玉	1986. 9 ~ 1990.12
2	韓豹瑛	1966. 3 ~ 1968. 2	10	朴鍊吉	1991. 1 ~ 1993. 4
3	朴東鎮	1968. 4 ~ 1973. 7	11	許 陞	1993. 4 ~ 1996. 1
4	黃鎬乙	1973. 7 ~ 1974.12	12	宣峻英	1996. 1 ~ 1998. 3
5	文德周	1974.12 ~ 1976. 3	13	張萬淳	1998. 4 ~ 2001. 1
6	盧信永	1976. 3 ~ 1980. 8	14	鄭義溶	2001. 1 ~ 2004. 1
7	朴雙龍	1980.12 ~ 1984.11	15	崔 革	2004. 1 ~ 2007. 3
8	朴 槿	1984.11 ~ 1986. 9	16	李晟周	2007. 3 ~

6) 주타이베이대표부

가) 특 사 (1948. 11. 7 특사관 설치)

1	政桓範	1948. 11 ~ 1949. 1			
---	-----	--------------------	--	--	--

나) 주중화민국대사관 (1949. 7. 29 대사관으로 승격)

1	申錫雨	1949. 8 ~ 1950. 3	7	金桂元	1971. 3 ~ 1978.11
2	李範爽	1950.12 ~ 1951. 9	8	玉滿鎬	1978.11 ~ 1981. 5
3	金弘壹	1951.10 ~ 1960. 6	9	金鍾坤	1981. 7 ~ 1985. 4
4	白善燁	1960. 7 ~ 1961. 7	10	金相台	1985. 4 ~ 1988. 7
5	崔用德	1961. 7 ~ 1962. 7	11	韓哲洙	1988. 7 ~ 1991. 7
6	金 信	1962.10 ~ 1971. 2	12	朴魯榮	1991. 7 ~ 1992. 8

다) 주타이베이대표부 (1992. 8. 24 단교에 따른 변경)

1	韓哲洙	1993.11 ~ 1995.12	5	黃龍植	2004. 3 ~ 2006. 2
2	姜敏秀	1996. 2 ~ 1999. 2	6	吳相式	2006. 2 ~ 2008. 9
3	尹海重	1999. 2 ~ 2002. 2	7	具良根	2008. 9 ~
4	孫 薰	2002. 2 ~ 2004. 2			

## 3. 총영사관

### 가. 아시아지역

- 1) 주고베총영사관 (1974. 5. 7 영사관에서 승격)  
(2001. 7. 1 폐쇄, 출장소 설치) (2008. 7. 3 총영사관으로 승격)

1	金鎭河	1974. 6 ~ 1975.12	8	裴宇坤	1993.12 ~ 1997. 5
2	鄭雲澈	1975.12 ~ 1980. 2	9	李秀煥	1997. 5 ~ 1999. 8
3	金基濬	1980. 3 ~ 1981. 9	10	姜俊馨	1999. 8 ~ 2001. 6
4	李志哲	1981. 9 ~ 1986. 2	11	李庚煥	2007. 1 ~
5	金容執	1986. 2 ~ 1989. 3			
6	梁世勳	1989. 3 ~ 1991.12			
7	李圭日	1991.12 ~ 1993.12			

- 2) 주광저우총영사관 (2001. 8 개설)

1	申鉉洙	2001. 5 ~ 2003. 6	3	全在萬	2006. 2 ~ 2009. 2
2	南相旭	2003. 6 ~ 2006. 2	4	金長煥	2009. 2 ~

- 3) 주나고야총영사관 (1974. 5. 7 영사관에서 승격)

1	李春秀	1974. 6 ~ 1976. 3	8	姜信武	1992.12 ~ 1996. 6
2	鄭文淳	1976. 3 ~ 1980. 6	9	蔡洙東	1996. 8 ~ 1998. 8
3	金永坤	1980. 6 ~ 1981.10	10	鄭燦源	1998. 8 ~ 2001. 7
4	河有植	1981. 2 ~ 1984.10	11	柳州烈	2001. 7 ~ 2004. 7
5	金昌錫	1984.10 ~ 1987.11	12	鄭盛培	2004. 7 ~ 2007. 8
6	洪承昊	1987.11 ~ 1990.12	13	李泰雨	2007. 8 ~
7	權 燦	1990.12 ~ 1992.12			

- 4) 주니가타총영사관 (1978. 4. 28 개설)

1	朴性武	1978. 5 ~ 1981. 1	7	裴永珍	1995. 8 ~ 1998. 8
2	金賢珍	1981. 3 ~ 1983. 5	8	洪性禾	1998. 8 ~ 2001. 1
3	金玉珉	1983. 5 ~ 1986. 9	9	崔元吁	2001. 1 ~ 2004. 2
4	成在祥	1986. 9 ~ 1989.12	10	金光圭	2004. 2 ~ 2007. 3
5	李東鮮	1989.12 ~ 1992. 7	11	金忠慶	2007. 3 ~
6	裴泰洙	1992. 7 ~ 1995. 8			

5) 주뭉바이총영사관 (1980. 5. 22 개설, 1982. 3. 19 폐쇄)  
 (1996. 12 재개설, 2001. 7. 1 분관으로 변경)  
 (2005. 12. 9 총영사관으로 승격)

1	李鳳九	1996. 8 ~ 1998. 8	4	吳炳成	2004.12 ~ 2007. 3
2	都在承	1998. 8 ~ 2000. 2	5	金東連	2007. 3 ~
3	朴鍾基	2000. 2 ~ 2001. 7			

6) 주삿포로총영사관 (1966. 5. 23 개설)

1	宋贊鎬	1966. 4 ~ 1972. 6	9	金權萬	1991.12 ~ 1993.12
2	鄭求郁	1972. 6 ~ 1974.12	10	申鉉培	1993.12 ~ 1996. 2
3	文鍾律	1974.12 ~ 1976. 5	11	曹圭泰	1996. 2 ~ 1998. 4
4	禹 鍾	1976. 5 ~ 1981.12	12	鄭榮九	1998. 4 ~ 2000. 7
5	張東潤	1981.12 ~ 1983. 7	13	鄭盛培	2000. 7 ~ 2003. 5
6	李元鎬	1983. 7 ~ 1986. 9	14	吳榮煥	2003. 5 ~ 2006. 2
7	許世麟	1986. 9 ~ 1989. 3	15	姜益淳	2006. 2 ~ 2009. 2
8	姜信武	1989. 5 ~ 1991.12	16	朱福龍	2009. 2 ~

7) 주상하이총영사관 (1993. 5 개설)

1	尹海重	1993. 3 ~ 1996. 1	5	李先鎭	2002. 9 ~ 2003. 4
2	慶昌憲	1996. 1 ~ 1997. 8	6	朴相起	2003. 5 ~ 2005. 8
3	孫相賀	1997. 8 ~ 1999. 7	7	金 揚	2005. 8 ~ 2008. 3
4	申國昊	1999. 8 ~ 2002. 8	8	金正基	2008. 5 ~

8) 주센다이총영사관 (1980. 5. 22 영사관에서 승격)

1	金光潤	1980. 6 ~ 1982. 8	7	金成珪	1995.12 ~ 1998. 8
2	柳志鎬	1982. 8 ~ 1984.11	8	黃圭政	1998. 8 ~ 2001. 1
3	金丙坤	1984.11 ~ 1987.10	9	朴正浩	2001. 1 ~ 2003. 6
4	李京求	1987.10 ~ 1991.12	10	金一萬	2003. 6 ~ 2006. 9
5	鄭普永	1991.12 ~ 1993.12	11	李鍾七	2006. 9 ~ 2009. 2
6	李鍾國	1993.12 ~ 1995.12	12	金正秀	2009. 2 ~



9) 주선양총영사관 (2003. 4. 17 출장소에서 승격)

1	吳炳成	2003. 5 ~ 2004. 8	3	朴聖雄	2007. 4 ~ 2009. 2
2	吳甲烈	2004. 8 ~ 2006.12	4	辛亨根	2009. 2 ~

10) 주시드니총영사관 (1953. 3 개설)  
(1962. 1 23 호주대사관으로 통합)

1	金 勳	1953. 2 ~ 1957. 7	3	金柱天	1961. 6 ~ 1962. 2
2	林松本	1961.12 ~ 1961. 1			

(1970. 6. 21 재개설)

1	沈明源	1970.10 ~ 1972. 9	9	金永善	1992. 2 ~ 1995. 1
2	朴俊夏	1972. 9 ~ 1975. 5	10	閔丙奎	1995. 1 ~ 1997. 9
3	金聖九	1975. 5 ~ 1979. 5	11	白基文	1997. 9 ~ 2001. 1
4	金琦洙	1979. 6 ~ 1980. 11	12	李榮現	2001. 1 ~ 2003. 2
5	張揮東	1981. 2 ~ 1983. 5	13	金昌秀	2003. 2 ~ 2006. 9
6	朴鍾沂	1983. 5 ~ 1986. 9	14	朴榮國	2006. 9 ~ 2008. 4
7	秦寬燮	1986. 9 ~ 1989. 4	15	金雄男	2008. 4 ~
8	安世勳	1989. 5 ~ 1992. 2			

11) 주시안총영사관 (2007. 9. 20 개설)

1	俞載賢	2006.12 ~ 2009. 3	2	全泰東	2009. 3 ~
---	-----	-------------------	---	-----	-----------

12) 주오사카총영사관 (1965. 12. 18 출장소에서 승격)

1	金鎭弘	1966. 3 ~ 1972. 2	9	朴鍾沂	1992. 8 ~ 1995. 5
2	鄭度淳	1972. 2 ~ 1975. 2	10	金世澤	1995. 5 ~ 1998. 8
3	趙一濟	1975. 2 ~ 1976.12	11	尹迥奎	1998. 8 ~ 2001. 4
4	張松錄	1976.12 ~ 1977. 2	12	俞炳宇	2001. 5 ~ 2004. 8
5	金在春	1977. 2 ~ 1981. 6	13	鄭華泰	2004. 8 ~ 2007. 8
6	尹榮燁	1981. 9 ~ 1986.12	14	吳榮煥	2007. 8 ~
7	柳來馨	1986. 2 ~ 1989.10			
8	朴魯洙	1989.10 ~ 1992. 8			

13) 주요코하마총영사관 (1974. 5. 7 영사관에서 승격)

1	李起周	1974. 5 ~ 1976. 4	8	金周鎰	1997. 1 ~ 1999. 8
2	李源達	1976. 4 ~ 1980. 4	9	史富盛	1999. 8 ~ 2001. 1
3	李普炯	1980. 6 ~ 1985. 9	10	徐賢燮	2001. 1 ~ 2002. 2
4	趙成燦	1985. 9 ~ 1989.10	11	鄭貞儉	2002. 2 ~ 2003. 8
5	崔培植	1989.10 ~ 1992. 4	12	朴鍾文	2003. 8 ~ 2005. 8
6	柳鍾玄	1992. 4 ~ 1994. 6	13	朴鍾喆	2005. 8 ~ 2008. 8
7	朴 鍊	1994. 7 ~ 1997. 1	14	金演權	2008. 8 ~

14) 주청투총영사관 (2005. 2. 26개설)

1	朴銅先	2004. 8 ~ 2007. 8	2	金一斗	2007. 8 ~
---	-----	-------------------	---	-----	-----------

15) 주칭다오총영사관 (1994. 9 개설)

1	金浩泰	1994. 7 ~ 1996. 7	5	朴鍾先	2002. 8 ~ 2004. 2
2	韓和吉	1996. 8 ~ 1998. 8	6	辛亨根	2004. 2 ~ 2006. 9
3	全鑿洙	1998. 8 ~ 2000. 2	7	金善興	2006. 9 ~ 2009. 2
4	琴秉穆	2000. 2 ~ 2002. 8	8	俞載賢	2009. 3 ~

16) 주카라치총영사관 (1983. 11. 7 출장소에서 승격)  
(1998. 2. 1 분관으로 변경)

1	秦寬燮	1983.12 ~ 1984.11	6	朴官雲	1991. 8 ~ 1994. 6
2	李相薰	1984.11 ~ 1986. 9	7	白英基	1994. 7 ~ 1996. 3
3	金東鎭	1986. 9 ~ 1988. 3	8	鄭茂三	1996. 3 ~ 1997. 8
4	崔南俊	1988. 3 ~ 1989. 2	9	金鍾萬	1997. 8 ~ 1999. 1
5	曹圭泰	1989. 3 ~ 1991. 8			

17) 주호치민총영사관 (1993. 11. 19 개설)

1	許方彬	1993. 8 ~ 1997. 1	5	金芝榮	2003. 5 ~ 2006. 2
2	徐健二	1997. 1 ~ 1999. 1	6	閔泳祐	2006. 2 ~ 2008. 8
3	劉永方	1999. 3 ~ 2001. 8	7	金相潤	2008. 8 ~
4	金慶憲	2001. 8 ~ 2003. 5			

## 한국외교 60년

### 18) 주홍콩총영사관 (1949. 11. 29 영사관에서 승격)

1	李鼎邦	1949.11 ~ 1952.12	13	金正勳	1984. 4 ~ 1985.10
2	朴昌俊	1952.12 ~ 1956. 8	14	金在春	1985.10 ~ 1987.10
3	姜春熙	1956. 8 ~ 1960.11	15	金以銘	1987.10 ~ 1990. 6
4	崔文卿	1961. 3 ~ 1962. 7	16	鄭敏吉	1990. 6 ~ 1993. 4
5	文德周	1962. 7 ~ 1964.10	17	南洪祐	1993. 4 ~ 1996. 2
6	陳弼植	1964.10 ~ 1966. 9	18	朴楊千	1996. 2 ~ 1998. 4
7	張相文	1966. 9 ~ 1967.11	19	申斗柄	1998. 4 ~ 2000.12
8	尹慶道	1967.11 ~ 1971.12	20	金光東	2001. 2 ~ 2002. 1
9	朴昌南	1971.12 ~ 1974. 1	21	姜根鏞	2002. 2 ~ 2004. 8
10	李秀佑	1974. 1 ~ 1977. 7	22	趙煥鐸	2004. 8 ~ 2007. 3
11	李昌洙	1977. 7 ~ 1980.12	23	石東演	2007. 3 ~
12	金太智	1981. 2 ~ 1984. 4			

### 19) 주후쿠오카총영사관 (1966. 1. 27 출장소에서 승격)

1	鄭文淳	1966. 3 ~ 1975. 7	8	禹鍾湜	1993. 3 ~ 1995. 8
2	朴仁洙	1975. 7 ~ 1976. 7	9	裴泰洙	1995. 8 ~ 1998. 4
3	黃元滢	1976. 7 ~ 1979. 8	10	徐賢燮	1998. 4 ~ 2001. 1
4	南洪祐	1979. 8 ~ 1981.12	11	洪性和	2001. 1 ~ 2001. 7
5	鄭求郁	1981.12 ~ 1985. 2	12	趙誠勇	2001. 8 ~ 2004. 2
6	金權萬	1985. 2 ~ 1990. 6	13	金榮昭	2004. 2 ~ 2007. 3
7	崔容燦	1990. 6 ~ 1993. 3	14	金賢明	2007. 3 ~

### 20) 주히로시마총영사관

#### 가) 주시모노세끼총영사관 (1980. 5. 22 영사관에서 승격) (1996. 6. 29 폐쇄)

1	盧在朝	1980. 6 ~ 1982. 8	4	金宇相	1987. 4 ~ 1990.11
2	梁龜燮	1982. 8 ~ 1985. 9	5	朴文奎	1990.11 ~ 1994. 6
3	吳任烈	1985. 9 ~ 1987. 4	6	白善君	1994. 7 ~ 1996.12

#### 나) 주히로시마총영사관 (1996. 6. 29 개설)

1	白善君	1996. 12 ~ 1998. 4	5	金演權	2004. 3 ~ 2006.12
2	曹圭泰	1998. 4 ~ 2000. 7	6	徐榮振	2006.12 ~ 2008. 4
3	朴承武	2000. 7 ~ 2002. 8	7	許德行	2008. 4 ~
4	李河鎮	2002. 8 ~ 2004. 3			

## 나. 미주지역

## 21) 주뉴욕총영사관 (1949. 4. 1 개설)

1	南宮炎	1949. 4 ~ 1960. 7	12	孔魯明	1986.10 ~ 1990. 1
2	文德周	1960. 7 ~ 1962. 7	13	蔡義錫	1990. 1 ~ 1991. 7
3	張在鏞	1962.10 ~ 1966. 9	14	金琦洙	1991. 7 ~ 1993. 8
4	崔文卿	1966. 9 ~ 1968. 7	15	李鉉弘	1993. 8 ~ 1996. 1
5	鄭奎燮	1968. 7 ~ 1969.12	16	朴魯洙	1996. 1 ~ 1998.12
6	洪聖郁	1969.12 ~ 1971.10	17	許利勳	1999. 2 ~ 2001. 1
7	金寅權	1971. 10 ~ 1975. 2	18	金恒經	2001. 1 ~ 2001.10
8	鄭度淳	1975. 2 ~ 1977. 4	19	趙源一	2001.10 ~ 2004. 8
9	尹浩根	1977. 4 ~ 1980.11	20	文倬柱	2004. 8 ~ 2007. 8
10	金世珍	1980.12 ~ 1984. 3	21	金慶根	2007. 8 ~
11	金太智	1984. 4 ~ 1986.10			

## 22)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1948. 11. 21 개설)

1	閔熙植	1948.10 ~ 1950. 8	7	朴民秀	1979. 6 ~ 1982.12
대리	李泓烈	1950. 8 ~ 1950.11	8	黃光漢	1982.12 ~ 1985. 9
"	崔雲祥	1950.12 ~ 1952.12	9	金琦洙	1985. 9 ~ 1989. 2
"	吳 鴻	1952.12 ~ 1954. 7	10	朴宗相	1989. 2 ~ 1992.12
"	陳弼植	1954. 7 ~ 1955. 9	11	金恒經	1992.12 ~ 1995. 1
"	金昌煥	1955. 9 ~ 1959.11	12	朴泰熙	1995. 1 ~ 1998. 4
"	姜永奎	1959.11 ~ 1960.11	13	閔形基	1998. 4 ~ 1999. 8
"	池蓮泰	1960.11 ~ 1961.10	14	金明培	1999. 8 ~ 2001. 2
2	安光錄	1961.10 ~ 1968. 5	15	成正慶	2001. 2 ~ 2003. 5
3	盧信永	1968. 5 ~ 1972. 4	16	李潤馥	2003. 5 ~ 2006. 2
4	蘇尚永	1972. 4 ~ 1974. 5	17	崔秉孝	2006. 2 ~ 2008. 4
5	朴 英	1974. 6 ~ 1976. 5	18	金在壽	2008. 4 ~
6	朴相斗	1976. 5 ~ 1979. 4			

23) 주마이애미총영사관 (1979. 3. 29 개설 1982. 3. 19 폐쇄)  
(1988. 9. 20 재개설, 1998. 2. 1 폐쇄)

1	李福衡	1979. 6 ~ 1981. 3	5	崔根培	1992.12 ~ 1995. 7
2	李東翊	1981. 3 ~ 1981.12	6	朴富悅	1995. 7 ~ 1997. 9
3	安賢源	1988.11 ~ 1990.11	7	張東哲	1997. 9 ~ 1999. 2
4	金東瑚	1990.11 ~ 1992.12			

## 24) 주몬트리올총영사관 겸 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

(1980. 5. 22 주몬트리올총영사관 개설)  
(2002. 2. 4 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 겸임)

1	金昌勳	1980. 6 ~ 1984. 4	8	李祥太	1998. 4 ~ 2001. 2
2	李鍾業	1984. 5 ~ 1987. 1	9	崔鍾武	2001. 2 ~ 2003. 9
3	羅元燦	1987. 1 ~ 1989. 12	10	李秀澤	2003. 9 ~ 2006. 9
4	崔成泓	1989.12 ~ 1992. 7	11	申吉壽	2006. 9 ~ 2009. 2
5	金泳燮	1992. 7 ~ 1994. 6	12	金鍾勳	2009. 2 ~
6	梁泰奎	1994. 8 ~ 1997. 1			
7	金鍾錄	1997. 1 ~ 1998. 4			

## 25) 주보스턴총영사관 (1979. 8개설, 1982. 3 폐쇄) (1989. 1 재개설)

1	咸泰嫻	1979. 6 ~ 1981. 7	6	李 樑	1997. 1 ~ 2000. 2
2	李文洙	1981. 9 ~ 1981.12	7	朴宰善	2000. 2 ~ 2003. 9
3	朴尙植	1988.11 ~ 1992. 2	8	崔元善	2003. 9 ~ 2006. 2
4	安鍾九	1992. 2 ~ 1994. 2	9	池永善	2006. 2 ~ 2008. 4
5	朴信一	1994. 2 ~ 1997. 1	10	金周錫	2008. 4 ~

## 26) 주밴쿠버총영사관 (1970. 2. 12 개설)

1	張在鏞	1969.11 ~ 1973. 5	9	李斗馥	1990.11 ~ 1993. 8
2	崔明俊	1973. 7 ~ 1975. 4	10	姜宗遠	1993. 8 ~ 1996. 8
3	李龍勳	1975. 7 ~ 1978. 6	11	姜雄植	1996. 8 ~ 1999. 8
4	韓 杞	1978. 6 ~ 1980. 4	12	姜炳一	1999. 8 ~ 2002. 8
5	姜大完	1980. 4 ~ 1983. 6	13	朴鍾基	2002. 8 ~ 2004. 8
6	蘇秉用	1983. 6 ~ 1985. 9	14	崔忠柱	2004. 8 ~ 2007. 9
7	姜信盛	1985. 9 ~ 1987. 9	15	徐德摸	2007. 9 ~
8	鄭基鈺	1987. 9 ~ 1990.11			

27) 주상파울루총영사관 (1970. 10. 1 개설)

1	李允熙	1970.10 ~ 1973. 9	9	金鍾敏	1990.12 ~ 1992. 6
2	朴仁洙	1973. 9 ~ 1975. 7	10	金正舜	1992. 6 ~ 1994. 8
3	文熙哲	1975. 7 ~ 1978. 6	11	李晁周	1994. 8 ~ 1996.11
4	張基安	1978. 6 ~ 1981. 2	12	林秀永	1996.11 ~ 1999. 8
5	尹錫興	1981. 2 ~ 1983. 1	13	金英吉	1999. 8 ~ 2001. 8
6	吳彩基	1983.12 ~ 1986.12	14	鄭華鉉	2001. 8 ~ 2004. 8
7	金興洙	1986.12 ~ 1989. 2	15	權寧郁	2004. 8 ~ 2007. 8
8	李元永	1989. 2 ~ 1990.11	16	金順泰	2007. 8 ~

28)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1950. 9. 15 영사관에서 승격)

1	朱榮翰	1950. 2 ~ 1960. 5	12	蘇鎮勳	1982. 8 ~ 1984. 3
2	曹元錫	1960. 5 ~ 1960.11	13	文基烈	1984. 3 ~ 1986. 9
3	康元吉	1960.11 ~ 1961. 5	14	玄熙剛	1986. 9 ~ 1990. 2
4	李一雨	1961. 6 ~ 1962. 7	15	朴春範	1990. 2 ~ 1993. 2
5	白寅漢	1962.10 ~ 1965. 2	16	李正夏	1993. 2 ~ 1995.12
6	鄭度淳	1965. 2 ~ 1969.12	17	許利勳	1996. 1 ~ 1999. 2
7	蘇尚永	1969.12 ~ 1972. 5	18	柳泰鉉	1999. 2 ~ 2002. 2
8	尹 燦	1972. 5 ~ 1976. 1	19	金宗燯	2002. 2 ~ 2004. 7
9	申東元	1976. 1 ~ 1978. 6	20	丁相基	2004. 7 ~ 2007. 3
10	申貞燮	1978. 6 ~ 1981. 9	21	具本友	2007. 3 ~
11	盧永燦	1981. 9 ~ 1982. 5			

29) 주시애틀총영사관 (1977. 11. 10 개설)

1	張潤傑	1978. 5 ~ 1981. 9	7	金 均	1995. 1 ~ 1996. 11
2	李文洙	1981.12 ~ 1984. 4	8	孫 薰	1997. 1 ~ 2000. 2
3	安世勳	1984. 4 ~ 1987. 2	9	文炳祿	2000. 2 ~ 2003. 2
4	金興洙	1987. 2 ~ 1990. 6	10	金在國	2003. 2 ~ 2006. 2
5	高昌秀	1990. 6 ~ 1992. 8	11	權贊皓	2006. 2 ~ 2008. 5
6	李海淳	1992. 8 ~ 1995. 1	12	李河龍	2008. 5 ~

## 30) 주시카고총영사관 (1968. 6. 1 개설)

1	白寅漢	1968. 5 ~ 1971. 2	10	金正琪	1991. 7 ~ 1993. 4
2	金正泰	1971. 3 ~ 1973. 2	11	李章浩	1993. 4 ~ 1996. 2
3	尹永教	1973. 7 ~ 1974. 6	12	安鍾九	1996. 3 ~ 1998. 1
4	李玟容	1974. 6 ~ 1977. 4	13	卞鍾圭	1998. 4 ~ 2000. 7
5	李敬燾	1977. 4 ~ 1980. 8	14	曹永載	2000. 7 ~ 2002. 7
6	李廷彬	1980. 8 ~ 1983. 6	15	秋圭昊	2002. 8 ~ 2004. 8
7	鄭慶逸	1983. 6 ~ 1986. 2	16	金旭	2004. 8 ~ 2007. 3
8	李承坤	1986. 2 ~ 1989. 3	17	孫聖煥	2007. 3 ~
9	姜大完	1989. 3 ~ 1991. 7			

## 31) 주애들랜타총영사관 (1976. 9. 2 개설)

1	吳明鎬	1976. 9 ~ 1978. 5	8	權寧民	1992. 7 ~ 1995. 2
2	安煥哲	1978. 5 ~ 1981. 3	9	張勳	1995. 2 ~ 1998. 4
3	朱東雲	1981. 3 ~ 1982.11	10	柳光錫	1998. 4 ~ 2000. 7
4	宋學源	1982.11 ~ 1986. 3	11	趙重杓	2000. 7 ~ 2003. 6
5	朴鍊	1986. 3 ~ 1987. 7	12	金成燁	2003. 6 ~ 2005. 2
6	金錫絃	1987. 7 ~ 1990.12	13	李光宰	2005. 2 ~ 2008. 8
7	金現坤	1990.12 ~ 1992. 7	14	全海鎭	2008. 8 ~

## 32) 주앵커리지총영사관 (1980. 5. 22 개설, 1998. 4. 1 폐쇄)

1	金龍權	1980. 6 ~ 1983. 5	6	金永湜	1993. 8 ~ 1995. 5
2	黃永在	1983. 5 ~ 1986. 2	7	閔丙學	1995. 5 ~ 1996. 8
3	姜錫弘	1986. 2 ~ 1988.12	8	車濬吉	1996. 8 ~ 1998. 4
4	趙明行	1989. 1 ~ 1990.12	9	林大鎔	1998. 4 ~ 1999. 3
5	許方彬	1990.12 ~ 1993. 8			

## 33) 주토론토총영사관 (1975. 8. 18 개설)

1	李昌範	1975. 6 ~ 1978. 6	8	沈景輔	1995. 1 ~ 1997. 8
2	朴宗相	1978. 6 ~ 1980. 8	9	朴大元	1997. 8 ~ 2000. 7
3	李相薰	1980. 8 ~ 1984. 4	10	金塾	2000. 7 ~ 2003. 2
4	朱東雲	1984. 4 ~ 1985. 5	11	河泰允	2003. 3 ~ 2005. 8
5	朴松澤	1985.11 ~ 1989.11	12	金成哲	2005. 8 ~ 2008. 8
6	李秉海	1989.11 ~ 1992. 4	13	洪志仁	2008. 8 ~
7	朴泰熙	1992. 6 ~ 1995. 1			

34) 주하갯나총영사관 (1977. 2. 9 영사관에서 승격)  
(1999. 3. 1 분관으로 변경)

1	李春秀	1977. 2 ~ 1979. 6	6	李東鮮	1987.11 ~ 1989.12
2	梁龜燮	1979. 6 ~ 1981.12	7	崔 勇	1989.12 ~ 1993. 3
3	李東潤	1981.12 ~ 1983.11	8	朴慶泰	1993. 3 ~ 1996. 1
4	鄭普永	1983.12 ~ 1986. 4	9	溫重烈	1996. 1 ~ 1997. 8
5	朴榮喆	1986. 4 ~ 1987.11	10	金元泰	1997. 8 ~ 1999. 2

35) 주호놀룰루총영사관 (1949. 4. 2 개설)

1	金永燮	1949. 4 ~ 1949.12	12	崔相鎭	1984. 4 ~ 1986. 9
2	金溶植	1949.12 ~ 1951.11	13	洪淳龍	1986. 9 ~ 1990. 2
3	吳重政	1951.11 ~ 1960. 8	14	孫章來	1990. 2 ~ 1992. 6
4	金昌煥	1960. 8 ~ 1961. 9	15	李炳台	1992. 8 ~ 1993. 3
5	金世源	1961.10 ~ 1969.11	16	梁世勳	1993. 3 ~ 1996. 1
6	金鍾圭	1969.11 ~ 1971. 3	17	姜信盛	1996. 1 ~ 1997. 8
7	李圭星	1971. 4 ~ 1973. 9	18	成正慶	1997. 8 ~ 2000. 2
8	李允熙	1973. 9 ~ 1977. 7	19	李址斗	2000. 2 ~ 2003. 2
9	沈明源	1977. 7 ~ 1980.11	20	崔興植	2003. 2 ~ 2005. 8
10	黃鎬乙	1980. 4 ~ 1980.11	21	姜大鉉	2005. 8 ~ 2008. 4
11	金正勳	1980.12 ~ 1984. 4	22	金奉珠	2008. 4 ~

36) 주휴스턴총영사관 (1968. 6. 1 개설)

1	安光誅	1968. 5 ~ 1970.10	9	崔大和	1990.12 ~ 1993.10
2	池蓮泰	1970.11 ~ 1974. 5	10	朴楊千	1993.10 ~ 1996. 2
3	金仁斗	1974. 5 ~ 1976. 8	11	吳行兼	1996. 2 ~ 1999. 2
4	金炯根	1976. 8 ~ 1981.11	12	林炳孝	1999. 2 ~ 2001. 7
5	金聖九	1979. 6 ~ 1981.12	13	梁峰烈	2001. 7 ~ 2004. 2
6	朴南均	1981.12 ~ 1984.12	14	閔東石	2004. 2 ~ 2006. 4
7	朴魯洙	1984.12 ~ 1987.10	15	金貞根	2006. 9 ~ 2009. 2
8	許 陸	1987.10 ~ 1990.12	16	趙允秀	2009. 2 ~



## 다. 유럽지역

- 37) 주라스팔마스총영사관 (1973. 10. 19 영사관 개설)  
 (1976. 6. 17 총영사관 승격)  
 (1999. 4. 1 분관으로 변경)

1	朴贊極	1976. 7 ~ 1980.11	6	張世敦	1992. 7 ~ 1994. 8
2	朴善昊	1980.12 ~ 1984.10	7	韓鍾熙	1994. 8 ~ 1996. 8
3	李禎南	1984.10 ~ 1987. 5	8	洪淙厚	1996. 8 ~ 1998. 4
4	李奎漢	1987. 5 ~ 1990. 5	9	丁廣均	1998. 4 ~ 1999. 4
5	俞炳勳	1990. 5 ~ 1992. 7			

- 38) 주말라노총영사관 (1978. 7. 12 개설, 1982. 2. 28 폐쇄)  
 (2008. 2 재개설)

1	邊正鉉	1978. 5 ~ 1980.12	3	姜熙潤	2007.11 ~
2	李元鎬	1981. 2 ~ 1981.12			

- 39)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1987. 8. 1 개설)  
 (1993. 6 폐쇄)

1	明仁世	1988. 2 ~ 1989.10	2	趙甲東	1989.10 ~ 1993. 5
---	-----	-------------------	---	-----	-------------------

- 40) 주백림총영사관 (1972. 11. 16 서백림총영사관 개설)  
 (1990. 10. 30 백림총영사관으로 개칭)  
 (1999 폐쇄)

1	李敬燾	1972.12 ~ 1974. 6	7	柳志鎬	1984.11 ~ 1985.11
2	李源達	1974. 6 ~ 1976. 4	8	閔炳錫	1985.11 ~ 1987.10
3	蘇鎮勳	1976. 4 ~ 1978. 6	9	朴東奎	1987.10 ~ 1990.11
4	李源昊	1978. 6 ~ 1980. 6	10	玄熙剛	1990.11 ~ 1993. 8
5	尹處遠	1980. 6 ~ 1982. 2	11	金在珪	1993. 8 ~ 1996. 2
6	金奉奎	1982. 2 ~ 1984.11	12	金勝義	1996. 2 ~ 1999. 8

41)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1992. 11 개설)

1	朴明濬	1992.11 ~ 1995. 2	5	李俊和	2000. 8 ~ 2002. 8
2	李錫坤	1995. 2 ~ 1997. 6	6	崔在根	2002. 8 ~ 2005. 3
3	崔龍三	1997. 7 ~ 1998. 8	7	全大完	2005. 3 ~ 2007.11
4	太錫源	1998. 8 ~ 2000. 8	8	金茂永	2007.11 ~

42)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2006. 3. 31 개설)

1	崔在根	2006. 3 ~ 2008. 6	2	李石培	2008. 6 ~
---	-----	-------------------	---	-----	-----------

43)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 (2009. 6. 16 개설)

1	崔錫仁	2008. 9 ~			
---	-----	-----------	--	--	--

44) 주이스탄불총영사관 (1977. 12 개설, 1982. 2 폐쇄)  
(2007. 1. 1 재개설)

1	權東萬	1977.12 ~ 1979. 6	3	白盛澤	2006.12 ~
2	李東潤	1979. 6 ~ 1981.12			

45)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1985. 3. 15 개설)

1	丁 暢	1985. 3 ~ 1989. 5	6	崔英喆	1997. 1 ~ 1999. 8
2	姜勝求	1989. 5 ~ 1991. 4	7	李春先	1999. 8 ~ 2002. 1
3	李鳳九	1991. 5 ~ 1993.12	8	金永元	2002. 2 ~ 2004. 8
4	林大澤	1993.12 ~ 1995. 8	9	金鍾海	2004. 8 ~ 2007. 8
5	金鍾錄	1995. 8 ~ 1997. 1	10	李忠石	2007. 8 ~

46) 주함부르크총영사관 (1964. 8. 13 개설, 1999. 4. 1 폐쇄)  
(2008. 3. 26 재개설)

1	朴昌南	1966. 5 ~ 1968. 2	8	金敦植	1984.10 ~ 1987. 4
2	李玟容	1968. 2 ~ 1972. 6	9	崔俊鎬	1987. 4 ~ 1990.11
3	李楠基	1972. 6 ~ 1974. 6	10	李秀煥	1990.11 ~ 1993. 2
4	金炯洙	1974. 6 ~ 1978.11	11	朴春範	1993. 2 ~ 1993. 3
5	姜錫在	1978.11 ~ 1981. 1	12	黃古信	1993. 3 ~ 1995. 12
6	崔公天	1981. 2 ~ 1983. 5	13	李相浣	1996. 1 ~ 1999. 3
7	金潤澤	1983. 5 ~ 1984.10	14	金熙澤	2007.11 ~

## 라. 중동지역

47) 주두바이총영사관 (2008. 3. 12 개설)

1	朴奎玉	2007. 11 ~			
---	-----	------------	--	--	--

48) 주젯타총영사관 (1984. 10. 15 개설, 1998. 8 폐쇄)  
(2008. 4. 16 재개설)

1	田永珪	1984.10 ~ 1986. 3	5	吳明根	1995. 7 ~ 1997. 5
2	金基兆	1986. 3 ~ 1989. 1	6	都在承	1997. 5 ~ 1998. 8
3	金汶經	1989. 1 ~ 1992. 4	7	朴錫珍	2007.11 ~ 2008. 5
4	羅義均	1992. 7 ~ 1995. 7	8	韓達傳	2008.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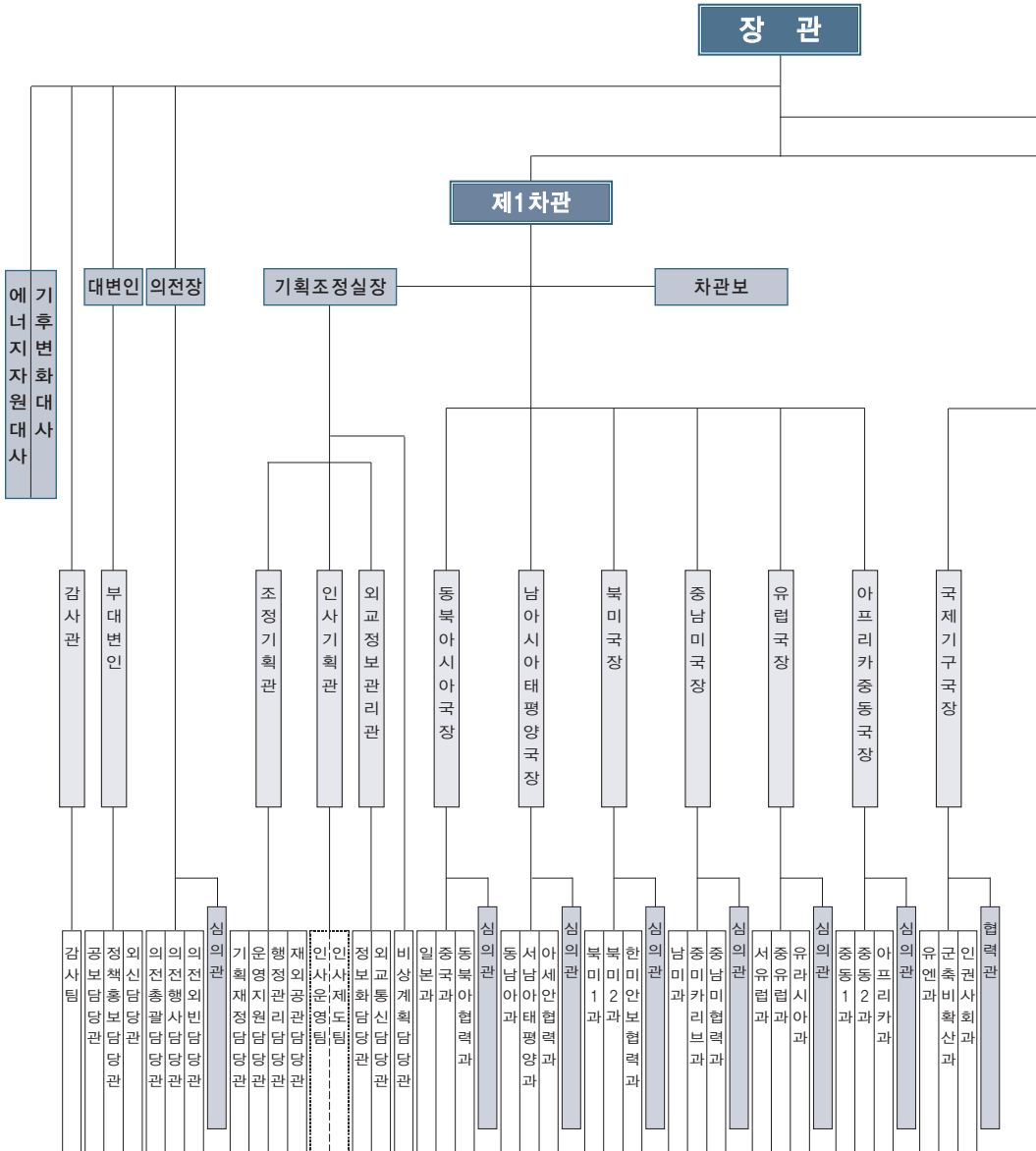
## 4. 영사관

1) 주나하영사관 (1973. 3. 15 개설)  
(1995. 8. 4 폐쇄)

1	崔公天	1973. 4 ~ 1976	4	李奎漢	1982. 8 ~ 1986. 2
2	盧在朝	1976. 2 ~ 1980. 6	5	曹圭泰	1986. 2 ~ 1989. 3
3	李圭守	1980. 6 ~ 1981.12	6	李秀煥	1989.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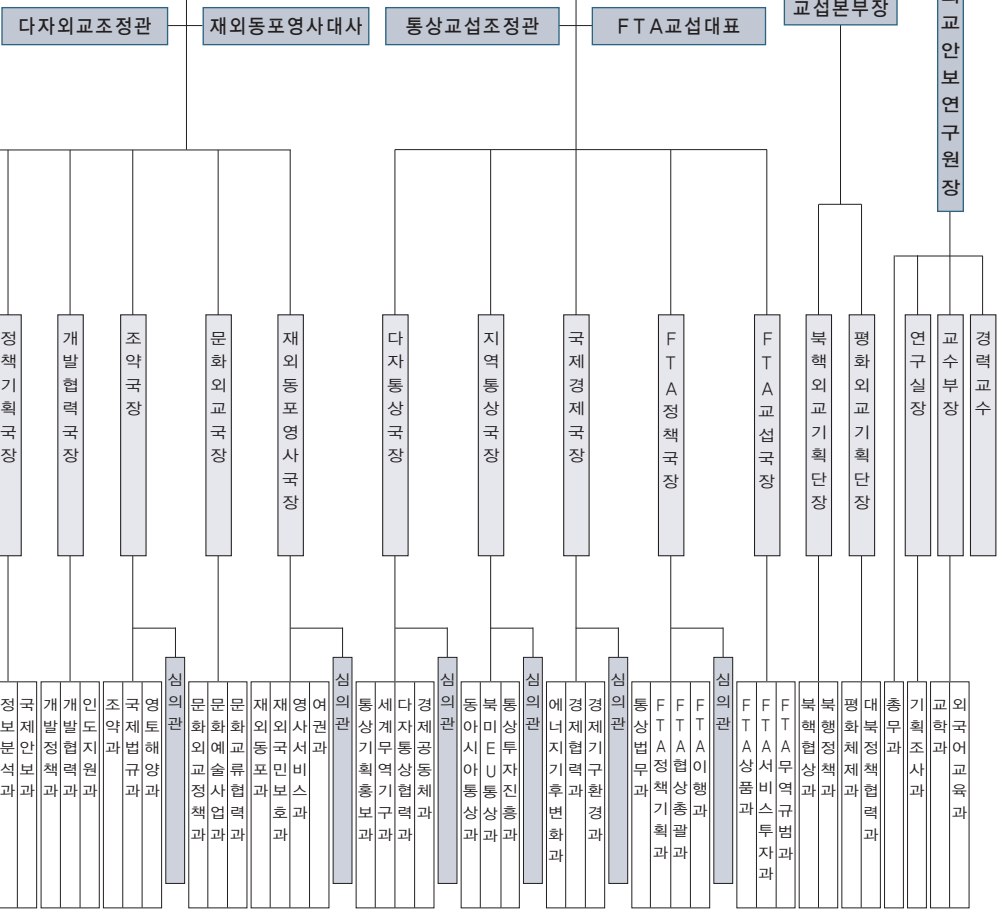


■ 외교통상부 조직도 (2009년 1월 현재)



통상교섭본부장

제2차관



## ■ 약어 표

	영문 공식 명칭	한글 공식 명칭
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
ACD	Asian Cooperation Dialogue	아시아협력대화
ACS	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카리브국가연합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 개발은행
AEBF	Asia-Europe Business Forum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
AECF 2000	2000 Asia-Europe Cooperation Framework	아시아·유럽 협력기본지침서
AEETC	Asia-Europe Environmental Technology Center	아시아·유럽 환경기술센터
AEYLS	Asia-Europe Young Leaders Symposium	아시아·유럽 젊은 지도자회의
AG	Australia Group	호주그룹
ANZUS	The 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Security Treaty	앤저스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G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아시아·태평양 자금 세탁방지그룹
ARF	ASEAN Regional Forum	ASEAN 지역안보포럼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PMC	ASEAN Post Ministerial Conference	ASEAN 확대외장관회의
ASEAN+3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Plus Three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
ASEF	Asia-Europe Foundation	아시아·유럽 재단
ASEM	Asia 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PAC	Asian and Pacific Council	아시아·태평양 각료이사회
AU	African Union	아프리카연합
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BDA	Banco Delta Asia	방코델타아시아은행
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국제박람회기구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투자협정
BRICs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신흥국)
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생물무기금지협약
CAP	Consolidated Appeals Process	합동지원요청(유엔)
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	국별지원전략
CAT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고문방지협약
CBI	Caribbean Basin Initiative	카리브 지역 개발촉진계획
CD	Conference on Disarmament	제네바 군축회의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차별철폐협약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R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철폐협약

	영문 공식 명칭	한글 공식 명칭
CERF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중앙긴급대응기금(유엔)
CFC	Combined Forces Command	한·미 연합사령부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ND	Commission on the Narcotic Drugs	마약위원회
CPRM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주노동자권리협약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권리협약(유엔)
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포괄적핵실험금지협약
CTC	Counter-Terrorism Committee	대테러위원회(유엔)
CTI	Committee of Trade and Investment	무역·투자위원회
CTTF	Counter-Terrorism Task Force	대테러대책반(APEC)
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협약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EACP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EANET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
EAS	East Asia Summit	동아시아정상회의
EASG	East Asia Study Group	동아시아연구그룹
EASI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동아시아 전략구상
EASR	Ease Asia Strategic Report	신동아시아·태평양 전략
EAVG	East Asia Vision Group	동아시아비전그룹
EC	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중남미경제위원회(유엔)
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경제사회이사회(유엔)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EEC	Europe Economic Community	유럽 경제공동체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EIFSO	Educational Institute of Foreign Service Officers	외무공무원교육원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EWG	Energy Working Group	에너지 실무그룹(APEC)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식량농업기구(유엔)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OECD)
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
FMS	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차관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FSF	Financial Stability Forum	금융안정포럼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영문 공식 명칭	한글 공식 명칭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Region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이사회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지구환경기금
GHD	Good Humanitarian Donorship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
GICNT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세계핵테러방지구상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GP	Global Partnership	G8 글로벌 파트너십
HLWG	Humanitarian Liaison Working Group	인도적 지원 연락그룹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IAP Peer Review	Individual Action Plan Peer Review	개별실행계획 검토회의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ICA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ICCAT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ICCROM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국제문화재보존복구 연구센터
I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ICI	International Compact with Iraq	이라크와의 국제협약
ICPRCP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기간 위원회(UNESCO)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제적십자위원회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
IDEP	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s	국제개발 교환프로그램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IECOK	International Economic Consultative Organization for Korea	대한경제협의체
IFANS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외교안보연구원
IFAP	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	투자원활화 행동계획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IFR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국제적십자자연맹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영문 공식 명칭	한글 공식 명칭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제올림픽위원회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제이주기구
IOTC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인도양 참치위원회
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SG on CBMs & PD	Inter-sessional Support Group o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Preventive Diplomacy	신뢰구축·예방외교 지원그룹 회기간회의(ARF)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ITA	Information Trade Agreement	정보기술협정
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국제핵융합실험로
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국제해양법재판소
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국제백신연구소
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국제포경위원회
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다자 간 투자협정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MEAs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	다자 간 환경협약
MENA Bank	The Bank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중동·북아프리카 경제협력개발은행
MERCOSUR	Mercado Comun del Sur	남미공동시장
MOPAN	Multilateral Organ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기술통제체제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 자유무역협정
NCRE	National Competitive Recruitment Examinations	유엔 국별경쟁시험
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동북아 협력대화
NEAPSM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NEASED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NEASPEC	North 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동북아 환경협력 계획
NIEs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신흥공업국
NOC	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가올림픽위원회
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UNEP)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NSG	Nuclear Suppliers Group	원자력공급국그룹
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기구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DSG	OCHA Donor Support Group	OCHA 공여국 지원그룹(유엔)

	영문 공식 명칭	한글 공식 명칭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안보협력기구
PIF	Pacific Islands Forum	태평양도서국포럼
PKO	Peacekeeping Operation	평화유지활동
PLO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팔레스타인해방기구
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지방재건팀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확산방지구상
RRT	Regional Reconstruction Team	지방재건팀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
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Cooperation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rea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
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전략무기제한협정
SEATO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동남아시아조약기구
SFI	Secure Freight Initiative	화물안보구상
SICA	Sistema de la Integracion Centroamericana	중미통합체제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시설
SOFA	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	특별긴급관세
SWF	Sovereign Wealth Fund	국부펀드
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한·미·일 3국 대북정책 조정그룹
TEMM	Tripartite Environmental Ministers Meeting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TFAP	Trades Facilitation Action Plan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UNAMA	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in Afghanistan	유엔 아프가니스탄지원단
UN-APCICT	United Nations Asian and Pacific Training Centr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유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기술 교육센터
UNCCPCJ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유엔 환경개발회의
UNC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유엔 인간환경회의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유엔 해양법협약
UNCOK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유엔 한국위원단
UNCSD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 지속개발위원회
UNCSW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UNCURK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
UNDC	United Nations Disarmament Commission	유엔 군축위원회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 개발계획

	영문 공식 명칭	한글 공식 명칭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 환경계획
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 기후변화협약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유엔 인구기금
UNFSA	United Nations Fish Stocks Agreement	유엔 공해어업협정
UNGC	United Nations Governance Centre	유엔 거버넌스센터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 난민최고대표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 아동기금
UNIDO-ITP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Investment Technology Promotion Office	유엔 공업개발기구
UNIFIL	United Nations Interim Forces in Lebanon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유엔 한국재건단
UNMCK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유엔 기념묘지관리처
UNMIL	United Nations Mission in Liberia	유엔 라이베리아 임무단
UNMIN	United Nations Mission in Nepal	유엔 네팔 임무단
UNMIS	United Nations Mission in Sudan	유엔 수단 임무단
UNMIT	United Nations Integrated Mission in Timor-Leste	유엔 동티모르 임무단
UNMOGIP	United Nations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 and Pakistan	유엔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UNOCHA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UNOMIG	United Nations Observer Mission in Georgia	유엔 그루지야 감시단
UNTCOK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유엔 한국임시위원회
UR	Uruguay Round	우루과이라운드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제개발청
WA	Wassenaar Arrangement	바세나르체제
WCPFC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
WEF	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
WFP	World Food Program	세계식량계획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파괴무기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 사진 출처 목록

	사진제목	출처
1	제헌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과 미군정 수뇌들	국가기록원
2	신임장을 받는 무초 초대 주한 미국대사	외교사료관
3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 참전을 결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가기록원
4	서울 수복 후 시청에 걸린 유엔군 환영 현수막	국가기록원
5	정전협정 서명	국가기록원
6	한·미 상호방위조약 비준서에 서명하는 변영태 외무장관	연합뉴스
7	한·일관계 정상화 관련 조약 비준서에 서명하는 박정희 대통령	국가기록원
8	유엔 및 비동맹회의 참석결과를 보고하는 김동조 외무장관	연합뉴스
9	카터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대회	연합뉴스
10	제24회 서울 올림픽개임	연합뉴스
11	한·소협정 조인식을 체결하는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	국가기록원
12	동티모르 PKO 활동	국방부
13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외교사료관
14	한·중수교	외교통상부
15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외교통상부
16	2000년 남북정상회담	연합뉴스
17	2000년 서울 ASEM 정상회의	연합뉴스
18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연합뉴스
19	이라크 파병 한국군의 PKO 활동	국방부
20	세계 속 한국 대중문화	연합뉴스
21	2004년 ASEAN+3 정상회의	외교통상부(외교백서)
22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연합뉴스
23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의 취임선서	국가기록원
24	한·미 FTA 교섭	연합뉴스
25	아프가니스탄 공무원 연수센터 전경	KOICA
26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개막	연합뉴스
27	2007년 남북정상회담	연합뉴스
28	2008년 제2회 ODA 서울 국제컨퍼런스	외교통상부
29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연합뉴스
30	한·아랍소사이어티 출범	외교통상부
31	제1차 G20 정상회의	연합뉴스
32	제1차 별도 한·중·일 정상회의	외교통상부

## 한국외교 60년

발행 2009년 12월 초판 1쇄  
발행처 외교통상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도렴동)  
기획/편집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교학과

디자인편집 (주)엔씨엘피플스 ☎02-2024-2300  
사진제공 외교통상부, 국가기록원, 외교사료관, 국방부,  
KOICA, 연합뉴스  
출력 출력25시  
인쇄처 마이컴프린팅

본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교학과(☎ 02-3497-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